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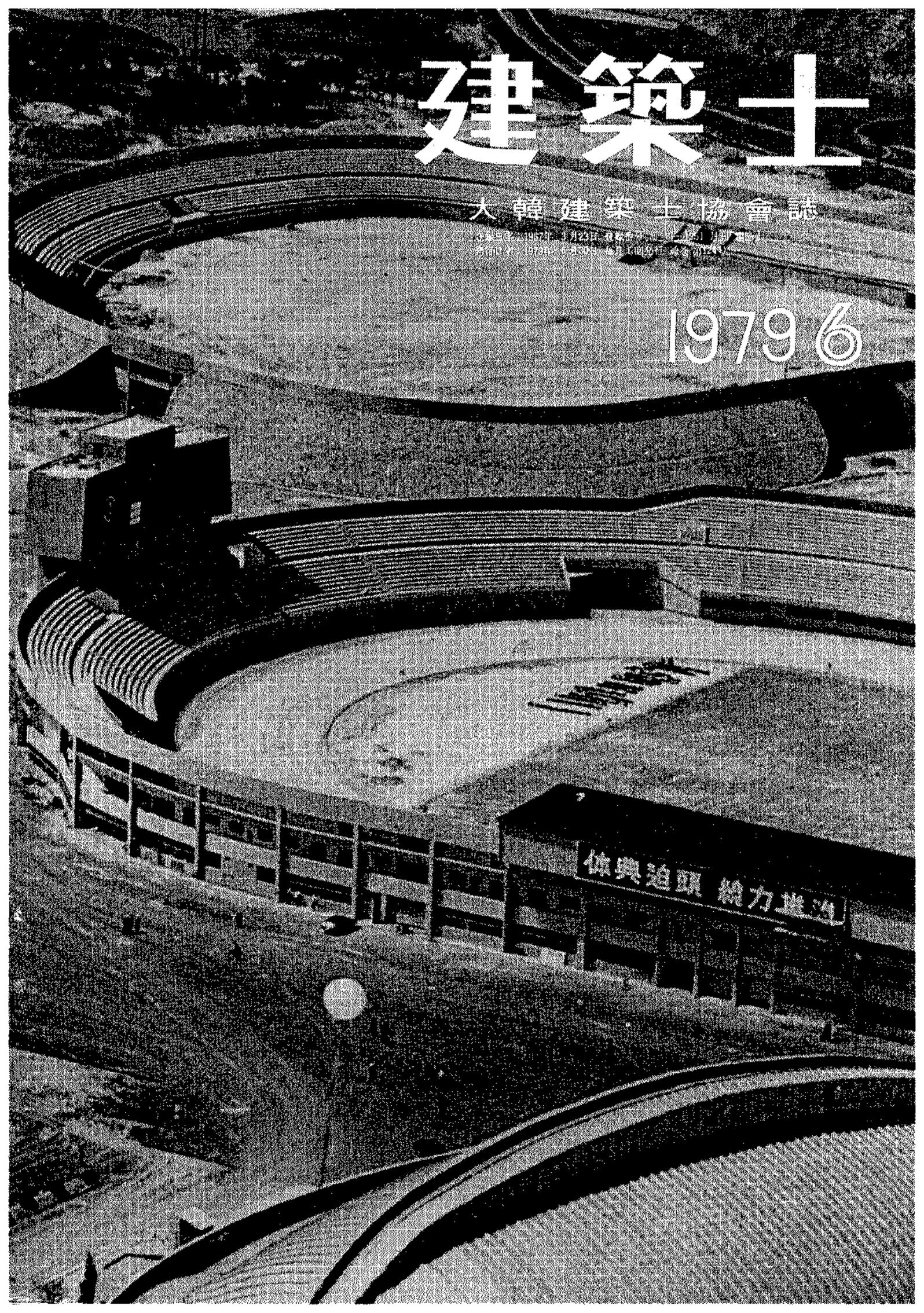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創刊號：1967年 3月25日 發行人：(社)大韓建築士協會
發行所：1979年 6月25日 發行：(社)大韓建築士協會

1979 6

你與追頭 給力業社



消費節約 汎國民運動에 즈음하여

親愛하는 會員여러분!

그동안 建築界의 모든 逆境을 무릅쓰고 政府에서 強力히 推進하여 온 庶政刷新運動을 社會 淨化運動으로 昇化 發展시켜 밝고 明郎한 社會를 建設하는데 앞장서 왔을뿐 아니라 消費節約과 貯蓄增大로 많은 成果를 擧揚하여 주신 勞苦와 協調에 對하여 깊은 感謝를 드리는바입니다.

會員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汎國民的으로 推進되고있는 消費節約에 어나없이 한마음이 되어 新生活運動으로 힘차게 밀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最近 消費增加趨勢는 急速화된 經濟成長과 物資供給能力을 알지르다가 하면 특히 일부 몇몇 사람들의 奢侈와 浪費는 뜻있는 사람들의 憂慮를 자아내고 있어 80年代를 向한 高度産業과 福祉社會建設에 크게 逆行하고 있습니다.

消費節約은 第2의 生産이라고 했습니다.

각자 개개인이 한방울의 기름과 물, 그리고 한장의 종이를 아끼는 姿勢에서 분수에 맞는 生活로 우리는 時代的 使命인 民族中興을 이룩하는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本協會에서도 1979年度 3月 第1回 臨時總會에서 전례 없었던 壹億餘원의 減額更正豫算案을 通過시켰으며 實務面에 많은 애로와 逆境을 覺悟하고 執行額의 10%를 節約運營함으로써 年間壹億원以上の 會員負擔을 줄이기에 最大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數年前에 世界를 휩쓸었던 油類波動과 經濟不況의 거센 風波도 智慧롭게 打開하여 儉素하고 節制하면서 높은 貯蓄率를 나타낸 經驗을 되살려 節約과 貯蓄을 生活化함으로서 本運動이 汎國民的 生活革新運動이 되도록 率先垂範하여 주실것을 懇曲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하시는 事業에 繁昌과 家庭에 萬福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1979. 6. 25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金 斗 燮

제 7 회 이사회의 개최

일 시 : 1979. 4. 24

장 소 : 본협 회의실

결의사항

- 가) 전회 회의록 승인
- 나) 업무보고
- 다) 제 1 호의안 : 지부 임원 및 대의원 취임승인의 건
(결의) 원안대로 승인하되 충북지부의 제천분소는 1979. 4. 30까지 유효기간을 주어 분소장을 본회의 지시사항(79. 3. 9) 총무140-163에 맞게 선출하여 본회에 보고토록 하고 만약이 기일내에 분소장을 재선출하지 않을시는 분소장이 건축사로 선출될때까지 충북지부에서 도서 신고토록 만장일치로 결의.
- 제 2 호의안 : 전남지부 임시총회 유회에 따른 협의 의견
(결의) 79. 5. 10까지 유효기간을 주어 본회의 지시사항(79. 3. 9) 총무140 - 163 에 맞게 회장명으로 총회를 소집케 하고 만약 이 기간내에 시정이 안 될시는 인근 타지부에 도서신고등 제반업무를 위임처리키로 결의
- 제 3 호의안 : 지부회원활동 가사화의 건
(결의) 재검토키로 결의
- 제 4 호의안 : 자재전시사업에 관한 건
(결의) 운영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세무관계를 확인하여 지장이 없으면 시행토록 결의
- 제 5 호의안 : 건축사 노임 단가 기준 변경의 건
(결의) 원안대로 승인하되 종별란의 "일정기준액"을 "일당직접비"로 수정키로 결의
- 제 6 호의안 : 보수규정 개정안중
(결의) 보수 규정 개정안중
 - ① 제 4 조의 봉급의 결정을 보수의 결정으로
 - ② 시간외 근무수당에 관한 규정 삭제
 - ③ 출납수당에 관한 규정 삭제
 - ④ 기술수당은 건축사 면허수당으로 하고 기타는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의
- 제 7 호의안 : 설계도서등록의 사무취급규정(안)
(결의) 제 6 조 2 항 접수일로부터 "72시간"을 "48시간"으로 수정키로 하고 제 7 호의안을 원안대로 승인결의
- 제 8 호의안 : 기타사항

참 석 : 회 장 : 김 두섭
총무이사 : 박 우하
이 사 : 김 규태 · 김 정철 · 한 영수
감 사 : 박 성규

제 8 회 이사회의 개최

일 시 : 1979. 5. 15

장 소 : 본협 회의실

결의사항

- 가) 전회회의록 승인
 - 나) 업무보고
 - 다) 제 1 호의안 : 전남지부에 관한 건
(결의)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결의
 - 제 2 호의안 :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수락의 건
(결의)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을 수락키로 결의
 - 제 3 호의안 : 지부임원 취임 승인의 건
(결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결의
 - 제 4 호의안 : 해외시찰단 파견의 건
(결의) 회장, 총무이사, 박 성규감사에게 위임처리키로 결의
 - 제 5 호의안 : 직원채용의 건
(결의) 원안대로 채용키로 결의
 - 제 6 호의안 : 기타사항
- 참 석 : 회 장 : 김 두섭
총무이사 : 박 우하
이 사 : 김 규태 · 김 정철 · 박래운 · 한영수
감 사 : 박 성규

제 1 회 한국전통 건축연구 위원회

일 시 : 1979. 5. 22

장 소 : 본협 회의실

참 석 : 위원장 : 한 영 수
위 원 : 강명구, 강봉진, 김봉현, 김정수, 윤장섭, 이정덕, 장기인, 정경운, 주남철

심의안건 : 한국 전통건축 계승발전을 위한 세부추진 방안 결정의 건
결의 : 1 차 위원회에서 토의한 사항과 각위원의 의견을 제출, 차기 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정하기로 함.

제 3 회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 연구 위원회

일 시 : 1979. 5. 23
장 소 : 본협 회의실
참 석 : 위원장 : 김두섭
위 원 : 김만성, 강진삼, 김동규, 안기배
이명환, 구유희, 최창규, 김충득
안 건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 개정작업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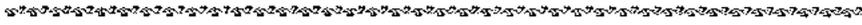
제 7 회 편찬위원회 개최

일 시 : 1979. 6. 25
장 소 : 본협 회의실
참 석 : 위원장 : 김 정철
위 원 : 오창희 · 이경희 · 이문보 · 윤도근 ·
홍성목 · 윤봉원 · 윤태현
토의안건
가) 5월호 회지합평 및 6월호 편집계획(안) 검토
나) 기타사항

제 4 회 건축사 합동방안연구위원회 개최

일 시 : 1979. 6. 22
장 소 : 본협회의실
안 건 : 건축사 사무소 합동방안에 관한건

참 석 : 회장 : 김 두섭 총무이사 : 박 우하
위원 : 김동규 · 윤기병 · 이명환 · 정진민 · 강진삼 ·
민영기 · 정순모 · 고만권 · 송관식 · 임일선 ·
김영식 · 이국남(강원도지부장)



會員動靜

서울지부 신입회원

본 적 : 서울
성 명 : 박 서홍
명 칭 : (주)니마건축연구소
소 재 지 : 마포구 신수동448-8
전 화 : 33-7344
면허번호 : 2-1434
등록번호 : 제19호
월 일 : 4. 30



본 적 : 서울
성 명 : 정 한주
명 칭 : 삼부합동건축연구소
소 재 지 : 도봉구 수유동191-26
전 화 : 989-1821
면허번호 : 1-1355
등록번호 : 제310호
월 일 : 4. 30



본 적 : 서울
성 명 : 조 승제
명 칭 : (주)니마건축연구소
소 재 지 : 마포구 신수동448-8
전 화 : 33-7344
면허번호 : 2-1434
등록번호 : 제19호
월 일 : 4. 30



본 적 : 서울
성 명 : 이 백주
명 칭 : 강동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종로구 청진동285-1
전 화 : 74-7881
면허번호 : 1-662
등록번호 : 합동78호
월 일 : 4. 30



본 적 : 서울
성 명 : 이 준석
명 칭 : (주)삼성종합설계
소 재 지 : 마포구 동교동173-14
전 화 : 32-0640
면허번호 : 1-1076
등록번호 : 제30호
월 일 : 4. 30



본 적 : 강원도
성 명 : 방 의재
명 칭 : 강동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 종로구 청진동285-1
전 화 : 74-7881
면허번호 : 1-1236
등록번호 : 합동78호
월 일 : 4. 30



경기지부 신입회원

본 적: 서울
성 명: 강 감 식
명 칭: 유신건축설계
소 재 지: 인천시 북구 부평동109
전 화: 5-0756
면허번호: 2-1376
등록번호: 317
월 일: 5. 24



경북지부 신입회원

본 적: 경북
성 명: 김 희 영
명 칭: 세대건축연구소
소 재 지: 대구시 동구 신천동89-1
전 화: 44-4770
면허번호: 2-1772
등록번호: 253
월 일: 4. 30



전남지부 신입회원

본 적: 전남
성 명: 광 덕 수
명 칭: 무등, 삼화건축설계사무소
소 재 지: 광주시 금남로5-143
전 화:
면허번호: 2-1820
등록번호: 345
월 일: 6. 4



본 적: 경북

성 명: 이 전 호
명 칭: 신안국제건축사무소
소 재 지: 대구시 서구 비산동434
전 화: 23-3085
면허번호: 2-668
등록번호: 268
월 일: 4. 30



전북지부 신입회원

본 적: 서울
성 명: 임 동 윤
명 칭: 유림건축연구소
소 재 지: 전주시 교사동1가29-1
전 화: 2-5964
면허번호: 2-1650
등록번호: 361
월 일: 6. 8



경남지부 사무소 이전
주소: 마산시 중앙동2가1-16
전화: 2-4530, 4531
일시: 6. 16

越夏 消費節約 重点 实践事項

生活姿勢가 解弛되기 쉬운 夏節期와 第二의 石油波動에 直面하여 그동안 汎国民的으로 이룩 하여온 勤儉節約 氣風을 더욱 든든히 다져 나아가기 爲하여 다음 事項을 重点的으로 实践한다.

重点 实践事項

1. “휴가 健全하게 지내기” 運動 展開
2. 冷房用電力 使用 節制
3. 수도물 아껴쓰기 운동 展開
4. 여름철 간소복 착용
5. 보리 혼식 장려

建築士 報酬의 虚와 実

金 仁 錫

報酬란 어떤 業務(作業)에 對한 代價를 뜻한다. 이 報酬의 尺度는 個人的 境遇는 그 사람의 能力과 資格을 評價하고, 職種の 境遇는 그 社會에서의 地位와 比重을, 國家의 境遇는 그 나라의 国力을 表示한다고 볼 수 있다.

G. N. P.의 成長은 곧 그 國家全國民當所得의 增加를 意味하는 것이다.

우리 社會에 있어서의 建築士의 地位評價는 곧 建築士의 報酬로 測定할 수 있는 것이다.

建築은 人間을 爲한 生活 空間을 創造하는 實用 藝術이요 綜合的인 科學의 所産이라고 한다. 보다 훌륭한 建築物을 만들기 爲해서는 合理的인 知識과 技術이 具備된 建築士들의 奉仕가 必要하다.

오늘날 우리나라 經濟의 急速한 成長은 모든 社會 分野의 發展을 促進시켰으며, 特히 建築 分野의 發展은 놀라운 것이었다.

날로 변모하는 都市의 發展과 大單位集團團地와 工業團地의 出現, 廣範한 國土 利用과 地域 開發 事業의 施行, 中東을 비롯한 海外 建設用役의 進出등 숨겨진 生活 相을 볼때 이 分野 業務에 參與하는 建築人의 한 사람으로서 보람과 矜持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 어느때 보다 이 社會를 爲해 奉仕하는 比重과 功勞가 커졌음에도 이에 相當한 社會的 待遇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建築士의 率直한 現實인 것이다.

社會的 地位나 報酬面에서 自己 位置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要因이 있음을 밝힐 必要가 있을 것이다.

우리와 類似的한 社會的 地位에 있는 醫師나 변호사, 画家의 境遇는 좀 다르다.

그들은 各者의 能力이나 有名度에 따라 差異는 있지만, 一般的으로 自己 勞力에 對한 代價와 地位를 確保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의 報酬의 基準은 있겠지만, 그들이 提示하는 代價에 別異議는 없는 것이다.

社會적으로도 高度의 專門家로서 法曹人으로서 藝術家로서 待遇와 尊敬을 받고 있다. 그러나 建築士의 境遇는 아직은 좀 다르다. 社會的인 認識이나 歷史的인 背景이 乏은 탓도 있겠지만 單純한 技師나 設計士로 認識하고 있는 層이 相當히 있다는 것이다.

建築士의 業務와 報酬에 對한 基準은 1966년부터 施行되었으며, 1975年 12월에 改正되었다.

여기에는 設計, 監理業務에 對한 仔細한 內容과 建物 種類 및 工事費에 따른 報酬料率이 規定되어 있다.

이 規準自体에는 建物種類別 区分이나 料率의 適用등에 多少 不合理한 點들도 있으나 全般的인 報酬率에서 外國에 比해 훨씬 낮은 水準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이 낮은 報酬率도 우리 建築士의 過半數가 代價로 받지 못하고 있는 實情에 있다. 即 自己 價値와 權威를 認定 못받고 있는 것이다. 病院에서 醫師의 診療費나 画家의 그림값에 그리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建築士의 設計費는 비싸다는 것이다.

報酬로 調節하는 것이 當然하다는 認識이고 他建築士의 報酬와 比較하고 坪當값으로 恠정까지 벌인다.

이것은 個人的 境遇뿐만이 아니고, 企業体나 一部 政府關係機關에서도 適用되고 있으며, 設計用役을 一般物 品購入과 같이 見積을 받고 처리하는 것이 當然視되고 있다.

이러한 現實은 우리 建築士 自身들에게도 큰 責任과 虛가 있다고 본다.

果然 우리 建築士들은 그 代價에 相當한 業務를 다 하였는가 反省해 볼 問題이다. 改正된 建築士 業務 및 報酬基準에는 詳細한 設計와 工事 監理業務內容이 規定되어 있다.

設計의 境遇는 建築士의 依賴로 計劃設計와 基本設計의 過程을 거쳐 實施設計에 臨하게 되는데, 實施設計는 一般 基本圖外에도 設備(電氣, 機械) 圖面과 附帶施設圖까지도 工事方書와 工事費 明細書와 함께 完全한 圖書를 마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좀 特異한 設計方便이 있는 것이다. 建築許可에 必要한 設計圖書 作成이 建築設計의 全部로 錯覺하고 있는 現實이다.

正常的인 設計와 許可用 設計는 作業의 量이나 所要費用과 時間에서 엄청난 差異가 있는 것이다.

設計 業務 內容에 두가지 方便이 있다는 것은 自体의 큰矛盾인 것이다.

이 두가지 方便이 認定된다면 報酬 基準 自体도 当初부터 두 種類로 區別되었어야 마땅하리라고 본다.

現行의 報酬 基準은 正常的인 設計業務에는 便이고 許可手續用 設計業務에는 너무도 비싼 것이다.

이와같이 相反된 두 가지의 設計 業務가 並行되고 있기 때문에 報酬에 對한 不信과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는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現象이 하루속히 없어지고 正常的인 業務 態度로 돌아갈때 보다 質적으로 向上된 設計와 훌륭한 建築物이 周圍에 많이 생기게 될 것이며, 建築士의 社會的 地位도, 報酬도 保障받을 수 있을 것이다. □

筆者: 又新建築研究所 代表

合同事務所の 運営과 問題点

李 鍾 寬

本稿는 5월호 特輯計劃 “建築士業務의 当面問題”에 後續寄稿로서 掲載되는 것임을 알립니다.

1. 서론

우리 건축사 협회가 근 20여년의 연분을 쌓아 오는동안 우리 건축사는 빈곤과 좌절의 굴레에서 벗어나 근면 자조 협동을 나감하는 생활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법과 세 계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건설한국(建設韓國)의 변혁의 새역사 창조와 풍요롭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 겠꿈 이끌어온 새기의 역군이 되었다.

이러한 건축사의 긍지와 협동으로 임해온 우리들은 보다 고차원적인 합동으로 내실을 기하여 총화하여 더욱 매진 하는 「나」 아닌 「우리」라는 관념으로 바뀌어 나아가 자기 임무에 충실하므로써 모든 인(人)에게 보범이 되는 기본 적 자세가 필요하겠다. 「合同」 이는 우리 1,800여 건축사가 오게전부터 연구하고 검토해온 문제라고 아니할수 없다. 이에 본인은 본협 특집계획에 의한 원고청탁을 받고 이리타할 방안 제시보다는 우리 강동지구 건축사 합동 방안(안)을 위주로 하여 그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다. 총 회당시 본협에 전국합동사무소「안」에 대한 연구위원회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나 이에대한 어떠한 정보마저 얻지 못하고 지역건축사 친목회인 동건회(東建會) 회장으로서의 개인안을 내놓아 이에 적극적인 찬성을 얻어 그「안」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범위내에서의 문제점들을 제시해 보 겠다.

2. 합동사무실과 문제점

2-1 합동사무실과 그 실태

77년과 78년도에 국무총리각서 제 8호로 인하여 전국 건축사들이 연서로 인한 발전으로 각구(各區)에서의 합동 (合同)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됨과 동시에 일부 구(區)에 서는 구별(區別) 전체합동이라는 무거운 이름아래 명실공 히 합동사무소를 이끌어온 곳도 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 내에서 현재에 이른 구별(區別) 합동 사무실은 없는것으로 안다. 2~5사조의 합동사무실의

운영은 유지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에 더 큰 문 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1977년말 타관내 합동운영에 힘입 어 본인은 강동지구(당시 동부본소 관내 천호지구)에 합 동사무소 소위원회를 두어 합동사무소 작업에 착수하여 모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수차례 걸친 회의에 진통끝에 「순리」과 「시행세칙」 그리고 「규정」을 완성하여 합동사무소 탄생 일보직전에 배당금 시비로 유산되고 만 생생한 아픔에 기억이 되살아 난다. (당시 회칙과 시행 세칙·규정참조, 별표1) 이에 며칠밤을 설치고 배신감 마져 들었던 당시의 문제점들을 본인나름대로 재평가 해 본 결과 역시 그 문제점이란 이루 헤아릴수 없는 너무나 험점투성이었던것을 알수 있었다. 이에 그 문제점으로 매 누되었던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개설한 기 건축사와 신입건축사와의 「배당금」 문제

이는 월당금액을 전액을 관내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년한수에 의거 결정하는데 대한 반발이 쌍방간 너무나도 컸던것 같다. 또 거의 같은 개설년한수의 건축사들 중에도 업무가 많고 적은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였다. 능력 과 기술 위주로 임한다면 관내 신입회원일지라도 기존 개 설건축사에 못지않은 업무수탁을 1~2년내에 능가한다 는 판단이었으리라. 이에 최고상환기간을 3년으로 묶고 3년후에는 일률적인 배당으로 비약시켰으나 이에 동조 하는 건축사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2) 이중직 건축사와 비건축사와의 공동 개설자 문제

타-관내에서 업무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축사는 무언가 문제점을 안고 신입하는 회원이 적지 않다. 이중직으로서 면허대여와 경영자의 밑에서 인장기계 노릇이나 하는 공동운영이 그문제점이다. 경영자는 사장 건 축사는 소장이라는 직함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설득으 로 이루어지지 않는 비양심적인 건축사에는 마이동풍 격 이다. 현재도 각 관내에 생존하는 기생충토충들기 반성

이 있을뿐이다.

(3) 타관내와의 경쟁과 텃팅 해소책 상기에 기술한 문제점 가운데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점의 하나보 될수있다.

서울특별시 타구(他區) 관내와 타도(他道) 인접지역이 바로 그 취약지구라 하겠다. 합동을 영위하려는 구(區)에 인접지구(區)나 타도 인접지역이 합동을 하지않는 자유경쟁요소라고 한다면 점범에 의한 감리와 보수요율에 의한 설계비를 지불하면서까지 소위 업자는그 구(區)내에서의 업무수탁을 꺼려할것은 당연한 것이다. 설계비텃팅과 불신감으로 인한 피해자는 바로 우리 당사자들인 것을 변연히 알고 있으면서도 단 한건의 임무를 위하여 지금 우리 건축사도 일부는 얼마나 많은 부조리와 사회풍조를 쪼먹는 행위를 하고있는 것일까? 「영세성 고질병이 선척적이지 아닐진데 이에 대응할수있는 명암은 과연 없는 것일까?」 우리 모두가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할 심각한 문제들이다. 이에 합동사무실은 市단위와 道단위로 主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마땅하리라 생각되며 전국 전체 합동방안은 너-더욱 그 문제점이 크리라 믿으며 제 1 단계로 우선 市와 道단위가 바람직하다.

3. 합동사무실과 감리단(監理團)구성

3-1 감리단(監理團) 구성

합동사무실에 대한 문제점 제시는 미흡하나마 상기와 같이 기술하였으나 문제점없는 원만한 합동사무실영위는 감리단후성이 앞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믿는다. 텃팅에 의한 설계비와 과잉서비스?에 이어 받는 보너스는 오직 높은 세급과 불실감리라는 「행정처분」이어서야 어디 말볼 일때가 있는가 말이다. 친분이 두텁고 경쟁의식속에서의 야차 실수?와 업자농간에 휘말린 감리로 인한 피해?는 오직 기칭「대한 건축사협회 합동 감리단」 구성만이 우리 건축사의 살길이라 믿는다. 신설부에 의한 감리보수요율이 곧 설계비와 분리 실시되리라 믿는 마당에 감리자체는 지역구단위 감리단 분소에서 맡으므로 인하여 불실감리 행정조치와 같은 달갑지않은 단어는 이제 머연 기억속에 매장되어야 되겠다.

3-2 강동지구 합동사무실(안)(감리단 구성을 전제로 한 기초안)

이는 1979년 5월 12일 강동지구 건축사 친목회인 동건회(東建會)회의시 거론되었던 안으로 5月확정인 종합소득세율이 건축사에게 준 충격에 이어 탄생된 기초안이나. 73년 오일쇼크이후 현재까지 각국에 에너지 소비절약책으로 나온 단계별 규제를 적용하여 이 합동사무실(안)도 제 1 단계부터 제 4 단계까지의 해결책을 나름대로 적용시켰다. 이(안)에 대한 지역건축사들의 공청회의결과 의

견은 반반이었다. 감리단구성을 전제로한(안)이기에 문제점은 생각했던것 보다 적은편이었다. 절반이상이 이(안)에 찬성하였으며 반대하는 관내 삼기협 회원의 이유보서는 이제껏 합동사무실을 운영한 타구(他區)에 전례를 보더라도 단계적이란 있을수없으며 만약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말이많은 직업의식속에서의 의견에 일치가 될수없으므로 실시하려면 사거측사들의 일정한 입회비를 각출하여 공동투자로 의욕적인 전체합동을 일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이었다. 결론으로 6月內에 각 3인조 합동대표들로 구성된 연구위원을 누어 절충식으로 종합방안을 다시 강구하는 의견에 일치될 보아 진행중에 있다.

3-3 합동사무실(안)설명

이안은 강동지역에 감리단구성을 전제로한(안)이다. 설계비 수납창구를 지역에서 제일 가까운 복지회 예치지성 은행에 개선하여 설계비 수납을 일원화시키므로 인하여 뒤따르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3개월 정기적금형식으로 예치시 일백만원당 이자는 약 12,700원정도 가산)

제 1 단계 : 타지역을 의식하여 설계비는 평당최소 6,000 원이상선으로보고 있으며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70%복지회 예치금중 나머지 30%를 3개월간 별도예치(감리단 예치와 명하였음)하여 공동분배, 제 1 단계는 6개월간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시.

제 2 단계 : 6개월간 감리단 운영의 모를 살펴 1 단계를 거쳐 설계비와 동시에 감리 보원일부를 공동예치 70% 예치외의 감리단 예치비와 감리비 그리고 20%를 공동분배, 제 2 단계 단기별 기간은 3개월

제 3 단계 : 감리단예치금과 예치금중 50% 공동분배, 3개월

제 4 단계 : 100%공동분배

단 강동지구 이외에 서울전역 수입분은 해당지역 구단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서울전역을 제외한 지방수입분은 보수요율에 15%를 감리단예치 시키며 연면적이 200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에 의함.

※별표 2 - 단계별 합동 사무실안 참조

4. 결론

정해진 지면관계로 간략하게 결론을 맺는다. 이상과 같은 안이 아무리 좋은 안이건 또는 시정을 요할 문제점이 많은 안이건간에 「협동(協同)만이 합동(合同)을 탄생시킬수 있다.」고 믿는다. 전역합동이 불가능 하더라도 현재에 처해있는 본협에서 하루빨리 감리단을 구성하여 합동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디 문제점을 보완해 나아가야 될출로 믿는다. □

별표 1 : 합동사무소의 회칙(회칙, 시행세칙 규정)

별표 2 : 현재의 합동사무실(안)

別表. 1 會 則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명 칭)
본회는 강동지구 건축사합동사무소라 칭한다.
- 제 2 조 (회 원)
본회 회원은 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으로서는 서울특별시 강동지구 권내에 사무소를 개설 운영하는자로 한다.
- 제 3 조 (목적)
본회는 건축사의 업무를 합동 영위함으로써 성실한 작품활동을 도모하여 회원 상호간에 복리증진 및 지위향상과 품위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임 원

- 제 4 조 (구 성)
본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회장 1인 ②사무장 1인 ③임원 4인 ④감사1인
- 제 5 조 (임원의 임무)
①회장은 회를 대표하며 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사무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그 임무를 대행하고 각 부서를 지도감독한다.
- 제 6 조 (임원의 책임)
임원은 성실한 관리로 소관업무 수행의 안전을 기한다.
- 제 7 조 (감사)
경리 및 제반업무를 감시하며 총회에 보고하며 각부서의 분기별 감사와 회원의 업무동태를 파악하여 임원회에 보고하며 세칙에 의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발의할 수 있고 결의권은 없다.
- 제 8 조 (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이며 특별한 보수는 없다.
- 제 9 조 (임원의 선출)
회장, 사무처장, 임원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 10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길때에는 생진후 첫번째 소집되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 장 운 영

- 제 11 조 (사무소 위치)
본회 사무소는 천호동에 위치한다.
- 제 12 조 (사업종목)
①설계용역 및 감리업무

②상기업무에 부수된 복제사업

제 4 장 회 의

- 제 13 조 (총회 및 소집)
①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총회의 성원수는 재적회원의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③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정기총회는 년도말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하였을때와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 제 14 조 (의결)
①총회는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결권은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 제 15 조 (의결사항)
①회칙의 변경
②사업보고와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③기본자산의 설치 및 처분
④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⑤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⑥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된 사항
⑦본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⑧기타 총회에서 필요하며 의결된 사항
- 제 16 조 (임원회의)
①임원회의는 회장단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임원회는 회장단 또는 임원의 2/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소집한다.
- 제 17 조 (임원회의 결의사항)
①회칙의 변경안에 관한 사항
②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안
③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자산 및 부채 특실에 관한 사항
⑤회원에 대한 제반사항
⑥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⑦사무 분담에 관한 사항
⑧총회에 부의할 안에 관한 사항
⑨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⑩손익분배에 관한 사항

제 5 장 회 계

- 제 18 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단 폐쇄기간은 익년 1월31일로 한다.)
- 제 19 조 (수 입)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① 설계작품 보수
- ② 공사감리 보수
- ③ 기타 부수된 사업수입

제20조 ① 본회는 매 회계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전항에는 예비비를 계상키로 한다.
 ③ 예비비 지출은 임원회의 의결로 지출하고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제21조 (결산)

본회는 매회계년도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사업보고와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손익분배)

본회원에 이익분배 방법은 별도로 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 6 장 사무기구

제23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 ① 총무부 ② 기술부 ③ 지도부 ④ 사업부

제24조 (사무직 및 기술직)

- 가) 직 원 : ① 상담실장 ② 경리 ③ 경리보조
 ④ 서무 ⑤ 사환
 나) 기술직 : ① 설계사 ② 설계보조원 ③ 실습생

제 7 장 해 산

제25조 (해산방법)

본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회원의 2/3 이상 해산을 요구할 때는 곧 총회를 소집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제26조 (청산방법)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가 해산될때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청산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청산방법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제27조 (운영세칙)

본회칙의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본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하고 시행일은 별도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제 1 조 (목 적)

본세칙은 회칙제27조에 의거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입과 탈퇴 및 자격상실)

① 본회 가입회원은 강동지구관내에 서기 0000년

12월 11일 현재 사무실 개설한 건축사²야한다.
 (단 강동지구 관내건축사로서 초회에 한하여 12월25日前 연락사무소에 경유를 필한자는 그 자격을 인정하며 타지구가 아닌 동부본소 관내 회원에 한하여 그 년한을 1/2로 인정함)

② 본회가입시는 소정의 공증각서 및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에서 결의한 입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탈회시는 사유서 첨부 원서를 제출하여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본회 회원이 회칙 및 세칙 규정등 제반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시는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그 자격을 상실함과 모든 배당에 대한 조건도 무효로 한다.

⑤ 본회원이 업무수행중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임원회에 결의에 따른다.

⑥ 회원이 공공휴일에 근무시는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며 지각, 조퇴, 무단결근시는 일정한 금액을 배당액에서 공제한다. (단, 수당 및 공제금은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본회 회원간에 배당은 임원회에 결의에 따라 모든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금으로 3~4개월마다 운영규정에 의거 분배한다.

⑧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원들에게 매월 생활비조로 일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 4 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① 본회원은 회칙과 세칙 및 총회와 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② 권리

㉠ 총회에서의 발의권과 결의권

㉡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각종 배당금의 수배권

제 5 조 (가입과 탈회방법)

① 본회에 가입을 원하는자는 임원회의 결의를 받아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한다.

② 본회 가입시는 임원회에서 결의된 평가액을 본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 탈회시는 입회비를 지급할 수 없다.

제 6 조 (배당금의 환불)

① 회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탈회시는 탈회가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후에 지불한다.

② 회원이 불의의 사망시는 임원회에 결의로 조속히 지불할 수 있다.

제 7 조 (경조 및 불우회원 보조비 지급)

회원 본인의 불상사 및 회원의 직계존속의 결혼, 사망, 회갑시는 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을 지불한다.

제 8 조 (세부지침)

운영상에 필요한 세부지침은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시행한다.

제 9 조 (벌 칙)

본회 회원으로서 본회칙 및 시행세칙과 제반 권의사항을 위반하였을시는 세칙 제 1 조 4 항이 적용되며 제 7 조 전항의 혜택이 중지되고 제 4 조 2 항의 권리가 중지된다.

부 칙

본 시행세칙은 총회에서 결의하여 시행일을 결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정

제 1 조 (목 적)

본규정은 합동운영회 세칙제 8 조에 의한 본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입회 및 입회비)

- ① 본회 입회비는 일금 () 원정으로 하되 초회에 한하여 00년 2월 3일까지 본회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차년도부터는 시행세칙 제 5 조 2 항에 의하여야 한다.
- ③ 세칙 제 2 조 2 항에 의한 (별지소정서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사무소운영방법)

- ① 부서별 운영방법
 - ㉠ 총무부서 → ㉡ 기술부서 →
 - ㉢ 지도부서 → ㉣ 사업부서
- ② 계약된 설계처리등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순번으로 균등하게 처리한다.
- ③ 본소 사무실이외에 상담실을 두며 상담실근무

는 당직 건축사와 상담실장이 상주한다.

④ 사무소의 출퇴근시간은 관공서와 같이 한다.

제 4 조 (본회자금조성)

본회사업을 위하여 분배할당시마다 순이익금의 2% 이상을 본회 자금조성으로 예치한다.

제 5 조 (배당방법)

- ① 본회에 수입금중 예산에 반영된 운영관리비 및 기금예치금을 공제한 잔여금액으로 할당한다.
- ② 할당금액을 전액은 다음과 같이 강동지구 행정구역 관내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친 년한에 의거 결정한다. (초회에 한하여 시행세칙 제 2 조 1 항 단서유효)
 - 가. 1년미만 20% 나. 1년이상 30%
 - 다. 2년이상 60% 라. 3년이상 80%
 - 마. 5년이상 100%

제 6 조 (사무직 및 보조원의 처우)

- ① 사무직—1, 2, 3, 4호
- ② 기술보조사(원)
 - ㉠ 설계보조사 1, 2, 3호
 - ㉡ 설계보조원 1, 2, 3호
 - ㉢ 실습생
- ③ 직원의 승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바에 의한다.

제 7 조 (현금예치 및 인출방법)

본회에 출납되는 모든 현금에 회장, 사무처장(운영위)의 공동명의로 예치 및 인출한다.

부 칙

본회가 발족된후에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이 발생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추가 결정한다.

〈別表-2〉 감리단 구성을 전제로한 합 동 사 무 실(안)

단계별	설계비	감리비	합 계	설계비예치 (6개월)	감리단예치 (3개월)	방 법	단계별 기간
제 1 단계	평당 6,000			4,350 (70%)	1,650 (30%)	감리단예치비반 공동분배 (3개월) (평당 500원은 1년만기 정기예금)	6개월 연건평 200평미만 (200평 이상은 별지규정)
제 2 단계	평당 6,000	평당 1,500	7,500	4,350 (70%)	1,650+1,500 =3,150	감리단예치금과 예치료중 20% 공동분배	3개월
제 3 단계	평당 8,000	평당 감리보수요율	8,000 +감리보수요율	4,350	3,650 +감리보수요율	감리단예치금과 예치금중 50% 공동분배	3개월
제 4 단계	보수요율 규정	보수요율 규정		4,350	감리보수요율 설계비예치금 잔액	100% 분배	3개월

※ 강동지구 이외에 서울 전역 수입분은 해당지역구단위 현실에 맞게 조정
 ※ 서울 지역을 제외한 지방분 수입분은 보수요율에 15% 감리단 예치
 ※ 200평 이상의 건축물은 별도규정.

人力難 時代의 建築補助士의 問題

李 世 勳

나는 「建築補助士」란 用語가 언제 누가 어떤 理由에서 만들었는지 由來는 알 수 없다.

国会建設分科委員? 또는 主務長官? 아니면 主務長官을 모시는 部下職員中 하나? 어쨌든 독특한 用語가 탄생한 것은 事實이다.

全世界 人口가 로마를 찾는 것은 그時代의 그 엄청난 強大國의 文化的 側面을 考察하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우리와 가장 가까운 日本의 文化나 風習을 比較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外形으로 보아 우리와 다름바 없다고 輕視 하다가도 內面을 파헤쳐 본즉 우리와 比較할수 없는 內實이 있다는 것을 異口同聲으로 이야기 한다.

어느 나라는 重要한 文化와 歷史를 後孫에게 남겨 물려줘야 할때 內實커녕 外形조차 없이 방황하면서 “朝三暮四” 格으로 한사람의 精神的 制度的 오류로 因하여 文化의 一部인 建築分野를 害치게 되었다면 언뜻날 歷史에 잊을수 없는 誤點을 남기게 될것이다.

賢人이라고 불리우는 孟子는 이런말을 했다.

每日같이 도적질 하는자가 마을을 고쳐 먹고저 이번달에는 二十回의 도적질만 할것이요 다음 달에는 十回의 도적질 그다음달에는 五回의 도적질만 그리고 그다음 부터는 도적질을 하지 않겠다면을바르지 못함이라고 했다.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遲滯 말고 即時 是正하고 改善해야 되겠다고 生覺하면서 建築補助士 問題도 生覺해보자.

그처럼 強國이었던 「로-마」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무너질수 있을까? 에 흑자는 教育不在 었다고 말하는 者도 있다. 이처럼 教育이 重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며, 그러기에 요즘 教育問題를 社會問題로써 再 鼎立하고자 努力하고 있다.

教育은 반드시 知識의 注入이나 或은 情報의 傳達로 落後되어 가는듯한 學校教育(특히 建築教育)만이 全部가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家庭教育 社會教育 先後輩間에 주고 받는 輕驗에 依한 實質의 人間教育들이 얼마든지 存在한다.

옛부터 學者는 酒, 色, 財. - 禁 이라고 했거늘 어찌 배우는 後輩에게 拜金思想이나 黃金萬能思想을 가르치는 길잡이가 되어서야 우리先輩들로써 좋은 指導요 좋은 制度을 만들어 줬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果然 우리들은 「建築補助士」들에게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르치고 보여줄 것인가.

우리들은 옛부터 벼슬을 좋아했던가 싶다. 벼슬사字로 불리는 「士」字을 많이 쓴다. 심지어 「建築補助士」까지 말이다. 벼슬자리에 오른 「建築補助士」이기에 貴한것인지 벼슬자리를 싫어하기에 「建築補助士」를 보기가 어려운가. 참으로 「建築補助士」는 實質的으로 內實없는 外形만 굴러다니고 있음을 눈앞에서 볼때 慨歎하지 않을수 없다.

法에서 保障해주는 훌륭한 制度이라면 왜 이처럼 形式만 갖춘 「建築補助士」만 存在하고 設計事務所에서 勤務하겠다는 참된 「建築補助士」가 왜 적은지 생각해보자. 補助士로 勤務로서 建築士 試驗資格에 實務經驗 年限을 앞당겨 준다는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것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銓衡程度의 節次에서 建築士가 될수 있을것이라는 希望이 있어 「建築補助士」로 일한단 말인가.

무엇때문에 建築學文을 工夫한 後輩들이 校門을 나서면서 設計事務所를 回避하고 있는가.

某 大學校 工大 建築科의 境遇는 단 一名도 設計事務所에 勤務하지 않은해가 繼續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이 모-두는 우리 建築人들의 責任이요 잘못이 明白하나 「建築補助士」란 用語를 만든 사람만은 建築人이 아니기를 마음속으로 빌고있다.

우리젊은 後輩들이 設計事務所를 쳐다보는 눈은 누구보다도 올바르게 보고있다. 霸氣滿滿하고 뜻이 하늘을 지솟을 遠大한 힘을 갖춘 젊은이들이 世界를 발판으로 삼고 그一部인 中東이나 歐美 等地를 누비며 世界 어느 建築學文이나 建築技術에 뒤질소나 하면서 見聞과 視野를 넓혀 가기를 願하고 있다.

官 主導形式인 行政官署 周邊에서 糊口之策을 目的으로 東奔西走 하는 設計事務所에서 不條理와 妥協 及至는 排除 하는 모습을 보고 設計事務所에 勤務하려는 者가 누가 있겠는가?

그러하기에 合同事務所의 制度를 만들어 반드시 「建築補助士」가 있어야만 비로서 단 拾坪의 單獨住宅 마저도 設計할수 있다는 行政當局의 制度에도 疑問點이 없을수 없다.

勿論 法 趣旨의 合同事務所는 庶政刷新 및 總和維新의 精神에서 만든 制度인 것만은 事實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二國策에 違背됨이 없는 制度를 檢査하여 改善할 必要가 있다면 改善하여야 된다고 生覺한다.

또하나 設計事務所의 「建築補助士」뿐만 아니고 補助員 或은 全職員의 移職率이 높은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理由中 經濟的 側面을 살펴본다면 첫째 他業界에 比하여 報酬가 낮음이고 둘째 將來性이 없다는 것이다.

設計事務所가 零細性을 免치 못하는 理由는 世界經濟에 너무 敏感한것도 있겠으나 法으로 定해진 報酬料率도 받지 못하는 우리들의 덩핑 行爲도 큰 原因이다.

덩핑 行爲을 한마디로 말하기란 大端히 어렵겠으나 私見으로는 “能力不均衡”이라고 말하고 싶다.

能力도 없는者가 資格의 基準인 免許만 가지고 큰소리만 하거나 或은 資格을 用하는 者가 있기에 能力있는 젊은 後輩들은 門戶가 좁고 그어느 國家考試보다 훨씬 좁은 閨門을 通過 直前に 挫折케 하는 커다란 要因中 하나가 아닐까 싶다.

좀지나친 表現일지 모르겠으나 法規集이나 찾아보고서 設計受注를 받을수 없고 누가 먼저 市庁이나 區庁 或은 郡庁에 가서 建築許可 擔當者와 建築行政의 條例, 指針, 方針, 示達, 等”의 內容을 詳細히 알고 있느냐에 建築士의 能力을 평가함 하게 하는 隨時 바뀌는 建築行政 또한 問題아닐수 없다. 다시말해 그동안에는 設計事務所의 能力 評價가 마치 不條理와 妥協 잘하는 곳이 能力있는 事務所 인 것처럼 國民의 一部에서는 잘못 認識하고 있는것도 우리 冷徹히 反省 해야 할것이다.

이처럼 어려운 過度期에 補助士의 報酬도 他界에 比하여 낮을수 밖에 없다. 法을 違反해가면서 建築物을 施工 하는 사람은 無學者요 이를 監理 指導 소홀이라 해서 責任을 免치 못하는 것이 “建築士”요 “建築補助士”라면 마치 쥐에게 고양이를 지키라고 하는 격과 다를바 없는 現實을 잘알고 있는 젊은이들은 將來性이 없다고 한다. 急變 世界는 急變하고 있으며 우리의 建築도 急變하고 있다.

얼마전만 해도 우리 建築士(家)가 建築物에 關한 一部分을 全擔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오늘에는 그러하지 않다.

計劃, 構造, 設備(電氣, 暖房, 衛生, 消防 等) 都市計劃 造景 심지어 室內裝飾專門家와 透視圖 專門家 等”까지 登場을 하여 우리의 業務를 分擔 해주는것 까지는 多幸한 일이 겠으나 零細性을 免키란 어떠한지 궁금할뿐이다.

세계의 “에너지”危機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는 太陽 熱住宅 開發이 時急히 要請 되는 이때 果然 우리가 알고 있는 住宅과 同一한 形態의 것이 存在할 수 있을지 또한 궁금하다.

오이씨와 같은 버선의 曲線 云云하며 우리것의 草家 지붕의 아름다운 曲線等等은 옛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처럼 急變해가는 어려움속에서 綜合藝術을 하는者요 造形藝術을 하는者요 또는 交響樂團의 指揮者와도 같다고 하는 우리 建築士들은 우리의 뒤를 이을 後輩들에게 門戶을 開放하고 保護하기 爲하여 制度的으로 「建築補助士」을 만들어 特惠을 附與 하다면 그自体로써 뜻이 깊은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国力과 經濟力이 世界強國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져 할때 人力不足은 말할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더욱 零細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設計事務所에 固定配置式의 強制規定인 「建築補助士」制度는 充分히 檢討 되어야 한다고 生覺한다.

筆者 : 이세훈건축

建築의 새로운 轉期를 위하여

—美術館과 博物館건축을 돌아보고—

安 瑛 培

外國의 美術館建築에 나타난 建築의 括氣.

무슨 건물이던 건축가의 관심의 대상이 안되는 건물은 없다. 심지어는 기능적 요구만 크게 요구되는 공장이나 창고에 있어서도 건축가의 역량이 발휘되면 훌륭한 建築이 되는것을 자주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가가 가장 관심을 갖게되는 건축이라 한다면 藝術性과 記念性을 동시에 지닌 건축이라고 할것이다. 이러한 건물로는 교회 건축이나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등의 여러 건축물들을 들수 있겠다. 그중에서도 박물관이나 미술관건축에 나는 관심을 끌리게 된다. 아름다운 建築空間의 형성, 그리고 그속에서 흐르는 空間의 리듬과 멜로디가 建築家들이 追求하는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야말로 가장 적합한 project가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역사적 유물이나 당대의 정상급 미술품들을 전시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담는 용기로서 건축역시 당대 예술의 극치를 자랑할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당대 문화의 상징으로서 우리는 이것을 신중히 다루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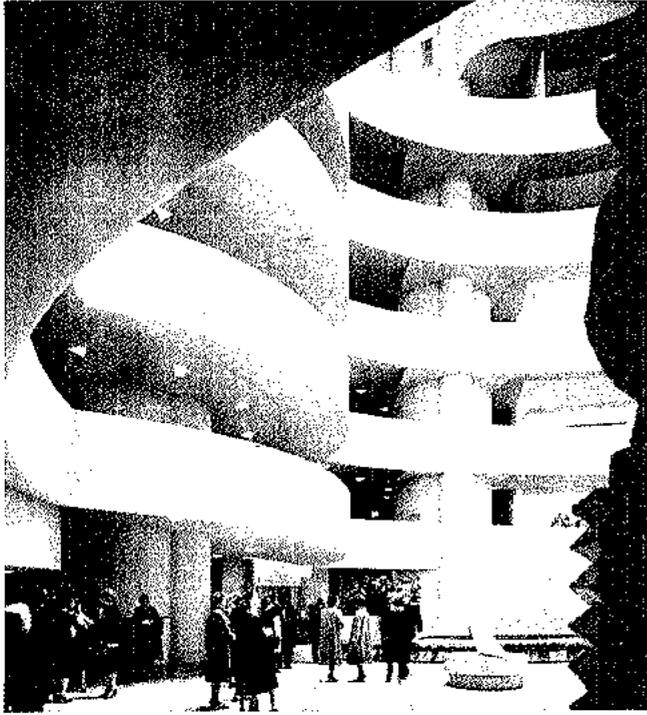
그러나 박물관건축은 다른 建築에 비하여 오랜동안 침체기를 맞았었다. 구미諸國에서도 博物館이라고 하면의례히 古典建築의 折衷의 양식으로 지어 지는것이 常例이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도 이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는 그 개념이 完全히 달라졌다. 巨匠建築家들의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념은 좀처럼 큰 變化가 없었다. 미술관 건축에 새로운 括氣가 불기 시작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20세기의 중반에 들어서면서 우리는 근대 건축의 3大巨匠들이 모두 珠玉과 같이 아름다운 미술관을 남기고 간 혜택을 입을 수가 있었다. 東京의 西洋美術館(루·르르류제 설계)과 뉴욕의 구겐하임미술관(The Solomon R. Guggenheim Museum, F.L. Wright설계), 그리고 西伯林的 20世紀 미술관(Galerie des 20 Jarhunderts, Berlin. L. M. Rohe 설계)이 바로 이것이다. 다행히도 나는 이 미술관들을 모두 구경 할수있는 기회를 갖었던 것을 지금도 펍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특히 東京의 西洋미술관에서는 단순한

立方体속에서 무한히 다양하고 아름다운 空間形成의 可能性을 보여준 점에서 큰 감명을 받았으며 건축가로서 크게 감사함을 느꼈다. 구겐하임 美術館은 라이트의 유기적 建築의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 그의 晩年作品으로서 여기에 처음 들어간 筆者는 한마디로 건축의 歡喜를 느끼는것 같았다. 밝은 頂光으로 비쳐진 경사진 円筒空間을 램프를 따라 서서히 이어지는 공간의 흐름속에서 美術品을 감상 하는것은 마치 위대한 建築의 교향악을 듣는 기분이었다. 甕器의 本質이 그 内部의 空虛함에 있다고 말한 老子의 말과같이 이 건물은 建築의 本質이 바로 空間에 있음을 실감케 했다. 伯林的 20세기美術館은 다름아닌 珠玉 그 자체였다. less is more라고 말한 Mies의 말대로 충만된 建築의욕을 극도로 누르고 표현된 단순美의 極致이다. 이건물은 20世紀 美術의 걸작품들의 아름다움과 그 價值를 무한히 높여주고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現代의 팔레논이다. 루르르류제, 라이트, 그리고 미이스의 三大巨匠이 이미 世上을 떠날 지금 이 세분의 영향을 한몸에 받은듯이 보이는 새로운 美術館이 미국와싱턴市에 세워졌다. 이것이 바로 I. M. pei의 國立 美術館 東館이다. 이 미술관은 작년에 TIME誌에도 소개된 바 있었지만, 건축가는 물론 일반인들 에게도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훌륭한 미술관 이다. 다양하면서도 유동적인 공간의 변화, 자연 광선을 대담하게 도입한 밝고 명랑한 분위기는 그속에 전시된 미술품들의 가치를 최대한으로 살리고 있다. 단순하면서도 예리한 建物 매쓰의 조각적 구성과 細部の Detail Design까지도 치밀하게 계획된 精巧性등이 이 建物の 우수성을 더 한층 높여주고 있다.

I. M. PEI는 에버슨 미술관(Everson Museum of Art, Syracuse, New York)이나 예일대학 미술관에서 이미 탁월한 솜씨를 보여 주었으며 미국 건축가들 사이에서도 날로 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다른 건축가들에 의한 훌륭한 美術館은 수없이 많다. 루이스칸의 예일대학 미술관(Yale University Art Gallery, New Haven, Connecticut 1953)은 이곳을

찾아간 나에게 20世紀의 11(匠)임을 인식 시켜준 밀도높은 作品이었다. 주위환경에 조화되며 균형잡힌 매쓰가 과장됨이없이 아름답다. 進入時의 램프에서 부터 出入口의 모양, 단간의 디테일에 이르기까지 匠師의 세심한 배려가 엿보였다. 門前속의 삼각형으로 올라가게된 계단, 삼각형格子天井에 맞춰 적절히 구획된전시벽면, 그리고 門前벽과 長方形벽이 주는 공간감, 작고 간단한 建物の 密度를 지극히 높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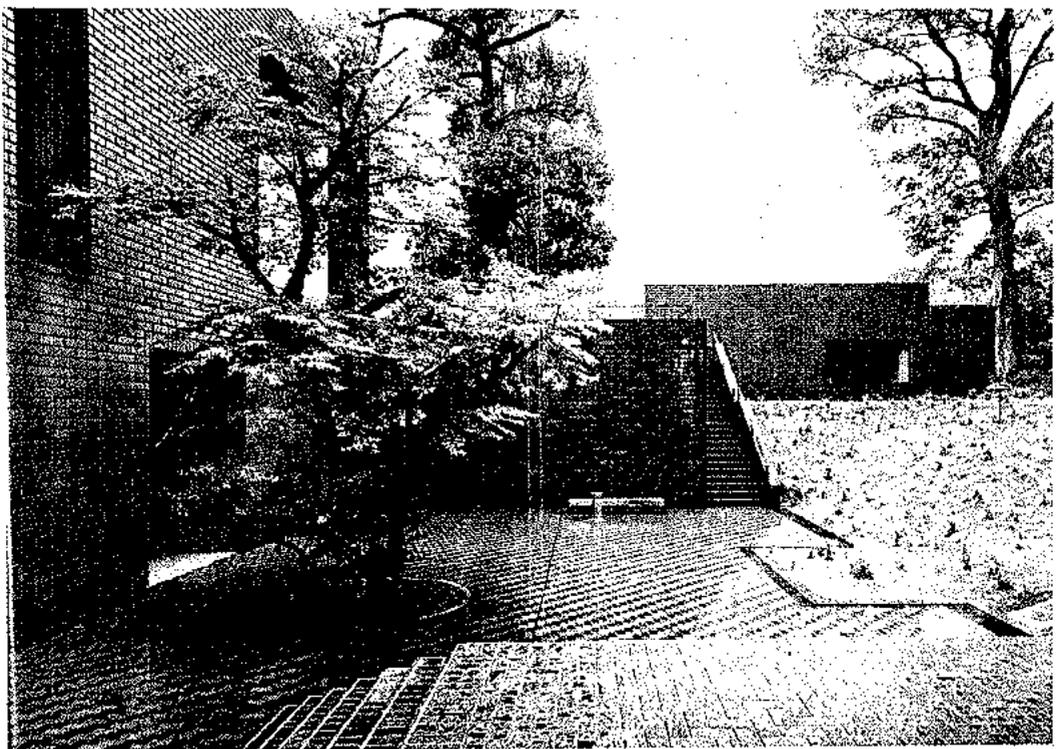
구겐하임 미술관(뉴욕)

建築의 外部空間을 잘 활용하여 성공한 美術館도 적지 않다. 변화한 都心地에서도 외부공간을 活用하여 道路부터 米館者를 끌어 들이는 誘引力을 지닌 휘트니 미술관(Whitney Museum, New York, Marcel Breuer설계) 뉴욕의 변화가 메디스Avenue75에 큰 바위와 같은 특이한 매쓰를 과시하고 있다. 메이트 美術館(Museum of the Maeght Foundation, St. Paul-de-Vence, France, 설계 Sert, Jackson, Courley)은 숲속에 세워져 있으며 外部空間에 조각들을 전시하여 公園의 숲속에 빙여서 미술품들을 감상 하제한 Sert의 작품으로 評價가 높다. 日本의 熊本県立美術館(前川國夫設計)도 주변환경과 잘 조화되고 内外空間의 융화가 잘 試圖된 아름다운 미술관이다. 건축만으로 한징 된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환경造成을 보다 우선적으로 다룬 前川國夫氏作品으로 가장 친근감이 가는 작품이다. 20世紀도 이제는 차츰 末期에 접어든 이때에 建築은 미술관建築을 제기로 새로운 括弧를 띄기 시작했다.

즉, 20世紀의 11(匠)들이 모두 지나간 지금 現代建築은 이들의 遺産을 기반으로하여 풍성한 全盛期를 맞게 된 것이다.

轉換期의 우리나라 博物館 建築

우리나라 박물관建築을 이야기 하게되면 자연히 여기에 대한 批評이 뒤따르게 된다. 作家로 자처하는 사람이라면, 가급적 친근한 건축가들의 작품에 대한 批評은 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작가가 자신의 말과 行動은, 반드시 일치하지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作品에 대한 批評은 자칫하면 작가의 명예 훼손으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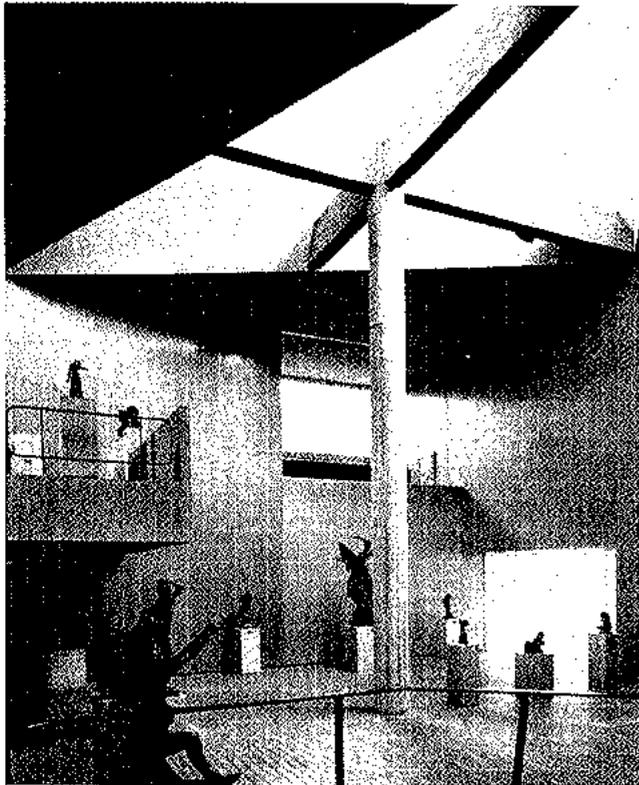


熊本美術館(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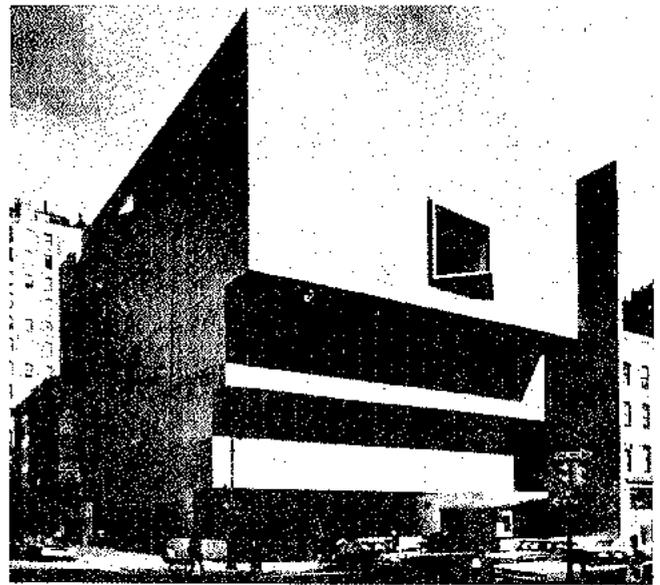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 建築界는 확실히 말은 많은 것 같으면서도 책임있는 글로 표현한 말은 너무나 적다. 이러한 현상은 작가들에게 타성을 초래하여 向上이 둔화되며 일반인에게는 建築을 誤導하기 쉽다.

때로는 그릇된 건축가들의 횡포가 자행되기가 쉬운 여건이 형성되기도 한다. 심지어는 후진 建築家들에게 混亂을 초래하고 建築觀의 올바른 이해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게도 한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서로 인정하고 앞으로는 똑같은 시행착오는 더 이상 되풀이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염원일 것이다. 나 자신의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지만 이것도 모두 비평 부재현상에서 초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 봄에 있었던 建築家協會의 세미나는 건축가들이 대화의 광장이 되었던 획기적인 거사였다. 서로의 의견을 허심 탐회하게 교환할수있는 대화의 광장이 반듯이 큰 행사로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면을 통해서 자주 이루어졌으면 한다. 建築의 비평이 단순한 人身 공격이 아니고 오히려 作家를 존중하고 아끼는 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되어야 하겠고 비평의 대상이 된 것이 다행스럽고 보다 나은 창작활동의 활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建築家들의 견해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것을 서로 自由스럽게 교환 하므로서 그릇되게 생각했던 점이 있었으면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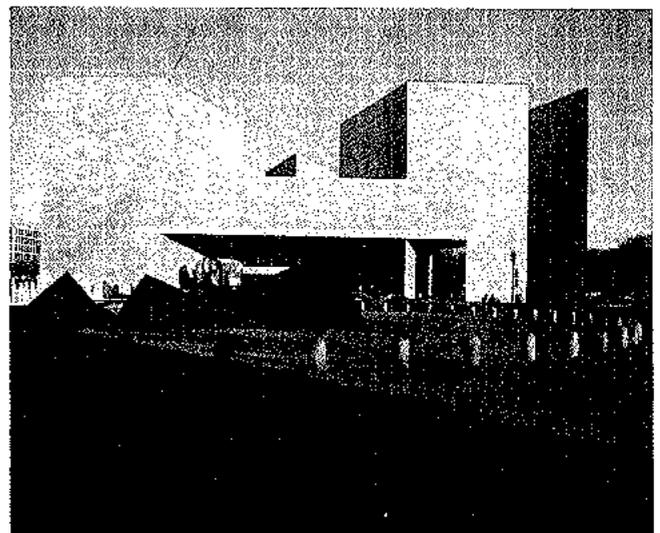
무의미하게 세워진 法住寺의 物相殿의 콘크리트 모형과 경주 불국사의 석조제단으로 올라가게 한 의미없는 기단에 막대한 공사비를 들여서 건립하였다. 現代에서 전통의 계승이 古건축양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굳이 고집하지 않더라도, 다시 말하면, 建築家가 양보해서 古건축양식을 따르다손 치더라도 어느 특수한 建物を 그대로 모방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과거의 어느 建물이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진 일이 있었든가 만약 있었다면 그것은 전혀 無價値한 것이며 지금의 우리 온 국민에 대한 모독이 된다. 옛 祖上들의 作品을 模倣밖에 할 줄 모르는 無能한 世代라는 것을 自白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국립서양박물관(東京)



휘트니 미술관(뉴욕)



국립 미술관東館(와싱턴)

우리나라 박물관 건축의 歷史는 경복궁내에 있는 국립 박물관의 傳統問題是非에서 부터 시작된다. 한국 建築家協會의 치열한 反對에도 무릅쓰고, 이 建물이 세워진 지도 벌써 여러해가 지나갔다. 전시空間을 기반으로 하여

모조품에는 生命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건물은 문제는 또 그후에 많이 발생했다. 많은 관람객들이 이것을 박물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궁극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으며 다음 二世들은 박물관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당연하게 만

든 것이다. 최근에 古建築樣式의 박물관이 또하하나 세워졌다. 이것은 新安 앞바다에서 진저낸 굴동뿔을 크로 전시하게된 光州박물관이다. 이 건물은 정부궁 國立박물관 보다는 한층 發展했다. 즉, 과거의 어느 건물을 그대로

구조가 평평한 면으로 가리워지는데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은 日本 京都의 東本願寺를 구경했을때도 느낀 일이다. 복조건물로 굉장히 큰 이 建物を 밖에서 보고 놀래고 안에 들어가시는 처지가 慶潭해서 의외로 空間이



광주박물관(光州)

로 모방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傳統을 그리워 하고 있기 때문에 古建築樣式을 답습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古建築의 空間特性만을 잘 살려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조의 모양이나 디테일의 모방에 그쳐서는 너무나도 부분적이고 소극적인 일이다. 지붕속까지 括用된 内部空間과 단독建물이 아니고 建物群으로 形成되는 外部空間또한 이에 따라서 여러 건물들이 높고 낮게 배치되어 크고 작은 지붕들이 구성되는 변화있는 調和美는 버릴수 없는 중요한 特性들이다. 광주 博物館의 경우 正門에서 건물까지에 이르는 멀고도 긴 과정이 허전한 外部空間이 되어 버렸고 실제로 작지않은 건물을 작고도 외롭게 만들었다.

작고 단조로운데 또한번 놀랜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古建築에서는 밖에서 보다 안에 들어갔을때 의외로 큰 空間을 느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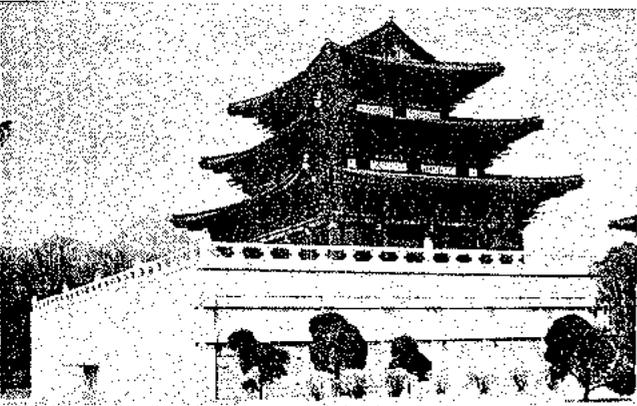
이희태氏의 慶州 박물관과 公州 박물관은 우리가 한번은 겪고 넘어갈 과도기적 建築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傳統樣式의 단순한 모양에서 벗어나 現代的구조공법으로 전통적 감각을 이어 나가려고 시도한 작품으로 해석된다. 지붕추녀의 단순화와 기둥및 난간의 모양과 디테일등에서 作家대로 상당한 노력이 경주 되었음을 엿볼수 있다.

이 박물관은 동방빌딩이나 코리아나 호텔을 설계한 박춘명氏의 設計로 되어 있지만 作家가 의식적으로 회피한 건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분의 作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建築家의 主見으로 강력하게 誘導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순응 해야만 하는 난약한 建築家의 立場도 크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최근에 보면 콘크리트로 古건축양식의 建物を 建造하는 기술은 상당히 발전한것 같다. 그러나 内部에 들어갔을 때는 밖에서 생각했던것 보다 의외로 空間이 작게 느껴지는것은 최근에 지어지는 많은 古建築모양의 콘크리트 건물에서 한결같이 느끼는 共通點이다. 이것은 외벽이 완전히 차단되는 데서도 오겠지만 지붕속

金恒氏는 이것을 피상적묘사에 의한 교묘한 현혹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空間誌1975年3月号)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시도를 전면으로 부정할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한번은 겪고 넘어가야 할 과도기적 建築物로서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건축은 대중을 떠나서는 存在하지 않는다. 최근에 밀어닥친 nationalism과 localism의 물결을 建築家들만이 순수한 立場에서 해석할수는 없는것이다. 우리 교유의 것을 너무나 잊었던 것에대한 반발로써 건축에 있어서는 부고성이나 기법의 modernization은 당연히 수반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이것을 맨 먼저 사용하는 것이 직감적인 데서부터 始作된다. 건축에서는 detail의 modification에서 시작한다고 보아야 될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된다. 建築의 本質인 空間과 구조해석에이르기까지 이러한 협력을 계속 이끌어져야 한다. 광주 박물관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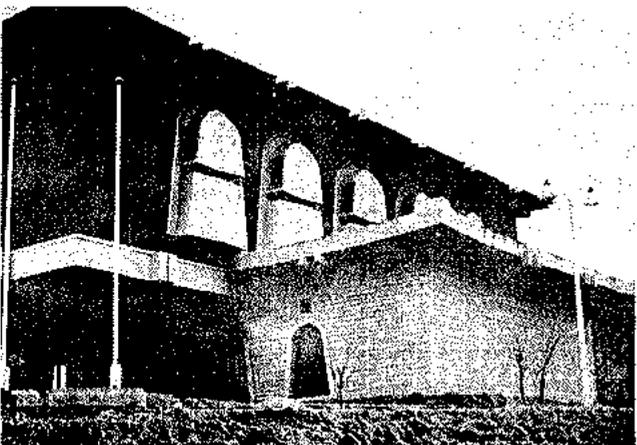
우 큰 지붕속 空間의 活用이 内部에서 전혀 없는것은 부의미했고 또한 이러한 무의미한 공간을 적게 하려고 지붕의 불매가 너무 완만해 진것도 문제점이다. 본관 남측의 넓은 뜰을 관람객 동선과 너무나 부관했고, 여기에 세워진 두개의 石塔(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은 이 건물이 불국사 배치와 무관한데, 대칭으로 된것이 극히 어색했다. 차라리 이 두석탑은 모조 전시품으로써 건물배치와 연관없이 전시 되었어야 했다. 별관은 후에 지어져서 그런시 몰라도 본관과의 동선이 부자연 했고 매점을 남측에서 멀리 한것도 지루한 동선을 강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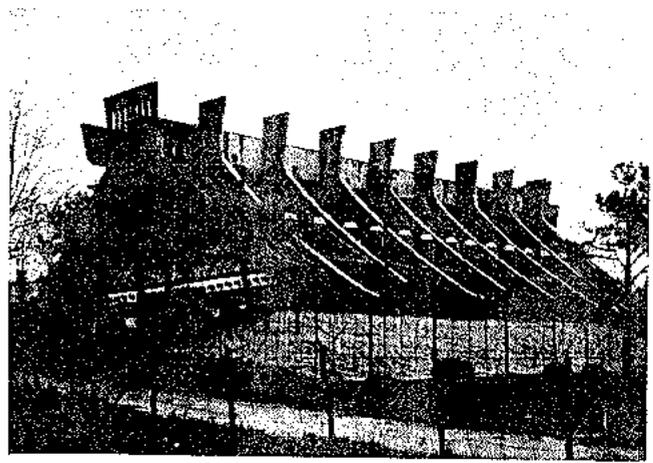
국립박물관(서울)

공주 박물관의 경우는 이러한 점에서 경주 박물관의 경우보다 훨씬 발전된것을 보이고 있다. 다시말해서 무의미한 공간이 없어졌다고 하는점과 무녕왕능의 아치곡선을 부리없이 現代的 수법으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언덕위에 세워진 이 건물은 이층부분이 일층보다 넓은 캔틸레버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경쾌하며 벽돌면이 흰 부분과 잘 調和를 이루고 있다. 우리나라 博物館 建築中 아무 물의 없이 지어진것만해도 이建物は 評價받을만 하다. 다만 内部의 空間形成이 너무나 單調로운것이 아쉬웠다. 一,二층 사이의 空井이 좀더 크고 주계단이 좀더 뒤로 불러냈더라면 시원하고 위 아래층이 形成하는 空間의 흐름과 變化가 스므스 했으리라 느껴졌다.

外部空間의 構成에 있어서는 正門이 있는 하단과 建物



공주박물관(공주)



부여박물관(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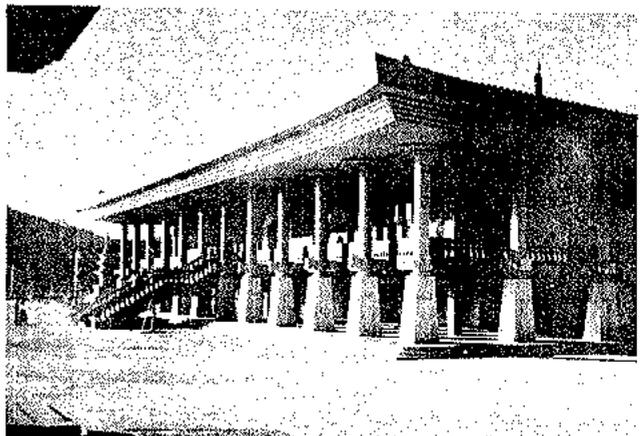
이 있는 上단지 사이의 계단이 너무높고 單調로웠다. 계단이 높은 단지를 싸고 들어가 中間의 넓은 中間단지를 두고 여기서 建物を 正面으로 進入시키는 方法을 나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았다.

어프로치 계단과 石造 展示物들을 적소에 전시하는 넓은 中間단지가 構成하는 外部空間이 좀더 다양해질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設計者는 下단지에서 보았을때 建물이 힘찬 지반위에 整然하게 받쳐지는 모습을 더 重要視했는지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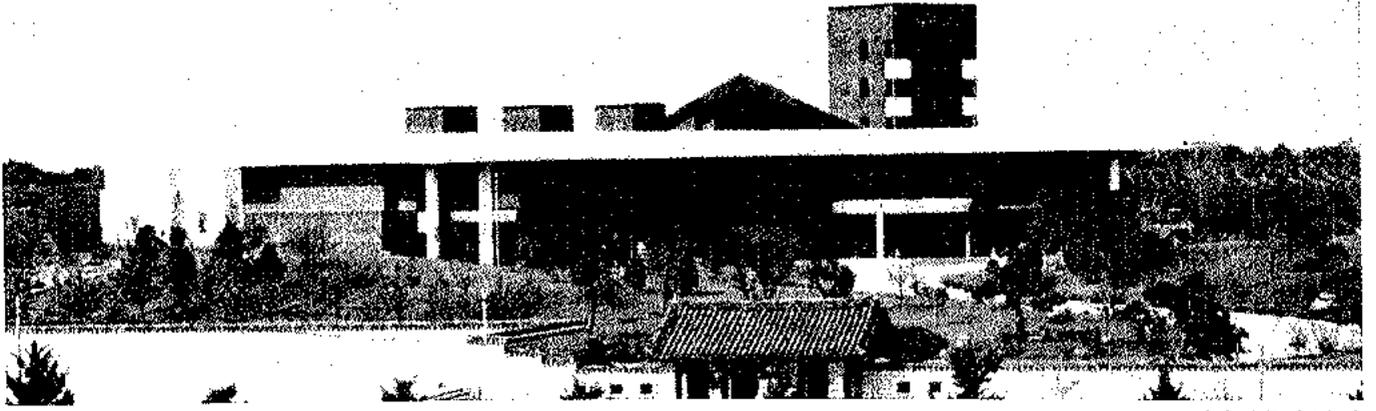
公州와 가까운 扶余에는 金壽根氏 設計인 부여박물관이 있다. 이 건물은 1977年 東亞日報의 日本色 是非보 너무나 화제를 일으킨 建物이다.

한 建物を 中心으로 하여 이매저범 論難을 많이 거친 것은 일찌기 없었을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建築에 관심을 갖어본것은 建築界의 發展을 위하여 다행스러운 일이었으나 建築의 本質的인 면에서 벗어나 外形의 감각에만 치우쳤고 반면에 이것으로 인하여 한동안이나마 창의적 노력을 시도하는 建築家들의 의욕을 저해한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었다.

작년에 이곳을 처음으로 찾아간 筆者는 이 건물이 왜 그렇게 물의가 있었던가하고 많은 호기심을 갖었었다.



경주박물관(경주)



민속박물관(은양)

門이나 本建物の 형태가 확실히 도리이(鳥居)나 神社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反日感情에 젖은 韓國人에게는 이것을 연상하게끔 했던 것으로 理解할수가 있었다.

이에 反하여 本建物の 경우 지붕에는 한식개와를 얹고 외부에 노출된 보를 밑부분에서 버선모양의 곡선으로 하였으며 박공벽에는 古建築의 문양을 導入한 점이러던가 内部에서 통나무 서까래를 써서 韓式住宅의 대청마루 천정을 연상하게 한점 등 한국적 감각을 표현하려고 시도한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러한 細部的인 디테일에서 보다 建築内部와 外部의 空間構成을 크게 의식하고 設計된 建物로 높이 評價되어야 할것이다.

正門에서 本建物까지의 進入過程을 변화있는 展示空間으로 活用한것은 우리나라 古建築에서 흔히 많이 보는 공간 구성技法을 그대로 이어 받은것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本建物에의 進入方式을 흔히 보는바와 같이 建物中央으로 하지 않고 한쪽끝으로 비껴서 들어가 左側으로 들어서 中央階段을 正面으로 대하게 한것은 榮州의 浮石寺 無量壽殿을 연상케 하기도 했다.

傾斜된 지붕밑의 空間은 시원함과 아늑함을 동시에 지니는 特性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지붕밑 空間을 톱라이트로 밝게하고 아랫층까지 넓게 되어진 空間속에 二층에서 내려진 계단이 전시공간을 활기있고 流動의공간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또한 지붕의 구조적표현이 이것을 크게 도와 주고 있다.

外部空間이 東西로만 허전하게 퍼진 점이러던가 巨大한 지붕이 땅과 직접 맞닿았을때 内部에서 연상되는 땅속공간이 전혀 없이 Flat하게 다루어진 점이 어색하게 느껴진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작가의 개성 탓인지는 몰라도 건물의 매쓰가 지나치게 육중한 느낌을 주는것도 생각해 볼만한 점이었다.

지난봄에는 우연히 溫陽에 들렀다가 이곳에 지어진 民俗박물관을 구경하고 돌아왔다. 民俗박물관 이라고 하면 더욱이 復古的 양식이 당연히 뒤따르는 것처럼 생각되는 현실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설계 된것이 굉장히 반가웠다. 벽재로만 古建築에서 사용되던 전통을 사용했을뿐이

다. 中央홀에 들어 서면서 내부까지 연속된 전돌벽이 内外空間을 부드럽게 이어준다. 中央홀은 2층까지 이어진 큰 空間이며 한쪽으로 놓여진 계단과 벽면의 凹凸, 천정위에 매달려 전시된 수많은 연과 홀가운데 놓여진 돛배등 建物과 展示物들간의 호흡이 잘 맞게 구성되어 있는것이 觀者를 대단히 즐겁게 한다. 韓國인의 一生과 衣食住의 생활가구들이 전시되어 있는 제一전시실은 전시된 물품들이 작운데, 알맞게, 천정이 낮은공간을 平面的으로 凹凸를 주고있어 친밀감을 주고 있으며 제二전시실에서는 비교적 큰 전시물들인 生産가구들이 천정이 높고 넓은 변화있는 공간속에 역시 알맞게 잘 전시되어 있다. 특히 가려진 高窓에서 들어오는 자연광선에 의하여 공간구성 효과는 더욱크다. 觀者실 윗층의 휴게실 위치와 인테리어 디자인 등은 좋았으나 완전히 막고 실내조명에만 의존한 탓인지, 이듬고 답답한 가분을 주는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제二전시실 에서와같이 高窓에 Clearstory에 의한 자연채광을 도입했으면 하고 생각된다. 박물관은 도난방지 관제로 유리창을 극도로 제한한데도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인공조명에만 의존한 관제로 외부로 나왔을 때는 약간 현취感을 느끼게했다. 들어갈때도 갑자기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한것도 고려했어야 할 점이었다. 뒷뜰이나 앞뜰部分의 Exterior Design이 内部와 外部가 만나는 완충空間이 필요했으며 Exterior Design도 좀더 적극적으로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쉬어 진다. Sert의 미술관이나 日本의 熊本県立美術館(前川國男設計)을 생각해 보는것은 지나친 욕구 일런지 모르겠다. 절충적形式으로 된 民芸品판매점은 그런대로 수공이 되지만 本館과의 連関性은 별로 없었다.

이 建物 역시本館전물의 연장으로 설계 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래도 가운데 넓은 정원동산을 바라보면서 빈대떡을 먹고 나서의 기분은 유달리 상쾌했다. 設計者인 金錫哲氏의 노력을 높이 評價하고 싶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지어질 博物館과 美術館 建築이 전통이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나 自由롭고 새로운 創作을 試圖한 作品이 속출하기를 바라며 이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 建築의 새로운 轉期를 맞았으면 한다. □

筆者：서울産業大學 教授

아파트, 單獨住宅 住民의 住居意識 및 行態에 關한 比較

—서울의 境遇를 中心으로—

宋 長 福

第一章 序 論

第一節 研究目的

住宅은 人間이 生存하는 데 있어서 꼭 必要한 三大要素 중의 하나이며 한 家族單位가 安住하는 必要要素이다.

그러므로 人間은 오랜 歲月동안 住生活을 通하여 不便한 住宅構造를 改善하여 왔고 便利한 部分을 研究 發展시켜 왔다. (1)

또한 住居는 人間이 生存하기 위하여 가장 基本的인 條件이며 勞動力 再生産의 場이고 都市 農村을 가릴 것이 없이 聚落形成의 基本要素이다. 人間은 집에 居住하는 動物"이며 따라서 住居는 人間이 人間이기 위한 最低 條件이며 住居에 對한 欲望은 "人間最低의 欲望"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一般的으로 住居形式은 單獨住宅形式과 聯立住宅 및 「아파트」와 같은 共同住居形式으로 分類할 수 있다.

私有의 敷地에 넓은 庭園을 確保할 수 있는 單獨住宅은 가장 좋은 住居形式이 될 수 있으나 限定된 都市空間內에서 急激한 人口增加로 因하여 平面 擴散이 不可避하게 되었고 여기서 派生된 여러가지 都市問題와 環境問題는 擴散만이 能事가 아니라는 것과 土地의 效率을 높이는 方法으로서 住居의 立體化 方案 내지 住居地의 高密度政策 즉 「아파트」建設이 最近 都市住宅 建設에 환영을 받고 있다.

「아파트」即 共同住宅의 必要性은 都市의 膨脹을 防止하며 土地의 利用度를 提高시키는 同時에 機能 爲主의 住居

環境 및 住居施設을 造成할 수 있다는 데서 그 意義를 찾을 수 있다.

都市生活에 있어서 住居樣式이 「아파트」라는 새로운 住居패턴(pattern)으로 登場함에 따라 政策 立案者들이 都市計劃과 土地利用計劃에서 이를 方便으로 利用하여 國家에서 施行하고 있는 公營住宅 및 民營住宅 建設을 主導하려는 一般的인 見解를 가지게 된 것이다.

1978年 8月末 現在「서울市 市政主要実績」(表 1-1)에서 밝힌 住宅保有現況을 살펴보면 總住宅戶數는 870,870戶로 住宅保有率 61.36%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974년에 57.83%, 1975년에 58.32%, 1976년에 59.13%, 1977년에는 61.07%에 비추어 볼때 계속 上昇 추세임을 알 수 있고 이를 住宅形態別로 보면 單獨住宅이 全體의 82.6%, 「아파트」가 13.5%, 聯立住宅이 3.9%로 全體住宅形態別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比率이 漸次 높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960年代 初 以後 國家經濟가 産業化政策으로 一貫되어 오면서 合理的 生活樣式 및 生活風潮와 價值觀, 倫理觀의 西歐化 追求 傾向은 傳統的 倫理와 生活秩序 및 空間秩序와의 사이에 적지않은 摩擦과 矛盾을 誘發하게 되었다.

衣·食·住 등의 生活에서 비롯한 諸般 動態의 生活의 急速한 合理化 追求傾向은 必然的으로 靜態的, 古典의 生活空間과의 사이에 갖가지 矛盾을 낳는 가운데 相互作用에 依하여 漸次 새로운 空間秩序를 創出한다는 엄연한 生活空間의 論理가 否定되어지는 現象마저 낳기도 하였던 것이다.

〈表 1-1〉 住宅 保有 現況

區分	年度	74	75	76	77	78. 8末
		準家口 7.1%	準家口 7.1%	準家口 7.1%	準家口 10%	準家口 9.5%
人 口		6,420,875	6,889,470	7,254,958	7,525,629	7,774,030
家 口 數		1,273,678	1,410,748	1,461,009	1,526,595	1,591,400
住宅 所要 家口 數		1,183,247	1,308,417	1,357,281	1,373,936	1,440,220
住宅 數		736,656	763,084	802,571	839,683	870,870
住宅 建設 數			41,428	54,483	52,967	36,190
保有 率		57.83	58.32	59.13	61.07	61.36
增加 率			(0.49)	(0.81)	(1.94)	(0.29)

註 1) 서울特別市, 「서울市 都市現況 精密調査」, 1977. p. 236

註 2) 孫續陸, 「社會開發과 人間住宅」(韓國住宅公社, 1977, p. 39)

그것은 한편으로 住宅開發이 遲延不振하였던 理由도 있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政策的으로도 이 方面에 對한 認識과 理解가 不足하였던 때문으로서 그로 因한 住宅問題는 날로 深刻해 지는 形便에 있으며 絶對적으로 不足한 住宅問題의 量的 解決조차 아직도 遙遠한 바 있는 것이다.

특히 1975년 5月 建設部에서 發行한 「住宅政策과 長期 建設計劃」3)에서 1975년부터 1981年 사이에 建設코자하는 住宅의 總數가 2,087,000戶인데 이중 約 96%에 該當하는 2,003,000戶를 都市住宅으로 計劃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都市住宅不足難이 얼마나 深刻한지를 잘 說明해 주고 있으며 住宅問題가 過去 어느때도 보지 못했던 深刻한 樣相으로 台頭되고 있음이 오늘의 社會的, 國家的 現象임을 否認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本研究에서는 서울市域內의 既히 完工 入住한 大單位「아파트」중에서 盤浦 地區「아파트」와 大韓住宅公社에서 區調整理事業으로 造成된 團地內에 完工 入住하고 있는 禾谷地區 單獨住宅을 對象으로 住民의 住居意識 및 行態를 調查 比較 分析하고 各 그 特性을 把握하여 適合性의 基準이 어디에 있는지를 究明해 보고자 하였다.

특히 傳統的인 住宅構造로 부터 각 새로운 住居環境에 適應하는 過程에서 居住者의 環境에 對한 意識變化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으며 家族構成의 變貌의 差異는 如何한 形態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居住者가 物理的인 環境으로서 「아파트」와 單獨住宅이라는 空間構造를 變形시키려는 意圖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調查 分析하여 앞으로 都市住宅政策立案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第2節 研究對象 및 範圍

本研究에서 對象으로 삼고자 하는 「아파트」 및 單獨住宅은 서울市域內의 大單位「아파트」중에서 盤浦「아파트」와 禾谷地區의 單獨住宅을 選定하여 研究對象으로 하였으며 이것을 桴한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와 單獨住宅 各 住居樣式이 都市民의 새로운 住居樣式으로 重要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는 事實

둘째, 對象地區가 單純한 住居地域이 아니라 새로운 市街地(「아파트」)가 形成되므로써 「커뮤니티」(community)의 特性이 잘 나타난 地域으로 開發되고 있는 점, 또는 單純한 住居地域으로만 造成된 單獨住宅이 主流를 이루어 開發되고 있는 事實,

셋째, 「아파트」의 單獨住宅의 單位住居 規模를 볼 때 中所得層내지 高所得層에 이르기까지 多樣한 規模를 比較한 점

이와 같이 새로운 住居樣式으로서 「아파트」와 單獨住宅이 大都市에서 大量 建立되어 都市民에게 供給되고 있는 現狀에 비추어 볼때 傳統的인 우리의 住居樣式에서 익혀진 固有의 慣行이 새로운 住居環境에서 如何히 適應되고 있으며 어디까지 適應이 可能한 것인가 하는 問題와 새로

운 住居環境을 우리의 住居 慣行에 맞도록 어떻게 變形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對한 問題들은 住居環境計劃의 根本的 觀心이 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本研究에서 住居環境 가운데 「아파트」와 單獨住宅 各 住居形式을 物理的인 構造物로 把握하고 單位家口內에서 構造物이나 施設物의 住居 適宜性을 究明해 보고자 한다.

第3節 研究方法

住生活의 行動 分析이나 住要求4)의 意識分析은 實際로 多樣한 方法에 依하여 調查 研究되어야 한다.

生活의 모든 側面은 心理學的, 生態學的 및 物的인 面에서 비추어 봄으로써 이를 理解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例컨대 住居 形態別에 對한 生活實態를 比較하거나 生活의 實態를 經年的으로 調查 把握할 수도 있으며 轉居를 통한 把握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行態 調查와 並行해서 意識面에서 住生活 樣式의 變化나 要求 變化에 着眼할 것이 同時에 必要함은 두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對象地區의 「아파트」와 單獨住宅 別로 分類하고 居住者의 關係에서 住居環境의 質을 가능하는 指標를 設定함으로써 그 指標에 따라 住居環境의 適宜性을 調查 分析하였다.

標本의 크기는 母集團 盤浦 地區 3,530家口의 約 6%에 該當하는 200家口와 禾谷地區 單獨住宅 5,230家口의 約 4%에 該當하는 200家口의 都合 400家口를 系統標出方法, 層化標出方法에 依하여 決定하였다.

調查方法은 質問紙에 依한 面接調查를 原則으로 하였으나 面接을 拒否한 約 28% 程度의 家口는 質問紙 調查에 依하여 調查하였다.

分析의 方法은 主로 記述的인 分析에 依하여 集中化 傾向分析, 度數分布方法과 要因分析方法을 桴하였다.

例컨대 中流階層의 住空間 利用의 實態의 發展 動向을 把握하여 이를 庶民住宅에 適用함으로써 庶民層의 生活 레벨(level)의 合理的인 向上을 誘導하고자 한다.

第二章 住居의 概念

第1節 住宅의 本質

漢字의 「住宅」에서 「人」은 人間을 「主」는 主体, 主人을 뜻하며 「字」는 음, 지붕을 「宅」은 植物이 地面에 着根하듯 定着함을 뜻한다. 또한 英語의 「長期間 滞在하다」라는 뜻의 「dwell」(「生活을」 收容하다)의 뜻의 「house」(生活의) 本拠地)의 뜻과 그것이 「家族」의 概念으로 理解됨을 나타내는 「home」도 漢字의 住宅과 같은 意味를 內包하고 있음은 興味로운 일이라 할 것이다.

即 住宅이란 一般的으로 人間이 一定한 場所에 居處를 定하고 人間의 内部的이며 個人的인 家庭生活을 營爲해...

가는 터전이며 安息처이다. 住宅에서의 生活分野는 비단 衣·食·住에만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肉體的, 精神的인 健康은 勿論이며 勞動의 能率, 育兒, 教育, 人間情緒의 보전등에 密接한 關聯을 갖는다. 또 住居內에서 行해지는 一切의 物理的, 生理的 行動에서 부터 生活感情을 包含한 心理的 行動까지도 包含한다.

고로 住宅은 人間生活의 基本的 需要이자 安息처로서 家族과의 生活을 營爲케 하는 터전으로서 勞動力을 再生産하고 後世代를 이끌어 나갈 子女들의 教育 乃至 保護의 役割地로서 또한 經濟的 消費 및 生産活動, 外部防禦와 평안의 維持 및 祭祀와 禮式을 行하는 日常生活의 本거지로 모든 社會制度의 母體(Feeder)인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住居는 바바람을 피하는 Shelter라든가 bed와 같은 手段的인 機能에서 벗어나 人生을 즐기 위한 터전, 人間性을 回復하고 人間의 可能性을 實現하는 터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所得水準의 向上, 餘暇期間의 增大, 家族構成의 變化에 対応하여 사람들의 住宅意識, 住居觀도 끊임없이 向上, 變化되어 가리라고 생각한다.2)

第2節 住宅의 役割

住居는 原始時代의 自然으로 부터의 隱身處(shelter)로서 洞窟에서 始作되어 農耕生活의 定着에 依하여 삶의 터전으로서 人間의 定住文明의 基盤이 되었다. 이러한 住居의 定着的인 意味는 現代生活의 變化에 따라 變化되어 가고 있으며 變化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의 住居의 意味가 個人的인 것이었던 것에서 벗어나 社會的인 것, 環境的인 것을 뜻하게 된다.

또한 生活論的으로 住居와 都市는 細胞와 生命體와의 關係와 같으며 이러한 有機體는 새로운 發展段階로 進化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概念도 時代 및 生活樣式에 依해서 다르나 그 大略的인 것을 紹介해 보려고 한다.

wallace Smith에 依한 住宅의 役割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3)

- 1) 隱身處(Shelter)로서의 住宅-사람이 自然에 對한 挑戰 즉 비·바람들의 威脅으로부터 自己를 保護하기 爲한 構造物으로써의 住宅
- 2) 私生活(Privacy)保護處로서의 住宅-사람은 獨立된 空間을 追求하는 欲求는 隱身處를 갖고자 하는 欲求와 同-하게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 3) 立地(Location)로서 住宅-都市의 家口들은 一般的으로 매일 家庭과 職場間에 出退勤을 要하는 勞動에 종사하므로써 所得을 얻어낸다. 그러므로 出退勤을 위한 交通거리의 幅에 있어 實質的인 限界가 存在한다.
- 4) 快適한 環境(Environmental Amenities)으로서 住宅-이것은 바람직한 住居地에 影響을 주는 周

邊地域의 特性이라고 할 수 있다. 子女들의 學校 그외 다른 서비스(Service)即 公園, 運動場, 病院등 좋은 住居環境과 關聯 있는 公共施設은 住居地에 큰 影響을 주는 것이다.

5) 投資의 目的物(Investment)로서의 住宅-住宅은 生活의 場所로써 뿐만 아니라 財産으로서 意味를 갖는 것이다.

또한 花園利權은 住宅을 生活者의 立場에서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4)

1) 氣候緩和의 機能

이것들은 風雨를 防禦하고 酷暑와 寒冷으로 부터 身體를 保護하기 위한 것 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住居에서 가장 基本的인 機能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生業의 場所로서의 機能

農耕을 始作하여 收穫物을 얻기되면 保存과 加工의 場所로서 住居가 使用되기 始作했으나

近代는 生産은 점차로 집에서 부터 分離하여 住宅은 住居를 위한 것으로 되어가고 있다. 곧 職住分離인 것이다. 그러나 職業에 따라서는 아직 職住分離는 行해지지 않고 併用住宅이라는 形態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

3) 休養의 場所로서의 機能

職住가 分離뿐만 아니고 勞動觀에도 變化가 發生하여 勞動은 生活의 目的이 아니고 生活의 手段으로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勞動은 職場에서 勞動에 對應하는 休息은 住居에서라는 認識이 점차로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休養의 場所로서의 住居의 機能은 오늘날 점차로 擴大해 나갈 것이다.

4) 家族의 結合 場所로서의 機能

社會의 生活單位는 家族인 것이다. 家族은 血緣으로서 맺어지고 父母, 兄弟, 姉妹라는 肉親의 愛情으로서 結附되어 있기는 하나 여전히 한 집안에서 居住한다는 物理的 條件도 必要하다.

5) 家事勞動의 場所로서의 機能

家事勞動은 家庭生活를 營爲하는 勞動이며 그 大部分이 主婦에 依하여 住居속에서 行해진다. 따라서 住居의 設備가 되어있고 그 配置가 能率的이며 家事勞動에 關係가 깊으며 住居의 質的인 向上 및 家事勞動의 面으로는 強하게 要求되는 바이다.

第3節 住宅의 類型

住宅은 大都市나 小都市에서 많이 利用되고 있는 「아파트」, 聯立住宅과 都市, 農村을 莫論하고 거의 大部分 利用하고 있는 單獨住宅으로 区分된다.

註2) 孫禎睦, 「社會開發과 人間住居」, 住宅, 大韓住宅公社, 1977, p. 39. 註3) Wallace F. Smith, 「The Social and Economic Elements」, Hous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 32

獨立住宅은 一棟이 平面 및 立面的으로 完全히 獨立된 建物を 갖는 것을 말하며 그 立面形은 單層(平家) 또는 重層(2~3層)으로 나누어지며 聯立住宅은 單層 또는 重層으로 된 個個의 住戶가 水平的으로 二棟이상 連續, 結合된 것으로서 建物の 外觀은 低層의 單一 建물이 된다.

아파트는 單層(flat) 또는 複層(maissomette)으로 構成된 個個의 單位주택(unit-house)은 複道, 階段, 홀등을 共用的 通路로하여 水平, 垂直方向으로 結合, 積層된 것으로서 建物の 外觀은 中高層의 單一 建물이 된다. 5)

그러나 韓國人들의 住宅類型에 對한 選好 現象이 單獨住宅이기는 하지만 住宅不足 現象이 甚한 實情에서 單獨住宅만을 購入하겠는 생각은 아닌 것 같다. 6) 그것은 新興産業都市 등에 「아파트」나 聯立住宅을 그들이 適切한 機能을 遂行하도록 짓는다면 서슴치 않고 購入할 것으로 생각되며 各住宅의 長短點을 살펴보면 6) (表 2-1) 과 같다.

각된다. 1)

우리가 生活하는 居處의 便利度 또는 保健衛生상의 程度는 住居環境으로 包括하여 表現하게 된다. 即 住居環境이란 住宅의 質的 狀態를 意味하는 것이다. 質的 狀態의 說明은 前述한 것과 같이 主로 衛生에 關한 諸要素인 住居密度와 住宅의 規模 및 그 附帶施設의 狀況으로서 表現할 수 있으며 아울러 住宅의 建築年度 및 材料로서 建物 構造 自體의 良好性 程度를 把握하는 것도 여기에 包含되는 것이다.

그러나 住居環境이라는 것은 단지 物理的 外形의인 것 뿐만 아니라 精神的 內面的인 것까지 內包되고 있다는 것을 理解해야 하며 住宅問題가 단지 住居라는 집形態 뿐만 아니라 地域社會를 形成하고 있다는 點에서 取하여지는 理由도 아마 이러한 事實에 基成하고 두어 있다고 보아도 좋은 것이다.

(表 2-1) 住宅形態別 長短點 比較表

比較 形態	長 點	短 點
單獨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Privacy)가 確保된다. 私有的 庭園을 가질 수 있다. 所有欲求를 滿足시키고 個性을 確立시킨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都市空間의 擴大 우려 적은 大地에 連續的으로 配置될 경우 지루하고 公共綠地 造成이 어렵다.
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低層이 갖는 社會的 親交와 活動의 機會 門路 土地利用率을 높일 수 있다. 地形條件에 따라 多樣한 配置形態를 가지며 豊富한 視覺變化를 줄 수 있다. 建立의 連立으로 工費 및 工事費 節減 私有敷地를 갖고 獨立된 個人庭園을 갖는다. 計劃方法에 따라 獨立住宅과 比楛한 Privacy와 變化 있는 外觀을 얻을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壁體의 共有로 因한 日照, 採光, 通風에 不利해지며 計劃의 妙를 살리는 努力이 必要해 진다. 計劃이 不誠實한 때는 單調하고 倉庫와 같은 느낌을 주고 單位住居의 프라이버시維持에 不利하다.
聯立住宅	<ul style="list-style-type: none"> 住居地를 高密度化한다. 公共綠地를 가지며 長久的인 社區(Community)를 갖는다. 公共設備로 適當한 室內溫度 維持 	<ul style="list-style-type: none"> 住居의 高層化에 따른 이웃간의 社會的 接觸의 欠如 發育期의 兒童과 老人 및 主婦들의 運動不足과 社會的 親交의 斷絶은 結果的으로 非人間化 非個性的 認識 發達의 障礙要因 垂直動線의 延長으로 住居者들의 外部活動이 적어지고 T.V 視聽時間이 많아진다. 單調하고 同一한 外觀에 對한 心理的 反撥 私有的 敷地와 庭園을 가질 수 없으며 Service Yard가 협소하다.

第三章 住居意識 및 行態

第1節 住居意識

1-1 住居環境

西洋의 말에 「神은 農村을 만들고 人間은 都市를 만들었다」라는 有名한 말이 있다. 自然은 神話時代로 부터의 것이며 都市는 人間이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人間生活에 맞도록 形態를 갖출 必要가 있다.

人間의 活動은 人間과 그 行動的 環境과의 聯關關係로서 이루어진다. 人間과 그 行動環境은 서로 相互 依存의인 것으로 人間活動은 生活空間에 依存하는 것이라고 생

居住한다는 것은 人間 自身이기 때문에 環境이라는 것도 이러한 人間生活과의 關係에 依하여 規定된다. 이 경우 가장 基本的인 環境條件을 形成하는 것은 人間의 生命과 健康과의 關聯되는 環境으로서 世界保健機構(WHO)에서는 健康住居環境의 基本條件(Fundamental of Healthful Residential Enviromental)으로서 2)

- ① 疾病, 負傷의 豫防(The prevention of disease)
- ② 生活能率의 確保(The attainment of efficiency of Living)
- ③ 快適性의 具備(The provision of comfort)로 規定하고 있다.

註 1) 建設部, 「國民주택의 適正規模와 부대 福利施設基準 研究」, 1976, p. 30

註 2) 金汎良雄, 「住宅環境」, 有斐閣, 1976, p. 118

1-2 住居空間의 構成

人間의 生活空間은 屋外와 屋內로 区分되며 우리가 하루의 時間을 어디서 더 많이 보내느냐의 따라 各各 그 空間의 比重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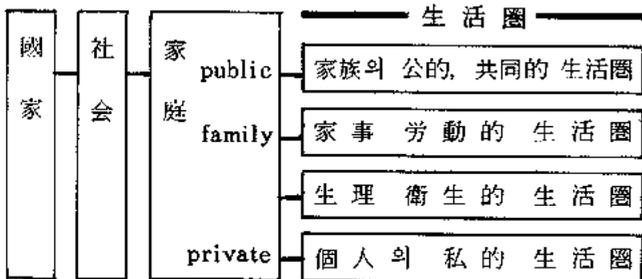
그러나 人間이 몸을 담고있는 住宅이라는 그릇에서 生活해야 되는 것이다. 住空間은 원래 住生活이 영위되는 場所로서 그 目的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며 住生活의 完全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住建築이 오히려 住生活을 規制한다면 옳은 意味에서의 그릇이라 할 수 없고 이 規制가 住生活의 秩序와 均衡을 調化있게 도와서 健全한 方向으로 이끌어 간다면 바로 훌륭한 住生活의 그릇이 住宅이 되는 것이다.

現代 住居生活의 基本的인 組織은 就寢으로 代表되어 個人的 私의 生活圈, 團樂으로 代表되는 家族의 社會的 生活圈, 調理로 代表되는 家事勞動의 生活圈, 排泄로 代表되는 生理衛生的 生活圈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적어도 住居空間은 어떤 房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生活圈域에 屬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分類法과 生活空間의 關係를 特徵지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3)

- | | |
|--------------------------------------|------------------------|
| 1) 個人的 私의 空間-寢室, 書齋 | } 靜的 空間
(밤에 쓰이는 空間) |
| 2) 生理衛生的 空間-浴室, 便所, 洗面室 등 | |
| 3) 家族의 社會的 空間-居室, 食事室, 応接室, 玄關, 複道 등 | } 動的 空間
(낮에 쓰이는 空間) |
| 4) 家事勞動的 空間-부엌, 洗濯室, 家事室 | |

(圖表 3-1) 住居에 있어서 生活圈의 区分



第2節 住居의 行態

2-1 住居週期(Housingcycle)의 概念

家族週期(Familycycle) 또는 生活週期라는 말이 있다. 一般的으로 人類文化學者들이나 家族關係 分野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使用하고 있는 用語이다. 兩者는 비슷한 말이나 家族週期란 주로 家族들이 擴大하여 나가는 過程에 焦點을 둔 것이고 生活週期는 한 夫婦의 一生의 週期에 焦點을 둔 用語이다. 4)

이러한 週期에 關心을 갖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住宅의 需要는 巨視的으로 보면 人口의 增加와 家口數의 增加에 依하여 影響을 받지만 家口의 構造나 크기에 依해서도 相當한 影響을 받는다.

둘째, 우리가 住宅의 供給과 需要등을 問題로 하는 것은 快適한 住居環境을 마련함으로써 國民生活을 安定시키고 向上시키는데 그 根本的인 目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住宅의 供給計劃에서 그 家族이 住宅에서 求하는 主된 機能이 考慮된다면 住宅의 位置나 設計面에서 그것이 考慮되지 않은 境遇에 比하여 많은 差異가 있을지도 모른다. 卽 住居事情도 그와 같은 週期에 따라 相當히 影響을 받을 뿐만 아니라 住居生活도 그러한 家族週期 또는 生活週期와 關聯하여 一定한 類型化된 樣相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것을 住居週期(Housingcycle)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住居週期는 自己 所有의 住宅을 갖고자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強한 欲求와도 密接한 關係가 있다. 이러한 欲求는 우리나라의 住宅事情과 賃貸事情과 慣例, 그리고 賃貸人과 家屋主의 不平等한 여러가지 關係때문에 더욱 強해지고 있다.

2-2 住居週期의 段階

住生活의 立體的인 人間集團은 家族인 것이다.

따라서 家族構成이나 家族成員의 個人的 趣向이나 家族型 및 住居週期를 理解한다는 것은 住生活 空間計劃의 基本이 된다. 家族의 成長·變化를 物的 空間의 強한 固定性에 어떻게 対応시킬 것인가의 問題에 있어서 住居週期를 理解한다는 것은 住生活空間이 有機體로 될 수 있는 基本條件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學者들이 이러한 週期를 어떻게 分類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P. Nickell과 J. M. Dorsey는 다음과 같이 3段階로 分類하고 있다. 5)

第一段階 家庭形成期(The beginning family stage)

第二段階 擴大期(The expanding family stage)

第三段階 縮小期(The contracting family stage)

第一段階는 結婚으로 始作하여 첫 아이를 낳기까지 이니 第二段階는 子女를 낳아서 養育하고 教育시키는 段階이고 第三段階는 子女의 職業適應期로서 子女들이 結婚生活을 營為하고 隱退하는 時期를 말한다.

그런데 韓國의 境遇는 事情이 약간 다르다. 卽 韓國사람은 이러한 家族의 週期類型에 長子優待 不均等相統의 原則이 크게 影響을 주고있는 直系家族制이기 때문이다. 近間에 事情이 많이 變化되었으나 아직까지는 長男을 中心으로하는 直系家族制이며 이러한 長男은 父母와 別居하지 않고 同居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諸事實과 그리고 家族이 家屋에서 求하는 主要 機能을 勘案하여 韓國人の 住居週期를 다음과 같이 区分할 수 있을 것 같다. 6)

註3) 金一鎮, 曹成基, 住居學, 東明社, 1977, p. 21 註4) 大韓住宅公社, 「住宅有效需要推定研究」(住宅研究資料 住研 H-115)1977, 12, p. 415 註5) P. Nickell, J. M. Dorsey, 「Management in family living」1967, 註6) 大韓住宅公社, 「住宅有效需要推定研究」(住宅研究資料), 1977

即 流動段階, 自家段階, 그리고 定着段階이다.

① 流動段階(또는 出家段階) - 이것은 子息이 父母의 집을 떠나서 다른 住居處를 求하여 나가 自己 所有의 住宅을 갖게 될 때까지의 期間을 말한다. 이와 같이 出家의 事由는 多様하다. 가장 큰 理由가 아마 分家라고 생각된다.

② 自家段階(또는 兵站段階) - 이 出家段階를 거쳐서 一段 자기집을 마련한 때부터 始作된다. 이것은 집세의 負擔과 집주인과의 冷戰狀態에서 벗어난 때이다. 따라서 家族이 住宅에서 求하는 모든것은 完全히 充足시킬수 있는 狀態는 아니다.

③ 定着段階 - 이 段階는 自家段階를 거쳐서 子女들이 長成하고 經濟的 餘裕가 생기고 어느程度 中年 以後에 들어서면 老後에 對備하여 그가 平生동안 그곳에서 安住할 住宅을 求한 時期에서 부터 始作한다. 그러나 이 段階에 到達하는 經路는 多様하나 어떤 夫婦는 그들의 父母의 집을 나와서 살다가 그 父母가 年老하여져서 다시 돌아와서 安着하게 될 수도 있고 父母의 死亡으로 다시 그집으로 돌아오는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家族은 老年에 접어들어 長男에게 그집을 물려주고 조용한 시골이나 別莊과 같은 곳에서 隱退生活를 하는 境遇도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住居週期를 하나의 基準에 依하여 規定하고 分類한다는 것은 極히 어려운 問題이나 다음과 같은 몇 가지 分類基準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現在의 家屋의 位置와 狀態로 分類할 수 있다.

또 그 地域과 그 사람의 學歷水準, 職業 등에 비추어서 그집의 規模나 價格등으로 決定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職業과 學歷을 中心으로 하며 一定 規模 以上の 住宅의 居住者를 定着段階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자기 집 以外の 집에 居住하는 모든 家族 全部를 流動狀態에 있는 出家段階의 家族이라고 보는 方法이다.

比較的 無難한 分類基準은 現在 居住하고 있는 住宅에서 얼마나 더 살고자 하는지에 依하여 分類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住居에서 이사할 意向이 없다면 대체로 定着段階에 있는 家族들이고 2年 以內에 居處를 옮길 豫定인 家族은 대체로 流動段階에 있는 家族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2年以上 10年以 內에 居處를 옮길 豫定인 家族들은 대체로 定着段階에 이르지 못한 家族들로 推定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여기서 2年以上 3年, 4年以內에 居處를 옮길 豫定家族은 流動段階와 自家段階의 사이에서 確實히 分類하기 어려운 狀態인 것으로 여겨진다. 또 5年以上과 10年以上까지는 이사할 意向이 없는 階層에서도 事實은 아직도 定着段階에 이르지 못한 狀態에 있는 家族들이 混在되어 있을 것으로 본다.

2-3 住居段階의 特徵

우선 大都市에서 본 社會的 經濟的 特徵을 流動, 自家

定着이라는 세 住居段階에 따라 그 特徵을 살펴보고 이어서 住居의 現狀態, 이사의 行態, 이사의 方向의 三段階로 나누어 각각을 學歷別, 職業別, 同居家族數別, 所得段階別로 나누어 그 特徵을 考察해 보려는 것이다.

여기서 現住居의 形態란 住宅形態, 所有關係 및 貨貸形態, 同居家族數, 使用 및 必要한 房數, 自家의 必要性을 느낀 時期 등을 包括하며 이사 行態란 居住期間, 이사回數 및 이사理由를 이사方向이란 住宅購入基準住宅購入資金의 出處(source), 住宅購入의 經路, 앞으로 이사할 곳에서 오래 居住할지의 可否와 그곳이 故鄉이기를 願하는지 可否를 包括하는 概念으로 使用한다.

1. 社會的 特徵

家族의 構造를 이루게 하는 住居라는 概念은 처음부터 社會內에 存在한 것은 아닌 것 같으며 特殊한 여러 條件과 狀況에서 形成된 것으로 보인다. 即 過去의 一定한 時代의 背景에서 換言하면 社會的, 經濟的 背景과 文化的 狀況에서 形成된 것이 住居概念이다.

住居란 人間의 삶에 必要한 生産과 消費의 場으로 經濟的 機能을 遂行하는 가장 基礎가 되는 社會單位이지만 이러한 住居는 經濟的 單位일 뿐만 아니라 社會的 單位이다. 따라서 住居라는 概念에는 物量概念 以外에 社會構成概念도 包含되어 있다.

이러한 住居概念에는 單純히 生活를 營為하는 起居處라는 概念에 어떤 精神的 要素 概念이 加味되어 住居를 過去와 現在 및 未來를 連結하여 永続하는 家系의 概念과 複合된다.

한편 大都市에서 流動段階의 比率이 相當히 높은 것은 大都市에 있어서의 住宅難의 實情을 露骨의으로 나타내 주는 것으로 解釋된다.

이것은 大都市의 所得水準이 實사 農村보다 높다고 假定하더라도 住宅數가 絶對 不足하여 집값이 비싸고 따라서 住宅購入이 不可能하다는 것도 아울러 말해준다.

都市民의 約 20%는 自家段階에 突入했으며 이들은 現在의 住居에서 滿足하지 않고 언젠가 가까운 將來에 보다 나은 住居로 定着하려고 할 것이다.

2. 經濟的 特徵

住居週期의 社會的 特徵이 주로 住居의 需要側面을 反映한다면 經濟的 特徵은 이러한 需要에 副應할 수 있는 供給能力의 側面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經濟的 特徵에 따라서 새로운 住居에 對한 需要가 創造되기도 한다.

우선 所得階層別로 볼 때 5~12萬원 사이의 所得水準이 都市와 農村을 莫論하고 全體의 約 半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比率은 大都市일수록 多少 낮고 農村일수록 多少 높으며 流動段階일수록 높고 定着段階일수록 낮다.

또한 所得水準의 各 階層別로 본 住居段階의 比率을 보

면 大都市에서는 所得階層에 關係없이 流動段階의 比率은 거의 一定하며(50만원 以下の 경우 平均 66.5%) 所得 50만원 以上에서만 그 比率이 낮아진다.

自家段階와 定段階階도 뚜렷한 差異는 없으나 所得 10~30만원 사이에서 自家 比率이 多少 上昇한다.

3. 年 令

住居週期에 있어서 年令에 따른 分布를 생각하는 것은 人間이 成長하면서 結婚, 就學 또는 就業 등에 依하여 父母를 떠나 그 父母와는 다른 居處에 起居하다가 結婚하여 家庭을 이루고 自己所有의 住居를 마련하고 다시 定着하

게 된다는 住居週期를 생각할 때 父母의 遺産이나 父母가 살아오던 집을 물려받지 않는다는 假定下에서는 年令이 上昇함에 따라 住居狀態는 流動段階→自家段階→定着段階로 移動하여 갈 것이라는 假說을 定立해 볼 수 있을 것이다.

第3節 住居意識 및 行態 測定의 指標

3-1 住居適合性(Habitability)

住宅은 人間生活의 基本的이며 必須的인 安息處로서 人間 存在의 本質的인 根拠가 된다. 그러므로 住宅으로서

(表 3-1) 家族人數 - 住居面積基準(m²)

國名	比較·年度	人 數											
		1.5~2	2.5~3	3.5~4	4.5~5	5.5~6	6.5~7	7.5~8	8.5~9	9.5~10			
I F H P	Köln Standard			51.5	56.5	69.2	76.2	86.7	93.7				
				7	7		7		7				
					60.5		80.2		97.7				
WHO 政府 施策 住宅 調査	lebsgge 에 의한 歐26 國 實例調査 1961. inhabitable surface	min	① 20.7		② 35.9	③ 49.5 ⑤ (42.9)			④ 60.6			① 노인용 ② Flat (엘리베 타無) 또는 2層 4人用 ③ Flat (엘리베 타有) 또는 2層 5人用 ④ 아파트 또는 2層 7人用 ⑤ 農業住宅 5人用	
		av.	32.9		53.0	64.3 (61.5)			78.6				
		max.	48.2		82.3	97.9			104.6				
벨 기 에	一戶建住宅 아파트형식		43 7 60	57 7 74	65 7 82	72 7 88	80 7 95	95 7 100	105 7 120	112 7 117	117 7 132		
			30 7 47	43 7 59	55 7 72	62 7 78	70 7 85						
프 랑 스	1958年 省令		39 7 45		51 61 7 7				73 7 83				
	1973年 省令		25 7 33	25 7 50	42 7 93	90 7 110	90 7 120	90 7 125	110 7 125				
英 國	(2)		490 615 7 7 580 656	70.0 7	80.5	85.0	93.0	99.0					
	英國 (2)			69.5 7 74	83.5 7 88.5	90 7 101	102 7 109						
	(3)	3層建接地住宅				94.0	91.6						
		2層center Terrace			74.3	84.5	91.9						
		2層Send Terrace			71.5	81.7	91.9						
		메 조 넷 트			71.5	81.7	91.9						
Flat		297, 446	56.6	69.6	78.9	86.4							
1戶建住宅		297, 446	56.6	66.0	75.2	83.5							
西 獨	居住者·居住手当対象 1965 max		40 50	65	80 80	90 90	100	110	120		120+ 10×h		

資料：서울特別市, 市政研究資料Ⅵ, 1975.

機能을 올바르게 充足하기 위하여서는 住居의 適合性 問題가 必然的으로 考慮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는 人間生活의 住居條件에 對한 平凡하고 一般性있는 概念的 定義가 必要하게 된다.

住居適合性(Habitability)에 對한 定義는 무엇을 住宅으로 볼수 있는나와 問題로 歸着되지만 終局的으로 生物로서의 人間이 生活할 수 있는 最低限의 居住條件에 對한 操作的 基準과 價値에 依해 判斷되는 概念이며 價値判斷 내지 歷史的 住居 패턴 (Pattern)과 깊은 聯關性을 가지고 있다. 8)

따라서 時間과 空間을 超越해서 統一된 基準을 定할 수 없다. 한 國家에서도 地域에 따라 다르며 同一 地域內에서도 個人的 住居 樣式에 따라 各各 다르다.

即 住居適合性이라고 D. Phillips가 指適한 바와 같이 주어진 時間과 場所에 成就 可能한 最小限의 居處이며 보다 重要한 것은 住居適合性에 對한 變遷하는 基待水準과 價値判斷의 問題이다. 9)

따라서 住居適合性의 客觀的 基準을 찾으려는 努力은 大部分 무엇이 不適合한 住居이냐에 對한 基準을 세움으로써 相對的으로 住居適合性을 定義하려는 努力에서 出發하고 있다. 10)

A. P. H. A(American Pubilc Health Association)의 住居評價 項目을 보면 大別하여 住宅 自體의 評價와 地區

의 評價로 区分하고 住宅 自體의 評價 內容을 設備水準과 維持狀態 그리고 占有性으로 分類하고 있다. 占有性(Occupancy)을 다시 細分하여 房當 人數, 寢室當 人數, 1人當 就眠 面積, 復合世帯 등으로 適合性을 究明하려고 하고 있다. 11)

1人當 住居 面積은 絶對的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境遇에는 韓國國際關係研究所에서 刊行한 「韓國 住宅政策의 方向」에 依하면 2.4坪부터 3.7坪(3.05坪)으로 보았고 外國의 境遇는 물론 우리 事情과는 달리 椅子式의 起居樣式에 많은 室內裝置를 가지고 있어 5人家族 基準으로 벨기에는 80m², 프랑스 100m², 英國 80m², 西獨 90m²로 各國이 相異한 基準을 提示하고 있다.

더구나 <表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各房 單位의 住宅內面積 基準에 있어서도 나라마다 相異한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2)

특히 開發途上國에서 急變하는 住生活 패턴(Pattern)의 變化와 增加하는 文化器機의 利用度를 감안하여 住宅의 1人當 最少面積의 크기는 所得增大과 더불어 相當히 넓어지리라고 豫想된다. 13)

그러나 住宅의 質은 規模만으로 定할 수 없으며 주어진 空間의 合理的인 利用을 計劃的으로 생각하여 空間을 빈틈없이 利用하는 智志로운 態度가 더욱 切實한 問題인 것이다.

<表3-2> 各室面積의 比較(① Net面積 ② 壁眞面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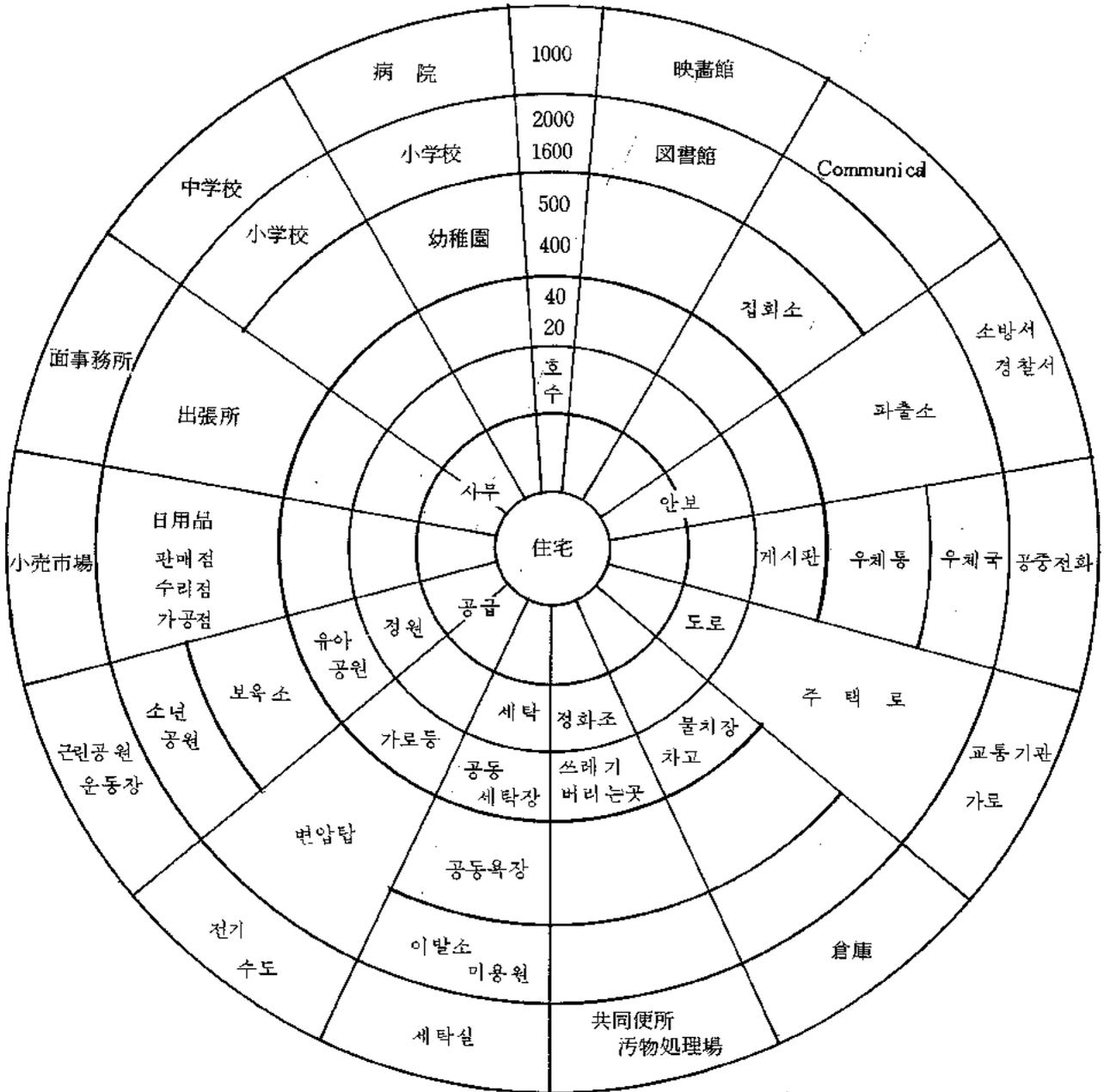
(單位: m²)

	木城案(독신을 除外) ①		住宅公園	建築學會	IFHP	英國	美國	소련
	平均水準	最低水準	1967 ②	1941 ②	1957 ①	1961 ①	FHA ①	1964 ①
침실 主	12%	9.72	9.7	15.1	14.00	11.8	11.0	10
副1	9.72	8.72	8.1	11.2	12.00	9.4	7.5	9
副2	7.29	7.29	5.7-7.3	8.3 5.4	8.00	7.3		8
L	12.42-17.28		9.7		13.0-18.0	15.0(5人用)	15.0-16.5	15-18
D 또는 DK	4.86-9.72	7.29-9.72	8.6	5.4-8.3	5.0-8.0	10.0	7.5-10.0	(3-4室用)
K	4.80-7.20		6.5	4-6	6.0-8.0	7.4	5.5-7.5	6
Σ LDK	22.08-34.50	7.29-9.72	DK型 8.6-11.2 LDK型 16.2	9.4-14.3	24.0-34.0	32.4	20.5-26 (綜合의 境遇)	21-24
浴室			2.1	(4)	4	4.2		
洗面, 洗濯			1.7-2.2	1	1.2	3.04		
便所			0.9	2	1	1.6		
Σ 浴洗便	3.84-6.20	3.84	4.7-5.2		4-7.2	8.84	3.25	
收納	2.16-6.48	2.16-5.76	3.4-4.9	6+2+8+3	1.5-2.5			0.6
注				취침時의- 餘室		Home +or Today + tomorrow	PHA min	國家規格

日本住宅公團調查研究報告集, 昭和44年 5月 「住宅水準의 國際比較 木城和彦」에 依함.

註8) 崔相賢, 「韓國의 住宅 需給狀態와 展望」, 建築士, 大韓建築士協會誌 1974, p. 14.

〈図表3-2〉 Community에서 共同施設一覽表



〈資料：入門住居学, p.78. 図5.18〉

3-2 便益性(Livability)

人間の活動은 人間과 그 行動의 環境과의 聯関關係로 서 이루어진다. 人間과 그 行動環境은 서로 相互 依存의 인 것으로 人間活動은 生活空間에 依存하는 것으로 都市에 있어서 人間の 生活을 生産과 再生産의 循環過程 이라고 생각한다면 都市環境은 生産環境과 再生産環境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再生産環境만을 生活環境이라고 부르기로 한

한다. 따라서 再生産環境인 生活環境은 空間的으로 住宅이 中心이 되는 것이다. 14)

그러므로 Livability는 住宅에서 居住者의 生産性(Productivity)을 維持시켜 주는 住宅의 質的 水準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住宅의 便益性은 住宅内部 시스템(System)인 便益設備 即 給排水·電氣·衛生 및 機能的인 空間 配分과 外部 시스템(system)인 커뮤니티(Community)施設物로 나눌 수가 있다.(圖3-4) 現代 都市住宅은 物的社

社的으로 그 周圍의 環境 構成 因子로 作用하며 住宅이 以前 가지고 있던 여러가지 機能이 지금은 Commercial base나 公共的으로 處理되고 있으며 過去에는 都心에 만 있던 많은 service가 지금은 分散되어지며 하나의 集團화된 近隣地區를 形成하며 그것에 對한 原理는 아래 와 같다. 15)

近隣住區 單位의 原理

- (1) 規模: 하나의 住宅地의 開發은 그중에 하나의 國民 學校가 普通 必要하게 되는 人口에 對한 住宅을 가져야 하고 그 크기는 人口密度에 依하여 決定된다.
- (2) 境界: 그 單位는 通過交通이 內部를 貫通하는 代身, 容易하게 迂回할 수 있는 充分한 幅의 幹線街路에 依하여 周圍를 區隔하여야 한다.
- (3) Open space: 個個의 近隣住區의 要求에 合致하도록 計劃된 小公園과 Recreation Space의 System 이 있어야 한다.
- (4) 公共建築用地: 地區의 境界와 一致한 Service領域을 갖는 學校나 公共建築의 用地는 中心되는 場所에 適切히 統合하여야 할 것이다.
- (5) 近隣店舖: Service를 받는 住民에 對하여 適切한 1 個所 乃至 2 個所 以上의 購賣地區가 住區 單位의 周圍에 設置되어야 하고 도리어 交通의 結節點이나 近隣住區에 隣接한 것과 같은 地區에 接하여 設置되어야 할 것이다.
- (6) 住區內街路: system 住區單位는 特殊한 街路 System을 가져야 하고 個個의 Highway는 豫想되는 交通量과 均衡이 잡혀 있고, 街路網은 全體가 住區單位中의 交通을 좋게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通過交通에 使用되지 않도록 計劃되어야 할 것이다.

3-3 프라이버시 (Privacy)

住宅은 社會의 慣習과 價值觀等에 依하여서 形成된 住居單位로 한 家口가 獨立性을 갖고 外界와 區分되어 內面的인 自己 生活를 營爲하고자 하는 프라이버시 (Privacy)의 터전으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住宅은 그 基本單位가 個人이기보다 家族共同體이며 이것이 또한 地域的인 集居形態를 이루는데서 聚落이나 團地等의 地域共同體形式을 취하는 것이다. 그런데서 住居가 個人이나 家族의 私生活의 便宜와 自由(Privacy)를

保障하면서도 完全한 孤立을 助長할 수 없는 것이다.

住宅環境의 造成은 이러한 兩面性을 考慮하면서 私生活와 社會的 接觸의 均衡을 圖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即 人間의 內面的 要求 뿐만 아니라 社會的 要求를 充足시킬수 있는 共同體의 物理的 生活環境이 되어야 할 것이다.

「프라이버시」의 基本的인 狀態와 이와 關係있는 네가지 機能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프라이버시」의 네가지 基本的인 狀態

- ㄱ) 獨立狀態(Solitude) - 他人의 觀察로 부터 自由스럽게 혼자있는 「프라이버시」의 狀態
- ㄴ) 親密의 狀態(Intimacy) - 夫婦間이나 家族, 同僚사 이에서 볼 수 있는 最大限의 個人的인 友好關係에 서만이 있을 수 있는 「프라이버시」의 狀態
- ㄷ) 匿名의 狀態(Anonymity) - 거리 或은 公園, 地下 鐵 等과 같은 公共施設에서 個人的으로 自由를 찾는 「프라이버시」의 狀態
- ㄹ) 留保의 狀態(Reserve) - 精神的으로 위에서 列拳한 네가지 「프라이버시」狀態중 複合的인 것일 뿐만 아니라 物理的인 施設로서 組織的인 것 보다 人間內部 友好關係가 自然的으로 位置를 要求하는 「프라이버시」狀態

(2) 「프라이버시」의 네가지 機能

- ㄱ) 個人的인 自活機能(Personal Autonomy) - 要求할려는 「프라이버시」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能力을 包含하여 個人的으로 그 環境을 調節하는 個人的인 意識 및 知覺 있는 選擇의 機能
- ㄴ) 感情의 解弛(Emotional Release) 機能 - 日常生活에서 社會 物理學的인 要因들이 緊張을 創造하기 때문에 物理的이고 物質的인 觀點에서 여러 類型의 感情的인 解弛를 爲하여 一定 期間의 「프라이버시」를 必要로 하게 된다.
- ㄷ) 自己의 評價(Self Evaluation) 機能 - 나날의 經驗을 通해서 얻는 情報의 繼續되는 흐름에 비추어 自己를 任意길게 調査, 反省하는 機能이다.
- ㄹ) 通信의 制限과 保護(Limited and protected Communication) 機能 - 友好關係의 많은 役割중에는 必然的인 距離와 制限된 通信이 要求된다.

(계속)

筆者: 삼일종합건축연구소

建築創作의 活性化와 建築家의 使命

本稿는 지난 6월23일 建築士協會 및 建築學會 後援으로 建築家協會가 主權한 建築討論會에서 發表된 論文中 제 1, 2, 3主題文을 于先 掲載하는 것이며, 제 4主題는 다음 7월호에서 다루게 되었음을 알립니다.

建築創作活動의 現實

金 重 業

건축은 인간이 지표면상에 생존을 강력히 주장한 아릿한 시점으로부터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들에게 꾸준히 바쳐진 벽찬 감동의 연속이었다.

『라스코우』의 동굴속에 그려진 달리고 있는 또렷한 소들의 박력있는 「이미지」에서는 생존을 위하여 보다 안전한 그려면서도 쾌적하지는 못한 동굴속의 생활일망정 외계에 펼쳐지는 낮익은 그러나 싸워 이겨야 하는 식용동물들의 그들 나름대로 생생한 파악이 둥근 3차원의 공간에 찬연히 재현됨으로 하여 더욱 축제적인 분위기를 돋구어 뜨거운 감동속에 씨족들의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어 언젠가 이루어지고야 말 보다 나은 지상생활에의 벽찬 꿈을 위한 내일의 승리에의 찬가였음이 틀림없고 먼 훗날의 현대인들에게까지 놀라움과 즐거움으로 하여 가슴뿌듯한 감동속에 사로잡는다.

지상에 세워진 거석군의 하나인 『스톤·헨지』의 기하학적이며 논리적인 축제용 구축물에서는 길고 벽차고 어두웠던 동굴생활에서 드디어 벗어난 인간생존의 지상에의 자신있는 뿌듯한 진출을 뜨거운 몸짓으로 하여 꾸준히 인간들에게 당시의 감동을 다시금 새롭게 되새기게 한다.

큰 돌들을 차곡차곡 지상에 세우다 더욱 크고 웅장한 건축을 위하여 『우르』의 「지그라트」와 같이 인공의 태양의 언덕을 평야위에 흙벽돌로 차곡차곡 쌓아올려 『에소포타미아』의 찬연한 인간개가를 드높이 부른다.

『나일』강변의 끝없는 사막위에 영구한 삶을 위해 「피라밋」군들이 세워지고 이를 지킬 거대한 사원들이 『에집트』 문명의 또한 뜨거운 태양밑의 이그러져간 수많은 인간들에 바쳐진 에테지를 불러 우리들의 심혼에 절묘한 감동의 불꽃을 튀긴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위에 질서의 왕인양 우뚝 솟은 「히피아스」의 손길이 더없이 아름다운 「파르테논」을 빛어 인간들에게 꾸준한 교훈을 남겨 서구문명의 원조로서의 「그리스」문화의 정화가 수없는 찾는이들을 감동의 도가니속에 사로잡는다.

『안테스』산맥의 높은 봉우리를 온통 인간을 위한 삶의 터전으로 바꿔 구름과 바람과 그 많은 이야기들이 흠뻑 담긴 「마츄·핏츄」의 집념어린 계단식 도시가 잉카문명의 황홀하고 웅장한 가락을 불러 찾는이에게 다시 잊을수 없는 추억을 심는다.

『유카탄』반도의 「테노크·티트란」의 인공대지위에 거창히 펼쳐지는 「아스텍」문화의 놀라운 건축기법들이 우주정복의 꿈까지 뚜렷히 예언하여 인간에게 미래의 장까지 펼쳐보이면 그 누가 이를 잊을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인간의 꾸밈없는 정열과 미래에의 뜨거운 지향이 정글속에 거대히 수놓은 「앙골·왓트」 「앙골·톰」 그리고 「바라브돌」의 신비스럽고 피이스럽기조차한 성전들의 다혈질인 조형에서 인간들이 그 얼마나 감동속에 자신들의 뚜렷한 자국들을 수없이 지표면상에 남기려 했는가를 또한 어찌 뜨거운 감동없이 누가 이야기 하랴.

아프리카대륙의 「짐바부웨」의 둥근 성곽들이 신생아프리카의 심볼역을 담당할 지 오래며 「튀준」의 극치탈 수 있는 「알함브라」의 오묘한 육감적인 조형들이 아랍국가의 거대한 꿈을 대변하며, 애처러운 이야기를 깊이 간직한 「타지·마홀」의 황홀한 균제미는 이슬람과 힌두와의 혼혈이 청소의 꽃피운 요염함이며, 동양의 자연과의 오묘한 합작속에 지극한 화음을 하늘위로 내닫는 북경의 「천단」,

조용히 속으로만 불붙은채 소복히 단장한 「종묘」의 절묘한 분위기들이 인간에게 더욱 더 뜨거운 삶에의 의욕을 부돋아 왔다.

세계대륙의 도처에 인간의 감동을 수놓은 멋진 작품들이 세워지고 지워지고 과거·현재·미래에 걸쳐 이어져 간다.

동·서양의 건축창조에의 뜨거운 입김은 장소와 시간 위에 항시 새롭게 펼쳐진다.

그러기에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라 불리워진다. 인간이란 항시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며 살아오기에 되풀이할 수도 잊어설수도 없이 때로는 크라식하게 때로는 로맨틱하게 인간의 끝없는 전진의 자세로 하여 변해왔다.

그러므로 건축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기능의 역할과 인간의 끊임없는 보다나은 환경에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감동을 베풀어 왔다.

「아키텍처」라는 말은 라틴어의 큰 기술이라는 어원에서 시작되어 크다는 것은 위대한것 곧 예술을 뜻하여 첨단을 걷는 기술을 구사하여 예술을 창조하는 것이 건축임을 말해준다.

그러기에 예술사의 가장 중요한 장을 장식하고 있는 건축은 또한 기술사에도 적지않은 업적을 남기고 있어 건축이란 예술과 기술에 양다리를 휴뻑 걸치고 있어 때로는 예술적인 가치가 더욱 강조되는가 하면 때로는 기술적인 발전에 더욱 각광이 비쳐지기도 한다.

이러한 복합적인 건축의 2면성은 기능과 조형과의 완전일치를 꾸준히 요청받아 왔으며 이 어려운 문제에 정확한 답을 푼 이들만이 건축가라는 칭호를 받아왔다.

그러기에 건축가는 천직이라고 받아들여져 왔으며 냉철한 지성을 지님과 동시에 뜨거운 감성을 지닌 건축가상이 요망되어 왔다.

자신의 예술과 기술에의 끊임없는 정진위에 가장 객관적인 인간분석의 쌓아올림이 비로서 참다운 건축작품을 창조해 왔다. 그러므로 자신을 끝까지 연소시켜 무엇인가를 이 땅위에 남기려는 굳은 집념어린 인간힘을 쏟는자가 즉 건축가이다.

건축가의 모든 문제는 그 자신이 건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의 건축관은 작업의 방향과 공간에 대한 개성을 형성하는데 이는 외부의 요인과 자신속에 축적되어 있는 내적요인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건축작품은 모두들 개성과 경륜이 다름과 같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장소와 시간속에 각기다른 회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건축은 인간을 담는 그릇이나 그 그릇을 창조하는 건축가의 내외적인 차이에 의하여 엄청나게 달라진다.

건축가도 인간이기에 그 인간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건축가도 만 창조작업을 하는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중생토록 자화상을 그리고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자기를 제대로 그린다는 것도 쉬운일은 아니지만 남을 그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작업이기에 항시 자기가 누구며 무엇을 지나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근본요소가 된다.

여기에 인간을 어떻게 명확히 파악할 것이며 인간이 모인 사회의 속성이란 무엇인가의 뚜렷한 자기자신의 해석이 가장 중요해 진다.

그러기에 건축가의 역사관이며 세계관이며 인생관이 크게 문제시된다.

건축의 기능과 아름다움은 모두 생활이라는 모태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좋은 건축을 위하여는 이 생활의 인간속성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지나치리만큼 예민한 감정과 더불어 이제까지 축적되어진 기술과 전통을 파악한 뚜렷한 지성이 필요하다. 이는 건축가의 필수적인 자질인 동시에 한시도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커다란 목표이다. 건축은 보다나은 공간을 갖고싶다는 인간의 의지에 의해 계속 변하여 왔다.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공법과 자재 공간파악의 개념도 발전하였고 시대에 따라 꾸밈없이 형태도 달라져 왔다. 어제까지의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이 우리들의 건축언어이어서 이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오늘에 살리느냐가 또한 건축가가 자신의 건축언어를 창조하는 근간이 된다. 그러므로 건축가에게 실재없이 오늘의 문제와 어제까지의 전통이 지닌 근본조건에 새로운 조명이 비치는 작업이 그의 꾸준한 연륜과 더불어 보다 성숙한 작업에의 도움을 준다.

건축가는 이처럼 어제도 내일도 아닌 자신이 딛고있는 오늘밖에는 그럴 수가 없다. 그 시대와 자신을 가장 잔치하고 적나라하게 지어낸 것만이 그 감동을 흐르는 시간과 관계없이 이어준다.

이런 까닭에 건축은 운명적이다.

지구상의 특정한 지점에 오늘 어떠한 요구에 의하여 한 점을 찍는다. 그 한점의 해석은 여러개일 수는 없다. 가장 나은 하나의 해석에 도달하기 위하여 건축가는 자신이 갖고있는 모든 조형언어를 구사하게 된다. 자신의 언어란 자신이 알고 있고 자신이 느끼고 있는 지식도 체험도 감정도 이에 속한다. 풍부한 자기언어를 구사하기 위하여서 진지하게 정진하는 것과 또한 자신이 쌓아올린 지혜가 필요하다. 갑작스런 발상이 아닌 꿈틀되어진 결실이어야 한다. 이 연륜에 맺인 결실만이 대중을 이끄는 설득을 가능하게 한다.

대중을 설득하여 이끌어나가는 것은 문화의 역사다.

사회에 이끌려가는 것은 이미 건축가가 아니다.

설득이란 진지하고 자기자신에 충실할 때만 가능하다.

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비존」이, 정확히 내려진 현실 파악이 동시에 필요하기에 건축가란 항시 「선」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자기에게 충실해야 한다.

건축물은 완성되어지는 순간부터 작가를 떠나버린다. 자신이 남긴 결과가 작가의 것만이 아닌 사회속으로 환원되어 진다. 그후 건축가에게는 책임과 비판이 남는다. 이 사회와 끊을 수 없는 연관때문에 건축가는 대중앞에 벗고서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건축을 지어 사회에 바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사회를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는 연관을 지닌다.

이끌어 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오리지널 할때만이 가능하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에 보다 나은 질서를 심을 수 있는 강한 책임감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건축가들은 뚜렷이 시대를 이끌어 왔고 또한 그러한 이들의 작품만이 시간의 흐름속에 확실한 모습을 남겨 인간에게 끊임없는 감동을 던져줌으로 하여 삶에의 보다 나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 왔다.

건축가 자신이 그러한 진지하고 근원적인 노력을 포기할때 설득이 아닌 현혹과 눈가림밖에 할 수 없으며 이는 자신의 타락을 뜻할뿐만이 아니라 건축가의 직능에까지 큰 해독을 끼치며 후세에까지 조롱거리가 되어 그의 작업은 머지않아 깨끗이 지워지게 마련이다.

사회를 위하여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각자 뚜렷한 개성을 지닌 그 분야의 뛰어난 작가들이 보다 나은 공간창조를 위해 충실하게 작업하는 것이다.

많은 뛰어난 건축가들은 작가의 「아프리에」에서 자신이 선택한 제자들과 함께 건축창조에 몰두하였다. 이 「아프리에」식의 작업방법은 각자 개성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크게 공헌했으며 보다 나은 공간구성이란 대 명제에 크게 공헌하였다.

오늘에 있어서도 세계를 주도하는 건축가들이 그의 「아프리에」에서 가장 개성있고 충실한 작품들을 만들어 인간에게 뜨거운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

건축창조의 이상은 「아프리에」에서 알뜰하고 시대를 밀어갈 수 있는 감동적인 작품을 만들어 두손모아 사회에 바치는 작업이다.

그러나 전후 거대한 프로젝트의 출현에 따라 대형 설계 사무소들이 수준작들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술재로 정보의 대형화로 인하여 대량의 인원과 재원을 동원하여 큰 프로젝트를 신속히 또한 무난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굳이 말할 까닭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사무소도 소수의 우수한 디자이너 없이는 수준작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이는 자명한이치로서 건축창작 활동이 단지 「엔지니어링」만일 수는 없기 까닭이다.

「용」은 「미」를 결합때 비로서 사회에 공헌하게 됨은 철칙이다.

그러기에 대형 건축사무소에 있어서도 유능한 건축가와 의 협동이 절실히 요청되어 오리지널하고 작가체질에 철저한 「아프리에」와의 공동설계가 여러나라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바람직한 경향이라 아니 할 수 없다.

건축이란 어디까지나 그 자체에 많은 표정과 이야기들이 이어져나와야 하는 까닭이며 이는 유능한 건축가만이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엄청나게 비문화적인 환경을 무비판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자책을 금할 수가 없다. 밀고간 것이 아니라 밀려간 것에 지나지 않으니 말이다.

무표정한 콘크리트담속에 억지로 갇혀 사는 착한 인간들이 너무나도 처절하지 않은가.

숨막히는 현실이 너무나도 건축가 부재를 여실히 부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첫째 건축가 자신의 책임이다.

어떠한 그럴싸한 변명도 역사앞에는 있을 수도 통할 수도 없고 남겨진 현상만이 냉철한 역사적 비판앞에 놓이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건축가의 창조작업이란 엄청난 정진과 꾸준한 전진이 요청된다.

건축이란 어디까지나 그 자체에 많은 표정과 이야기들이 이어져 사회에게 보다 밝고 값진 환경을 조성해야하므로 이는 오리지널하고 진지한 창조적인 작업을 건축가에게 강경히 요청한다.

그러므로 건축가에게는 자신이 축적한 온갖 지성과 감성을 태워 새롭고 값진 환경구みに 전력해야 하기에 자신의 끊임없는 인격의 향상이란 대명제앞에 직면하게 되고 냉철한 역사앞에 숙연히 머리숙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사회와 문화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건축가의 어깨에 걸린다.

사회와 역사와의 연관은 오로지 건축가만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 이는 곧 행정과 직결된다.

어느나라에서나 건축행정은 보다 나은 건축을 지을 수 여건을 형성해 주고 불량건축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통하여 사회질서를 지켜주고 있다. 좋은 건축은 행정의 참다운 뒷받침위에 이루어질 수 있다.

건축은 그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행위여야 한다. 어느나라에서나 그 나라의 문화를 내세울 때 자기그 시대의 대표적인 건축물을 꼽는다. 그러므로 좋은 건축은 그행정의 얼굴인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환경에 직결되는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하여는 앞을 뚜렷이 내다본 「비존」에 의하여 법이 개정되고 이 법이란 어디까지나 보다 좋은 건축창조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이란 쉽게 정할 수도 수시로 바꿀 수도 없는 성질을 띠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 모순을 내포하고 집행에 있어 여러 좋지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럽다.

예를 들자면 건축창작의 올바른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할 교수의 창작활동을 교육공무원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실은 건축「디자인」을 가르칠 교수의 존재 가치마저 부인하는 결과를 낳고 자질향상의 길마저 막고 있어 축적되어야 하는 실제의 경륜없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창작의 감동과 실제의 건축언어를 전달할 수 있겠는가.

기술사 시험을 위한 예비학교 구실밖에 못하는 현대학제도는 건축교육면에서 시급히 수정되어야 한다.

더우가 이들 무경험한 교수들이 담당하는 미관심의 원회의 발상은 건축의 질의 향상과는 동떨어진 결과를 낳고 있어 자칫하면 이는 건축문화 내지는 환경조성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의 시정을 위하여 외국과 같은 수준의 건축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적이 뛰어난 건축가들에게 학원을 되 돌려 주고 학도들에게 깊은 감동위에 개성을 살릴 수 있는 작업을 보다 구체적인 「비존」을 심어 내일의 밝은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지도적인 건축가의 양성이 바람직하며 자동적으로 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건축창조의 길을 터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건축사법의 집행에 있어서도 보다 바람직한 것은 「라이센스」란 일정한 능력에 도달하면 쉽게 얻어질 수 있어야 하고 다음의 작업은 건축가 자신의 책임에 맡겨야 한다.

「라이센스」가 있건 없건 「클라이언트」는 능력있는 건축가를 찾는게 현실이다. 이는 건축사의 자질향상이 더욱 중요하지, 수의 다과와는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건축사 시험」도 상식에 속하는 범위내에서 쉽게 치러져야 하고 사회에 있어서는 선의의 자유경쟁에 맡겨져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다.

건축창작활동하는 장소의 제한도 건축가 자신이 편하고 분에 맞는 곳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주택내지는 아파트에서 창작하는 예는 동서를 막론하고 허다하다.

「르·꼴부제」는 교회의 복도를 막아 「아프리에」로 쓰고 현세기에 길이 남을 주옥같은 작품들을 수없이 남겼으며 「알빌·알토」도 헬싱키교외의 자기집의 「아프리에」에서 복구의 거장으로서 전세계의 건축계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 「에로·사리넨」도 셉트루이스교외의 농장주택에 백여 명의 유능한 재자들을 이끌고 뛰어난 작품들을 만들었으며, 「호랑크·로이드·라이트」도 타릭어센의 주티에서 전세계에 군림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작품들을 수없이 남긴 것은 누구나 잘 아는 사실들이다.

건축창작활동이 「아프리에」에서 이루어짐이 가장 이상적이므로 건축창작의 길이 문제가 되어야지 행위하는 곳

의 제한이란 침묵으로서의 건축가에게는 오로지 해로울 따름이다. 건축이란 부단의 사색에서 이루어져야 함으로 조용하고 채워어린 공간이 바람직하다.

인간생활과 관계되는 만큼 건축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도시계획도 환경을 연구하는 사람도 집을 설계하는 사람도 모두 건축의 울타리안에 있다. 사람의 복지를 위한 일인만큼 건축가 자신의 자질이 국민 주거의 수준을 결정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는 이런 건축가들의 전문성과 지성을 정당히 인정하여 수고 행정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어 간다면 국민의 주거환경도 월등히 향상될 것이다.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도 창작작업에 머뭇거리고 있는 후진들도 이런 전문의식이 확립될 때는 보다 자신있게 이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건 사회에 지침을 만들 때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가령 건축사 수를제한 하고 작업실을 오피스거리로 옮기고 몇 명의 건축사를 한곳에 옮겨놓는 것이 보다나은 공간을 창조해야 하는 건축원태의 목적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개성이 다른 사람끼리 타인의 작품에 관여하기란 여간 힘드는 일이 아니다.

안전과 건실한 건축자체를 위해서 또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제와 법규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창작의지를 꺾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보안하고 보호하는 여건이 필요하다.

건축가 스스로가 먼 안목을 갖고 자신을 정진해 가야 하듯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도시계획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해가는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모든 일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고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어떠한 계획이든 초기단계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전문가의 연구를 참고로 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충분한 고려로 먼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비존」이 세워질 때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 원칙과 일관성이 없을 때는 오늘 잘한것 같은 일이 얼마못가 시행착오로 변해버린다.

특히 도시계획이나 건축부문의 오판은 커다란 재정적 손실을 동반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거생활에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불편을 겪게되어 사회불안의 암으로 등장한다. 환경과 도시계획 그리고 건축은 모두 인간생활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을 일원화하여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적어도 건축부 내지는 환경청의 설치가 시급해진다.

이곳에서는 한국인에 알맞는 주거론도 확립되어야 하고 우리 실정에 적절한 도시계획도 수립하여야 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꾸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집을 지어가는

실로 철학에 맞는 원칙확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축가들의 높은 창의력을 강력히 뒤밀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건축가는 사회를 밀고 나가는 「비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비존」을 잃은 사람을 건축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먼저 건축가들은 자신의 현실적인 동사에 미래지향적인 뚜렷한 「비존」을 쟁취하여야 하며 상호협력력을 위한 굳은 선의의 단결이 요청되며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정의의 파워가 요청된다.

이를 행정에서도 밀어 올려 후세에 자랑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감동적인 새로운 장이 하루속히 출범하여야 한다.

국민들은 한결같이 보다 나은 주거공간을 요망하고 있기에 건축가들에게 깊어진 짐은 너무나도 무겁고 앞날은 엄청나게 험준하다.

그러기에 건축가의 올바른 상을 스스로가 찾고 건축가와 사회인과 관과의 뜨겁고 진지한 협력태세가 오늘 절실히 요청된다. 내일이면 너무나도 늦어 한국 건축문화에 들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힐 것이다. 그러므로 더욱더 오늘이 중요하고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한 작업은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設計事務所運營上の 当面問題

金 枝 泰

우리나라의 建築文化的 翼을 담당하고 또한 自負하며 建築創作活動에 積極的으로 參與하고있는 建築家들이 그 業務에 負課된 使命感과 姿勢에서 얻는 結果에 對하여 虛와 實이 어떤것인가를 實感했을때 마치 明滅하는 燈과 같이 錯雜한 心情과 함께 現在에 어느位置에 와있는가를 捉작케 될 것이다. 理由는 무엇일까? 우리 建築家들의 自覺과 協同精神의 不足으로 自招한 것인가 아니면 現建築行政 및 政策의 制度上的 不備로 因하여 생긴 現象인가, 또는 一般大衆들의 建築創作에 關한 理解不足으로 活動舞臺를 잃고 있는 것인가, 左右間 우리 建築家들로서는 한번 쯤 생각해 봐야 할 處地에 있는 것이다. 보다 밝은 來日을 위하여 水準높은 創作活動과 社會에 奉仕할 수 있는 本然의 業務에 誠實하게 遂行할 수 있도록 組織體를 再整備하는 方便 들고있는 軌道의 修正이 不可避한 時點에 와있다고 본다. 現在 우리나라에 있어서 設計事務所의 規模의 大小를 莫論하고 이를 運營하고 있는 建築家(法的用語 해석으로 登錄開業한 建築家를 建築士로 稱함)에 있어 現在 當面하고 있는 諸般問題中에서 가장 切實하고도 早速한 解決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問題들로서 果然 어떤것들이 있는지 이를 露呈시켜 이에 對한 忌憚없는 意見交換과 對話를 通해서 問題解決의 지름길이 摸索되었으면 한다.

1. 設計事務所의 實態(概括的인 面에서)

組織體制側面에서 建築創作的인 部門과 建築技術的인 部門을 그 業務의 基本으로 하고 있는 建築設計業務가 우리나라에 定着한것은 歴史的으로 짧다고 보며 하나의 組織形態로서 社會的인 認知를 받게 된것은 아마도 1963年の 建築士法公布以後이며 當時의 建築家들에게 社會的으로 多少간에 待遇를 받을 수 있는 重要한 契期라 할 수 있고

그後 많은 試鍊을 겪어가면서 오늘과 같은 樣相의 組織體制로 成長變貌하였으나 社會發展度에 比하면 內容에서의 落後性은 免치못하고 있는 것이다. 現在의 設計事務所의 組織形態를 企業形式으로 区分하면 法人體制(株式會社)와 個人形態이며 이중 85%以上이 1人經營體制方式을 扞하고 있다. 從業員數도 資料에 依한바 設計事務所 全體數에 比하여 많은 것은 아니지만 20名 以上の 組織規模의 큰 事務所를 비롯하여 그中間規模로서 10~20名정도 小規模로서 5~7名 정도이고 이밖에 4人未滿의 事務所도 相當히 높은 比率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断面에서 一般企業과는 比較될 수 없지만 組織規模의 零細性을 脫皮하지 못한 實情이며 經營形態도 1人體制를 쉽게 탈바꿈할 수 없는 要因이 尙今도 潛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伝來의 徒業制度가 存続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다고 하겠다.

經濟的側面에서... 建築設計事務所의 特殊性은 市場이란 流通構造를 갖고있는 一般生産經營體制와 같은 計劃生産方式을 挾할 수 없는 即計劃受註活動이 어려운 體質的인 虛弱點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必要에 依하여 業務가 發生되므로 經營上의 収益性은 浮動的이고 實際로 樂觀도 悲觀도 아닌 狀態에 있으며 經營體制를 유지하기 위한 受註量確保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各種 手段方法이 動員되고 甚한 것은 一般大衆들의 印象 呼려놓는 熾烈한 競争뿐인가 더러는 建築界의 秩序를 흔들어놓는 事例가 非一非再하고 特히 最近과 같이 經濟的인 不況에서는 業務量減少로 經營面에 적지않이 壓迫을 加하고 있는 것이다. 問題는 受註의 起伏이 甚한 収益性을 設計事務所의 發展과 安定化를 遲延시키고 있으며 그간의 우리나라經濟發展의 伸張速度에 比하여 設計事務所의 發展速度는 너무도 微微하고 오히려 踏步狀態에 머무르고 있지않나 하는 憂慮조차 드는것이다. 물론 이 収益性의 不安定만으로 오는것이 아니지만 阻隘要因中的 하나로서 比重이 크고 이에 따른 改善策이 研究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建築造形文化的 社会的인 莫重한 責任을 지니고 現在 우리나라에서 建築設計事務所를 運營하고 있는 建築家(士)에 있어 共通關心事일뿐만 아니라 어떤 次善策이 마련되지 않을때 運營上 支障을 招來할지도 모를 當面問題에 對하여 大體로 두가지로 分離하겠다.

첫째는 建築에 關한 政策的인 次元에서다. 未解決의 問題들로서 報酬料率의 現實化, 所得標準의 引下, 合同事務所關係, 建築行政上의 審議制度의 改善, 建築抑制措置解除, 建築許可制度의 改善, 工事監理制度의 再檢討等이 있고, 둘째로는 建築家自身の 自律的인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할 問題들로서 事務所의 體質改善, 補助士確保 受註競争에 따른 濫行防止, 建築家の 品位保全등의 確立, 問題들이 있으며 이러한 諸問題中에서 重點的인 問題에 對하여 概論코져 한다.

● 報酬의 現實化

建築家は 그 業務에 따른 勞苦의 代價로서 委託者(建築主)로부터 「報酬」를 받는다.

이 報酬란 말을 달리 表現하면 設計費 또는 用役費라고도 한다. 어떤 名目이던간에 이 報酬는 事務所經營의 絶對的인 原動力인 同時에 收益금은 再言할 必要조차 없지만 問題는 現在 適用되고 있는 建設部認可의 報酬料率이 認可當時(1975年)의 社会條件과는 判異하게 變動된 오늘에 있어서 現實的으로 適合하도록 이에 手術이 加해져

야만 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持續的인 高度의 經濟的成長은 社会 各分野에 많은 發展을 가져왔다고 보지만 그 反面에 밀어닥친 物價의 暴騰과 引上된 人件費 및 税金의 波高는 事務所經營收支面의 均衡이 이루어지기 힘들 정도로 그 影響이 크게 미치고 있는 實情인데도 不拘하고 唯獨히 建築設計報酬料率만이 움직일 줄 모르는 木石처럼 變動이 없는것이다. 勞賃도 激動하는 社会潮流에 敏感하게 反映되고 있는 點으로 보더라도 現實에 適合한 報酬料率이 速히 策定되어야 하겠으며 한便 經營上 密接한 關係가 있는 稅制面의 狀況은 어떠한가? 現行施行되고 있는 建築實(士)와 課稅所得標準率(27%)은 他의 技術用役部門(18%)에 比하여 높게 策定되어 있는 것으로한다. 引下調整코져 大韓建築士協會에서는 每年度마다 稅務當局과 數次에 걸쳐 協議한바 있으나 어떠한 事情인지 아직도 그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바라건데 他部門과 같은 程度로 調整이 되어야 할것이며 現實的으로 設計事務所는 對内外로 어려운 形便에 놓여있는 것이다. 報酬料率은 現實을 外面한 低率이고 課稅所得標準率은 事務所實情을 外面한 高率이고 보면 結局은 設計事務所의 經營難을 招來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經營難은 結果的으로 事務所의 不實化를 가져온다는 것은 自明한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事務所의 本來業務에 正進하고 아울러 꾸준한 技術開發研究로 社会에 寄與度를 높일 수 있도록 問題에 따른 改善策이 특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補助士의 確保

士法改正前에는 設計事務所에 勤務하는 從業員(設計士, 製圖士)을 通稱 補助員이라 하고 근무에 필요한 어떠한 資格規定이 있었든것도 아니다. 그러나 1977年 士法改正으로 設計事務所에 組織構成要件에 補助士(設計士)를 두도록 規定하고「補助士는 設計事務所에 所屬하여 建築士業務를 補助하는者」라고 그 職能을 明示할뿐더러 이에 必要한 資格條件까지 規定해 놓았다. 이는 國家的인 次元에서 생각할때 專門職의 養成과 人力確保라는 問題解決의 一石二鳥의 方法도 될수있고 한便으로는 그들에게 國家社會에 對한 價值觀을 심어주고 補助士로서의 矜持와 自負心을 갖도록 할뿐더러 設計事務所의 勤続年限에 따라 建築人으로서의 大成의 길을 마련한 것으로서 晚之時嘆은 있지만 이는 建築政策的인 制度上 刮目할만한 進展이라 하겠다.

그러나, 法施行에 앞서 補助員의 實態를 좀더 把握하여 이에 따른 不足人員에 對한 對策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에 對한 準備가 되어있지 못한데서 問題를 惹起한 것이 最近에 改正된 士法에 依한 事務所登錄關係에서 補助士의 不足現象이 바로 이것을 證明하고 있는 것이라 본다. 이러한 人員不足現象의 要因을 파고들면 첫째는 轉職率이 甚한데 있는것이 設計事務所에 對한 該들自身の 將來性에 對한 一種의 不安感으로 轉職하고 둘째는

設計事務所의 補助員에 對한 待遇가 一般企業에 比하여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다 自己職業에 不滿스러워 離職하는 一般的인 動機라 생각되는 것이다. 周知하다시피 하나의 專門技術人을 養成輩出한다는 것은 一般製品生産하듯 多量으로 生産할 수 없는 特殊한 性格을 지니고 있다. 尼만큼 良質의 人材를 얻는다는 올바른 技術指導와 養成에 따른 訓練期間 및 精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設計事務所의 人力難은 當分間 持續될 수밖에 없다고 보면 事務所組織과 運營上에 支障을 招來할지도 모르므로 現在 처해있는 余件下에서 이에 對한 研究對策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본다. 그렇다고 無理한 스카웃 方法은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의 相互間의 維持를 위해서도 止揚되어야 한다.

● 合同事務所의 方向

士法改正으로 住宅과 一定規模以上の 建築物의 設計業務는 合同事務所만이 處理하도록 되어있다. 從前에 生覺치도 못했던 事態로서 이는 建築政策의 制度上으로 볼때 一大改革이라 할 수 있고 또한 重大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先進國에서도 이러한 制度的인 것이 있는지 들어본적은 없지만 左右間 設置에 따른 結果는 後日에 보기로 하고 먼저 合同事務所에 關한 事項이 法에 反映된 背景은 1976年 6月부터 施行된 住宅建築節次改善案(國務總理 指示 第 8號)에 따른 建築上連署(3人以上) 責任制實施가 그 바탕으로 보고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建築設計事務所體制面의 歷史적으로 한페이지를 이룩할 이 合同事務所에 對하여는 너무나도 安逸하게 내다보았는지 또는 充分한 研究檢討가 없어서 그런지 現實的인 狀況이 參酌이 잘 되지 않는체 法公布를 본 然後에야 이에 뒤따른 問題가 꼬리를 물고 胎頭된 實定으로 미루어 그 事態를 推定할 수 있는 것이다. 最近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合同事務所 하면 依例히 法律(弁護士), 稅務士, 可法書士의 獨点業이 되 있었으나 이제는 建築設計事務所도 그 範疇에 들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言語의 惝恍으로 이상히 여겼으나 現在는 別로 거슬리지 않는다. 그 分들의 業務內容은 個性的으로 強한 創作業務와 다르므로 體制面이나 또는 運營上의 큰 問題가 別로 없는것으로 본다. 이에 比하여 우리의 建築設計事務所는 單純業務와는 달리 複合的인 要素가 많은 即 創作과 技術을 土台로하고 各分野別로 專門技術人의 協同을 必要로 하는 業務인 同時에 個人的 創作精神이 強하게 作用하는 特殊性이 있어 事務所組織面이나 運營上에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時代的인 潮流에 따른 體質改善에 槓桿이 늦고 있는 理由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法에서 規定한 合同事務所의 真意를 內涵대로 整理한 다면 첫째로 漸次로 高度化되어가고 있는 社會的 構造와

步調를 같이하기위하여 大型化되고 있는 建築物 設計業務를 統合의 體係로 갖추고 水準높은 次元에서 處理하는 能力을 쌓도록 하는 한편, 둘째 從來方式에 依한 個人的 經營形態를 止揚하고 事務所運營의 合理化를 期할 수 있는 企業形態의 方向으로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設使 法의 真意가 이렇다고 보면 이를 育成하기 위한 方法으로서 政策的이고도 制度的인 面에서 配慮가 있어야 할 텐데 (例를 들자면 稅制上의 支援, 技術開發研究를 위한 支援과 이에 關聯된 海外研修等) 不幸히도 漏落되고 만 것이다. 모처럼 마련된 法上의 合同設計事務所를 外貌만 갖추고 內容이 없는 陳列藏의 마네킹과 같고 오히려 業務處理에 法的責任만 加重되지 않았나 하는 疑具心만 있는게 아니라 合同事務所가 아니면 創作의 自由活動에서 制限을 받게되는 個人的 單獨事務所는 어떻게 되는진지? 도시 方向設定이 잘못 된것은 아닐런지 쉽게 納得이 안되는 部分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初年生인 合同事務所問題는 아직도 늦지않았으니 建築行政主務當局과 建築家의 權益을 위해 있는 關係三團體에서 再三 研究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 工事監理의 定着

建築設計事務所의 業務種目中에 빼어놓을 수 없는것으로 工事監理業務이다. 法上定義는 「工事が 設計図書대로

實施되었는지 否의 確認과 設計圖書에 表示되지 아니한 事項에 대한 施工方法의 指導 및 大統領이 定하는 事項을 確認하는 行爲를 말한다」로 되어있다. 換言하면 建築家(士)는 設計뿐만이

家(士)는 設計뿐만아니라 建築物의 質의 向上에 努力하고 設計圖에 依拠한 施工이 徹底하게 이룩되었는지의 確認을 하며 違反이 되었을 경우는 즉시 工事施工者에게 注意를 喚起시켜도 注意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뜻을 建築主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工事監理者는 建築主側에서서 不實工事が 되지않도록 또 違反됨이 없도록 技術諮問과 協助를 아끼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監理業務의 運營의 妙를 살리지 못하면 도리어 工事監理者는 여러모로 延罰을 받게되어 있어 監理業務를 着手할 때 그 遂行方向을 三段階로 設定해 놓고 첫째 確認, 둘째 指導, 셋째는 違反預防順으로.....특히 이 業務의 重要한 點으로 미루어 徹底하고도 慎重하게 對처하지 않으면 設計事務所運營上에 予想밖의 많은 困辱을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法上 未備인지는 알수없으나 理解하기에 힘든 事項으로서 지적하자면 첫째 「確認」이라는 行爲인 것이다.

그 基準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이따금 當惑할때가 있다.

假令 鉄筋콘크리트工事に 關한 것을 確認하자면 그 自體의 構造的인 安全度에 限한것인지 아니면 그 工事に 따른 全部를 말하는 것인지 도시 確認部分에 對한 限界가

模稜한 것이다. 設令 全部를 包含한다면 問題는 달라진다. 왜! 確認하여야할 事項이 數없이 많기때문에 監理뿐만 아니라 檢収 및 檢査業務까지 勘當하여야할 形便이 되지 않을까한다. 둘째「施工方法」의 指導行爲도 解釈에 따라서는 工事監理者를 ครอบคลุม하는 要因이라 본다. 工事途中에 建築物의 어떤 問題가 發生되었을 경우 法的問題로 飛火된때 이를「施工方法의 指導」不良이고 그 歸責事由를 묻는다면 結果에 따른 解明이 通할 수 있을는지 憂慮되지 않을 수 없는것이다. 實際로 監理現場에서 施工上の 問題가 惹起되어 技術的-解決方案을 提示해 주어도 工事監理에 對한 認識不足탓인지 아니면 施工者의 利害關係에 얽힌 탓인지 그 呼応 및 反應度가 바람직 못할때 그 实效性에 對하여는 의심스럽게 생각되는 것이다. 委託받은 監理現場에서 法的인 違反事項이 없도록 事前에 予防하는 것이 工事監理者로서의 當然한 義務이고 한편 建築行政의 秩序를 維持시켜주는 役割을 다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는 相對方의 協助가 先行되지 않으면 空念仏이 되고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 것이다. 實際로 違反하는 경우를 보면 施工者側보다도 오히려 一部建築主側에게 그 原因이 있는 것으로 工事を 着手하면 狀況에 따라서는 當初의 建築許可事項을 合法的인 節次에 依하여 變更進行을 한다.

그러나 이런 節次로서 不可能한 때에는 目的達成을 위해 若干의 違反정도야 寬容받지 하며 서슴없이 進行하려고 할때 工事監理者는 死色이 되어서 說得과 理解를 求하면서 이를 予防하고 있는것이다. 勿論 違反事實이 發生하면 建築主가 누구이건 關係없이 關係當局에 即時 告發하면 工事監理者로서의 責任은 免責한것으로 볼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極端의 手段이고 建築主와 工事監理者間에는 平素의 交分 및 受託關係가 形成되어있고 앞으로 持續되어야할 彼此立場이고보니 그러한 식으로 簡單히 處理할 수 없는 問題가 여기에 있는것이다. 近間에도 違反된 建築行爲로 말미암아 當局으로부터 制裁를 當한 建築主도 있겠지만 大部分은 工事監理者인 設計事務所인 것이다. 當局의 立場에서 볼때 工事監理者의 故意든 過失이든 이를 默認하였기때문에 이루어진 結果이므로 마땅히 이에 對한 責任을 科야한다는데는 그 누구도 異議를 提起할 사람은 없겠지만 위에서 論한바와 같은 實情에서 계속 惡循環을 거듭하고 있는것은 참으로 設計事務所의 苦衷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이러한 一連의 狀況으로 미루어 設計事務所의 前途는 多事多難할 수 밖에 없는것이 아닌가 본다. 그렇다고 莫重한 法的責任을 科야할 工事監理業務의 報酬는 어떠한가?

非現實인 것이다. 現在에 適用되고 있는 報酬料率은 工事의 規模, 用途, 工期와 關係없을뿐더러 專門技術(電氣, 機械, 空調, 기타 등)을 必要로 하는 監理業務關係도 전혀 考慮되지 않은 것이므로 이런 事項들을 參酌하고 또한

實質적으로 業務遂行에 支障이 없는 現實的인 報酬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工事監理에 따른 責任限界와 그 範圍 및 技術的인 處理方法에 關한 法的인 業務規定이 制定되어야 하겠다.

● 法改正의 빈도

우리나라의 數많은 法中 建築에 關係되는 建築法이 있다. 現行의 建築法은 1962년에 制定公布를 본後 그間에 社會發展度에 따라 6次나 改正을 보았고 施行令은 8次나 改正을 하였다. 앞으로 얼마나 改正될는지 두고보아야 하겠지만 이를 遵守하고 建築行政秩序를 確立시켜야할 建築家(士)의 立場이고 보면 빈번한 法改正公布에 어리둥절할 地境이다. 또한 早晚間에 改正되지않고는 不합理由로서 法自体가 時代的으로 不適合하고 適用의 不合理性으로 問題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의 建築技術의 向上과 새로운 資材의 出現 및 資材開發등으로 建築分野에 많은 發展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法이란 그 社會余件에 따라 얼마든지 改正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그法的 改正作業過程에서 現實爲主인 近視眼的인 基準으로하는 것보다는 좀더 巨視的인 眼目에서 改編 및 整備되어 円滑하게 運營이 되어야 하겠다. 現行의 建築法 施行令以外에도 各地方自治團體에서 制定된 條例, 規則등이 있는데 上位法인 母法과 施行令보다 優位에 위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따금 問題가 있는것이다. 特히 地方條例와 같은 것은 適用上 特殊한 경우가 많고 解釈上의 差異도 問題를 야기시킬때에 적지않이 當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建築行政當局의 法運營의 未熟으로 建築許可節次에 따른 業務에 적지않이 支障을 가져다주고 이는 下位地方官署로 내려갈수록 處理能力의 水準差도 더욱 甚한것이다. 建築관계 行政官署의 担当者들이 法的 精神이나 概念 및 內容을 제대로 把握하지 않고서는 法運營의 妙를 살릴 수 없을뿐더러 建築行政確立도 達成못하게 되므로 이로 인한 被害는 누가 입어야 하는가는 明白하여지는 것이다.

● 建築審議의 是非

서울의 경우 美觀地區 條例(1974年)에 근거하여 設置된 審議機構가 그 機能을 發揮하기 始作한지 벌써 5年이 되었다. 審議制度의 年輪으로 보아 設置目的에 違背됨이 없이 合理的으로 迅速하게 處理되고 建築行政制度의 改善은 물론 그 成果가 나타나고 있는때도 不拘하고 論難의 對象이되어 또한 物議가 紛紛한 것은 어이한 까닭인가? 그制度가 不滿스러워서가 아니라 委員會의 審議方式에 問題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다. 建築審議委員會에 申請建物을 提出해 놓고 審議結果를 목마르게 기다리는 立場에서 심의 通過는 古稀하고 자주 返戻되면서 이에 따른 修正指摘事項內容이 首肯이 될수없는 점이 많다는 것이다. 勿論 審

議에서 規制를 받을만한 事項이 있기에 그러한 것이지 그렇지않고서야 正常的인 機能을 發揮해야할 委員會에 어떤 하자가 있다는 말이 된다. 假令 創作에 관한 일은 審議委員들의 趣味나 嗜好로 또는 權威를 위해서 審議過程에 多少라도 反映코져 하였다면 그 結果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러한 일이 추호도 있을 수 없다고 보면 委員會의 決定에 따를 수 밖에 없는것이다. 그러나 問題는 있는 것이다. 審議의 規準은 어디까지나 審議對象인 建築物이 都市計劃 및 建築에 關聯된 基本的인 事項을 規制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領域을 넘게되면 審議라기보다 오히려 設計를 委員들이 하고 있는셈이 된다. 이는 創作活動을 基本으로 하는 現業에 從事하는 建築家(士)들을 全적으로 不信任하는 印象을 줄뿐 아니라 建築創作界의 混亂과 不作用을 自招하는 行爲가 되지않을지 알고 싶은 것이다.

적어도 斯界의 專門知識과 豊富한 經驗을 쌓은 委員들만으로 構成된 委員會에서 實質적으로 都市 및 建築問題를 社會發展의인 次元에서 이를 處理하고 있다고 보면 그 審議面에서 좀더 効率的인 方式으로 時間과 精神的인 負擔을 줄여주고 物質面에서의 必要以上の 費用을 減少시켜 줄 수 있는 方法은 없는지... 審議의 対象物을 놓고 審議하는 委員이나 이를 作成 提出한 建築家(士) 사이에 갈등과 硬直된 何等の 理由가 없다고 보면 좀더 和氣에 찬 對話와 相互理解 또는 協助로서 雜音에 따른 不作用을 얼마든지 解消시킬 수 있다고 본다. 設使 相反된 彼此의 立場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建築에 關한 問題를 다루는 作業日標에서 明朗한 都市環境의 發展을 위해 共同으로 努力하고 있음은 分명한 事實이 아닌가 말이다.

● 맺는말

以上과 같은 建築設計事務所運營上의 当面問題中에서 重點이 될만한 問題들을 列擧하였으나 果然 이問題들이 現時點의 核心이 될만한 價值가 있는것인지의 眞否는 且置해 놓고 設計事務所를 運營하는 建築家(士)들에게는 肯定이 될만한 것들이라 보겠다.

우리나라의 設計事務所의 實態는 그斷面에서 엿볼수 있듯이 그規模나 經營面 또는 設計體制面에서나 先進國과는 對比될 수 없는 落後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實情임을 알 수 있고 다만 当面問題가 內包하고 있는 共通點은 建築政策上의 斐望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設計事務所樣相도 變遷하는 社會構造와 呼吸을 같이하기 위하여는 不得已하게 體質改善을 徐徐히 하지 않으면 陷될 地點에 와있는 것이라 하겠다. 從來方式에 依한 個人의 經營體制에서 보다, 有機的이고 能率的으로 組織화된 事務所經營體制의 方向으로 建築家(士)의 品位保全과 收益에 따른 發展을 阻害하는 惰性的인 過當競爭에서 오는 墮落行爲의 根絶, 創作活動과 技術開發研究을 위한 情報交換 및 海外研修와 良質의 技術人 養成 및 待遇改善등이 設計事務所를 現代化 시키는 길의 하나라 하겠다.

建築設計는 人間生活의 三要素인 衣, 食, 住의 하나와 關聯하고 또한 切박하게 必要로 하는 創作活動인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設計事務所는 維持 되어야 한다.

行政側面에서 期待되는 建築像

金 永 哲

建築은 藝術의 一分野로서 美術分野에 屬하는 것으로 分類하고 있다.

우리가 藝術이라 함은 한마디로 사람이 自己의 感情, 像想, 느낌을 作品을 통하여 表現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感情, 느낌은 사람마다 環境에 따라 다르며 藝術作品은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創造되는 것이므로 創作이라 한다.

이와같은 創作의 性格으로 보아 創作에 있어서 이어 從事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을 規制하거나 어떠한 基準을 設

定하는 등 行政的인 規制는 一般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事實上 現在 創作 活動에 對하여는 創作者的 權益에 保護하기 爲한 著作權法 以外에는 行政的인 面에서 特別한 規制를 加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建築에 對하여는 建築士法, 建築法等에서 創作者的 資格, 創作의 基準等 많은 規制를 加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다.

“왜 많은 創作 分野中 唯獨 建築에 對하여서만 이러한

行政的인 規制를 加하여야 하는 것인가”

이번 機會에 이에 對한 必要性 및 問題點을 分析함과 同時에 앞으로 이러한 制度를 어떻게 받아 들이고 發展시켜야 한 것인가에 對하여 思考 하고 建築物의 創作에 臨하여야 할 것인가에 對하여 思考하여 보고자 한다.

1. 建築의 特性

建築은 餘地 創作 分野와 比較하여 많은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餘地 創作에 比할수 없을 程度로 公共性, 複合性, 産業性을 갖고 있다는 것일 것이다.

即, 建築物은 固有한 創作의 概念으로서 文化的인 要素以外에 人間의 生活을 담는 容器로서, 또한 生活環境을 造成하는 重要한 要素中의 하나로서 이의 安全 与否는 國民의 生命과 財産의 安危와 關聯되며 이의 良否는 都市環境等의 良否와 直結되는 重要한 것이다.

또한 建築物의 建築에는 龐大한 國家資源이 投資(‘78境遇 2,611拾億으로서 總 投資額의 37%)될 뿐만 아니라 餘地의 關聯專門技術 分野와 調和가 되지 않으면 作品으로서 完成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作品의 製作 過程에서도 他 分野와 많은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다. 即, 作品은 大分部 補助者, 關聯技術者, 施工者 등 他人의 손에 依하여 具現되며 餘地, 創作 分野가 作品이 完成된 後 國民이 이를 評價하여 自由스럽게 選擇할 수 있는 反面 建築에 있어서는 大部分 建築主의 注文에 따라 이루어 지므로 國民의 作品에 對한 選擇權이 極히 制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建築 創作의 特性으로 建築에 對하여는 이에 從事할 수 있는 者의 資格의 規制와 더불어 많은 制度的, 行政的인 規制가 加하여 지고 있는 것이다.

2. 우리나라 建築의 問題點

앞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建築 創作은 아무리 強調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程度의 重要性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建築 創作은 現世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水準에 있어서 많은 問題點을 갖고 있다.

年間 10餘萬件(‘78의境遇 149,749件)씩 建築되어온 建築物中 자랑스럽게 作品으로서 내 놓을 수 있는 創作이 과연 몇 件에 達할 수 있을 것인지 疑心스럽다.

이러한 問題에 對하여 原因을 찾는 다는 것은 그 原因이 社會全般에 걸쳐 있으며 특히 이는 所得等 國民의 水準과 關聯된다는 점에서 同一한 條件 아래서 이에 對하여 論議하여 보아야 空論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經濟의 急速한 成長과 社會의 發達에 따라 建築需要가 激增하고 國民의 意識 構造가 變遷하고 있는 이 時점에서 다시 한번 思考하고 反省하여야 할

問題가 아닌가 생각한다.

建築創作에 있어서 問題는 이를 担当 하고자 하는 者를 養成하는 過程, 이를 担当하고 있는 者의 資質과 姿勢 및 이를 注文하는 國民의 意識 構造와 創作 活動을 뒷받침할 수 있는 制度等으로 区分될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의 建築에 關한 教育制度가 建築物의 創作 分野에 從事하기 爲하여 專門 教育을 받으려 하는 者에 對하여 創作에 關한 基本的인 知識을 어느 程度 注入시킬 수 있고 創作의 素質을 發掘하는데 寄與할 수 있었는가.

●둘째, 既成 建築人의 作品 行態, 社會的인 位置等이 建築家를 指向하는 젊은 世代에 對하여 羨望의 的이 될 수 있고 建築家가 되기 爲하여 精進할 수 있는 動機를 賦與하고 創作의 質을 向上하고 그들 地位를 向上하기 爲하여 어느 程度 努力하였는가.

●셋째, 國民의 建築家의 創作의 重要性을 어느 程度 認識하고 能力있고 誠實한 建築家를 選擇하려고 얼마나 努力하였는가.

●넷째, 能力 誠實한 建築家가 創作活動에만 專念할 수 있는 社會的 制度的 霧困氣가 造成 되어 있는가.

모든 점에서 우리가 어느 程度나마 肯定하기 힘든 問題이다.

이러한 問題에 對한 責任은 國民의 水準 制度的인 面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무엇보다 建築人 自身이 이에 對한 責任을 느껴야 할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利益을 爲하여 法으로 定하여진 報酬料率은 아랑곳없이 덩핑하는 예는 너무도 많이 볼 수 있다.

建築界에 들어와 創作 活動에 있어 基盤이 되어야 하는 保障된 報酬가 一部 建築人에 依하여 차단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報酬로는 良心에 忤러짐 없는 作品의 創作은 不可能할 것이다.

또한 거리에 보이는 無秩序하고 醜한 建物 이러한 것이 國民들의 建築 및 建築人에 對한 印象을 그르쳐 社會的으로 疏外되고 應分의 待遇를 받아야 하는 創作者도 待接을 못 받는 結果를 招來한다.

또한 建築 設計等에 關한 制度가 法制化된지 15년이 흐르는 동안 좋은 創作이 될 수 있는 條件의 造成을 爲한 制度的 發展에 對하여 建築人들이 어느 程度 體系있고 具體的으로 生覺하고 制度的 發展에 參與하였는가.

制度的 目的이나 앞으로의 方向에 對한 知識도 없이 近視眼的으로 私私로운 不便 때문에 傍觀者의 立場에서 批評을 하는 것은 制度的 發展은 커녕 混亂만 招來할 것이다.

建築制度는 좋은 作品의 創作으로 誘導하고 善良한 創作者를 保護하기 爲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者는 特別히 留意하여 業務를 하도록 業務上 不實이 있는 者에 對하여 制裁를 加하기 爲함임은 두말할 事도 없다 할 것이다. 目

建築界에 있어서 問題點은 모두 建築人의 共同 責任이 며 보다 좋은 創作의 霧田氣를 만들고 共同利益이 될 수 있는 方案에 對하여 體系있게 研究하여 政策이나 制度面 에서 反映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創作 活動에 못지 않게 重要한 일인 것 같다.

特別히 現 資格 制度의 施行이 日淺하며 制度 施行 以前 에 類似業務에 從事하던 者도 既得權의 保障이라는 觀點 과 建築行政에 必要한 人力을 確保하기 爲하여 大分部 資格을 賦與 함으로서 이들이 創作 分野에 從事하고 있는 것이 現實이라는 點을 勘案할 때 그 必要性은 더욱 切實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現行 制度

建築活動에 있어서 現行 建築士法에서 規定하고 있는 建築士 制度의 基幹이 되고 있는 制度 및 이의 趣旨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建築物의 設計는 一定 資格을 갖인 者만이 할 수 있도록 함.

建築創作이 餘他 創作 分野와 区分됨을 段的으로 나타내는 制度로서 國民의 生命과 財産의 安危, 都市環境의 良否와 關聯이 되는 創作에 對하여 一定 資格을 갖인 者만이 하도록 하고

2. 建築物의 設計 監理等의 業務는 原則的으로 登錄을 하여야만 行할 수 있도록 함.

이 制度는 建築士만이 建築創作에 對한 主人이 되도록 함과 同時에 不誠實하거나 業務上 過誤가 있는 境遇에는 大分部 直接 免許에 對한 制裁보다는 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爲하여 이러한 制度를 두고 있는 것으로 生覺할 수 있다.

3. 住宅과 一定 規模 以上의 建築物은 合同事務所로 登錄한 者만이 設計 또는 監理를 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制度는 우리나라의 特有的 制度로서 여러가지 目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同 制度는 우리나라의 與件 및 政策的인 要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그 目的이 創作과는 直接 關聯이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即, 政府의 對民 業務中 가장 重要한 業務中 하나인 建築許可業務는 政府의 至上 目標인 庶政刷新이라는 次元에서 可及的 國民의 許可權者와의 接觸을 排除하기 爲하여

特別히 그 數가 많은 住宅의 建築에 있어 現場 調査와 法에 適合한지 與否를 建築士의 責任下에 調査, 檢討하게 하기 爲한 것이다. 이러한 制度는 現許可機關의 公務員의 數, 職種, 水準等을 勘案할때 우리나라 現實에서는 不可避한 制度라 할 수 있을 것이다.

勿論 行政機關에서 할 일을 建築士에게 轉嫁한다는 異論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業務는 設計 또는 監理를 하는 建築士의 業務에 있어서 當然히 調査 檢討되는 事項을 單只 確認하는데 지나지 않으므로 責任있는 創作 活動을 하여온 建築士에게는 特別한 負擔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創作 活動에 對한 行政的인 干涉을 排除할 수 있다는 長點도 없지 않을 것이다.

●둘째, 앞에서 도 記錄한 바와 같이 建築創作에도 建築物의 規模가 漸次 大形化 되고 科學技術의 發達로 크게 複雜化되어 思想을 作品에 옮기는 때는 많은 施設과 人力이 所要되며 一般的으로 業務受注量의 起伏이 많아 이러한 施設과 人力은 恒時 活用이 어려운 境遇가 많아 2人 以上의 建築士가 施設과 人力을 共同으로 活用토록 誘導할 수 있는 效果를 期待한 것으로 볼수 있다.

4. 앞으로 建築活動에 있어서의 期待

現在까지 建築創作은 建築家의 意思보다 建築을 利害하지 못하는 建築主의 意思에 크게 影響을 받는 境遇가 적지 않았다.

建築家は 建築主의 意思를 無視할 수는 없으나, 어디 까지나 自己의 主觀으로서 우리 現世를 反映하는 文化的 遺産을 創造한다는 矜持를 갖고 創作에 臨하여야 한다.

建築家は 그의 作品을 圖面에 옮기는 것으로 그의 創作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가 創作한 作品이 創作한 意圖대로 建築物로 具現시켜야 創作活動이 끝이 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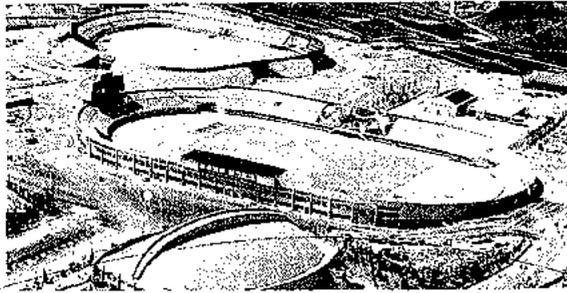
따라서 모든 建築物은 建築家가 主導가 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過程에서 妨害되는 要素가 있다면 이를 制度的인 面에서 補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建築物은 많은 技術分野와 複合的으로 이루어지는 創作活動이고 業務量의 起伏이 甚함을 勘案할 때 建築家は 可及的 施設의 公有토록 함으로서 經濟的인 負擔을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 몇가지 現況 問題點과 앞으로의 方向에 對하여 生覺하여 보았으나 建築에 對한 制度나 創作의 水準이 아직도 初期的인 狀態에 不過함으로 이에 對하여 모든 建築人의 關心깊고 꾸준한 研究와 改善이 있어야 할 것이다. □

會員作品

청주종합경기장
화신건축
貝允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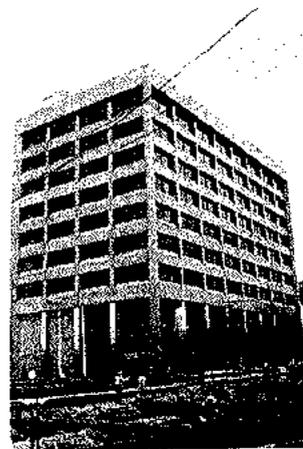
광운공과대학 학생회관
신양건축
李春相

P씨댁
조구현건축
曹龜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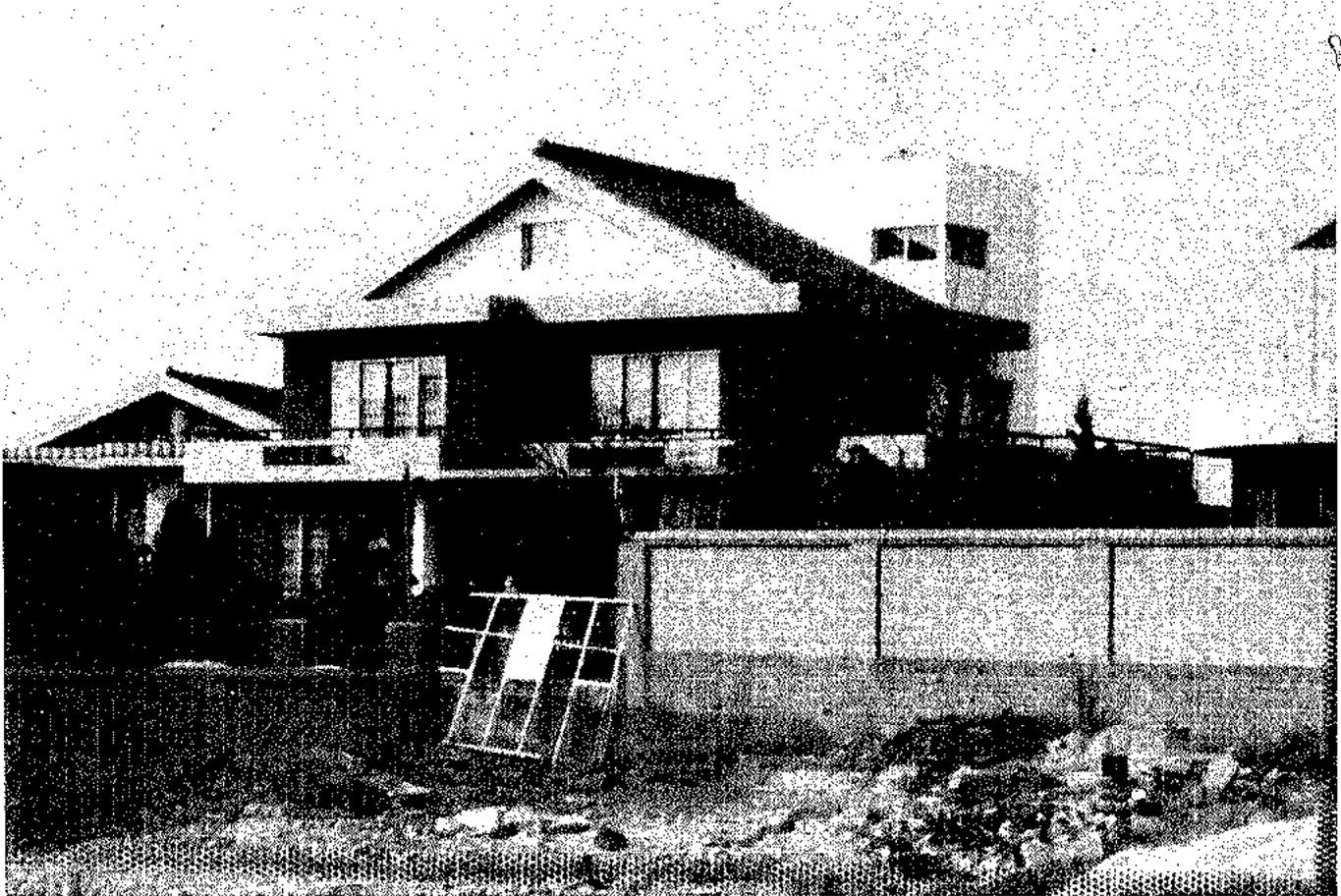
학동J씨댁 J
동양기술개발공사(주)
康平參

작업실이 딸린 주택
安日成



광주은행 본점 신축사옥
금성건축
韓鍾彦

학동J씨 주택



전 경



설 계 : 계획 康 晋 参
설계 고근식, 이봉동

건물위치 : 강남구 학동

건축면적 : 지하층 : 58.825m²

1 층 : 127.14m²

2 층 : 90.02m²

옥 탕 : 12.92m²

구 조 : 조적조, CON, C스라브 붉은 기와집

설계개요 :

1. 본 대지 주변의 현황은 북측에 8m도로에 접하였고 동, 서측의 타인 건물이 시야를 가리고 남측 지형은 본 대지의 고저차가 타인 대지 1m낮아 전망이 터져 있어 본건물의 행작은 남향으로 결정하였다.

2. 대지에 접한 북측도로를 활용하여 현관위치를 동북측으로 하고 각 실의 동선은 1층 마루방을 중심으로 각 실의 동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지도록하였다.

마루방에서 내실에 들어서면 내실 전용인 갱이실, 탈의실 욕실의 동선이 제 나뉘대로 연결되었고 마루방에서 식당에 들어서면 주방 주변에 갱이실, 가정부방, 주방용 창고이자 작업장이 있고 주방의 필수적인 강독대는 서북측에 배치하였다.

3. 2층의 주동선인 내부 층단을 통하여 2층, 층단실 마루에서 서재 겸 응접실, 침실과 불탱크실까지 자유로운 동선 연결을 구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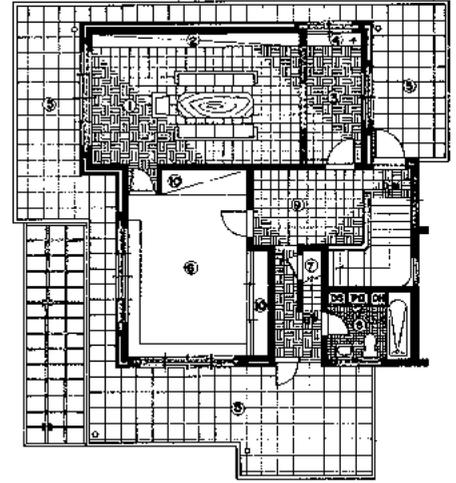
외장은 붉은 벽돌 공간 쌓기에 방한 방은은 외부벽 공간에 50mm스치로폴로 차단하여 상하층 각 실의 차분한 온도의 유지를 시도한 것이다.

외부 벽체의 구성은 북측 도로벽은 붉은 벽돌벽 바탕에 큰중선 타워, 횡선은 흰색에 에폭시 스프레이로 형성하였고 남측과 동측은 중선 기둥에 아취형으로 흰색에 에폭시 스프레이로 차분한 주거 생활을 감싸주고 있다.

4. 지하실은 매지의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도로에서 직접 건물내로 진입하기로 하였으며 차고에 운전기사 방을 두고 이에 수반한 취사장, 학장실의 동선이 연결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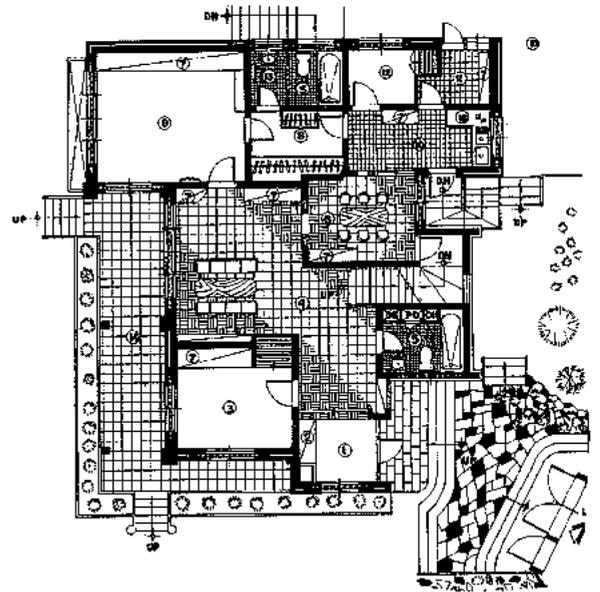
차고를 중심으로 1층 주방과 식당용 계단이 있고 세탁장, 보일러실, 창고, 서고의 효과적인 동선이 연결되도록 구상하여 배치하였다.

1. 서재
2. 서장
3. 전실
4. 싱크대
5. 베란다
6. 주인방
7. 창고
8. 학장실
9. 층단홀
10.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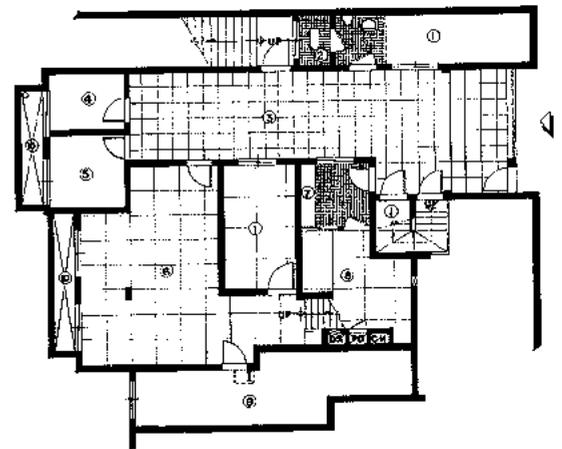
2층평면도

1. 현관
2. 실장
3. 아동실
4. 거실
5. 화장실
6. 식당
7. 장
8. 쉐의실
9. 내실
10. 취사장
11. 창고
12. 가정부실
13. 세면장
탈의실
14. 테라스
15. 장독대
16. 싱크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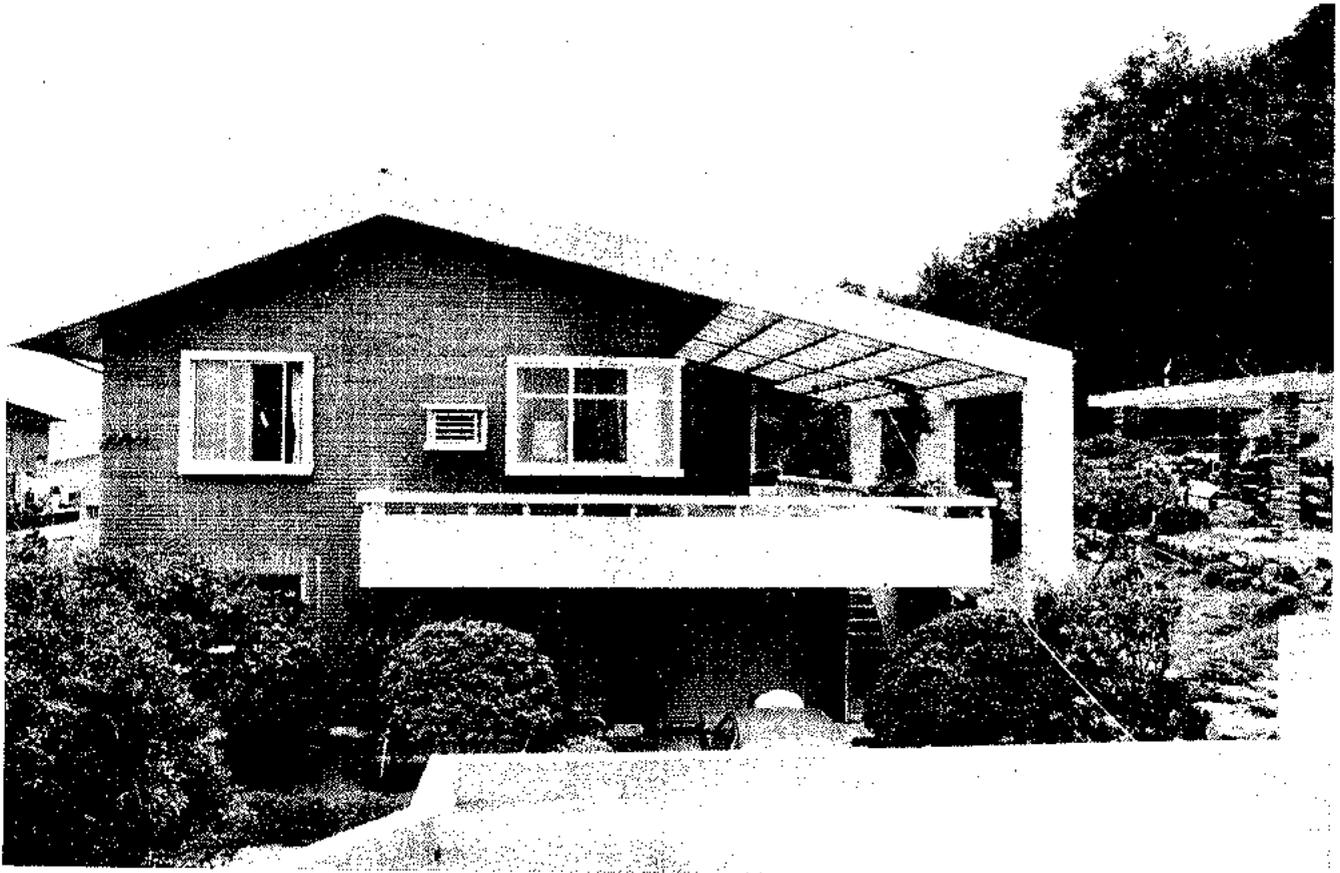
1층평면도

1. 창고
2. 학장실
3. 차고
4. 운전사 방
5. 취사장
6. 서고
7. 세탁실
8. 보일러실
9. 트랜치실
10. 드라이
에리어



지층평면도





작업실이 딸린 주택

전 경

설계개요

명장공원을 앞으로 하여 무한한 숲속의 정취를 거실 내부까지 끌어들이고 이층베란다와 옥외파고라의 옥내생활을 숲속의 계절변화로 자연스런 병면적연결은 쾌채된 옥내생활을 숲속의 계절변화로 자연을 숨쉬게 하였다.

건축가로서 특이한 작업이 가정생활과 연관지어 자칫 작업인의 베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일층에 작업실을 구상해 보았다.



설 계 : 안 일 성 (동래건축설계공사)

건물위치 : 부산시 동래구

대지면적 : 820m²

1층 : 181m²

2층 : 131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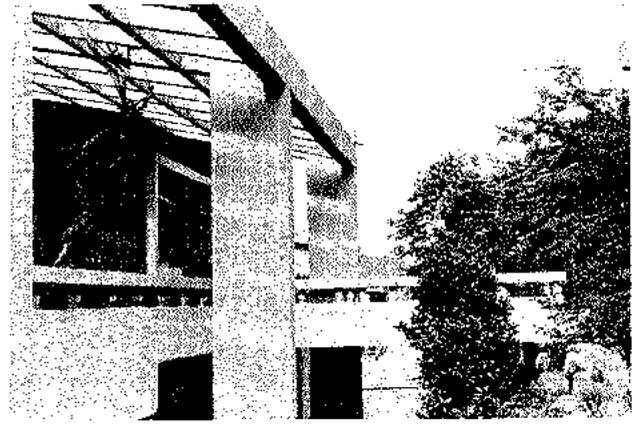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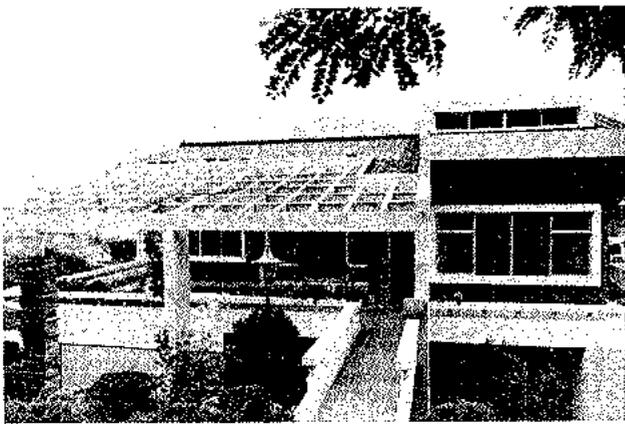
다락방 : 28m²

차 고 : 4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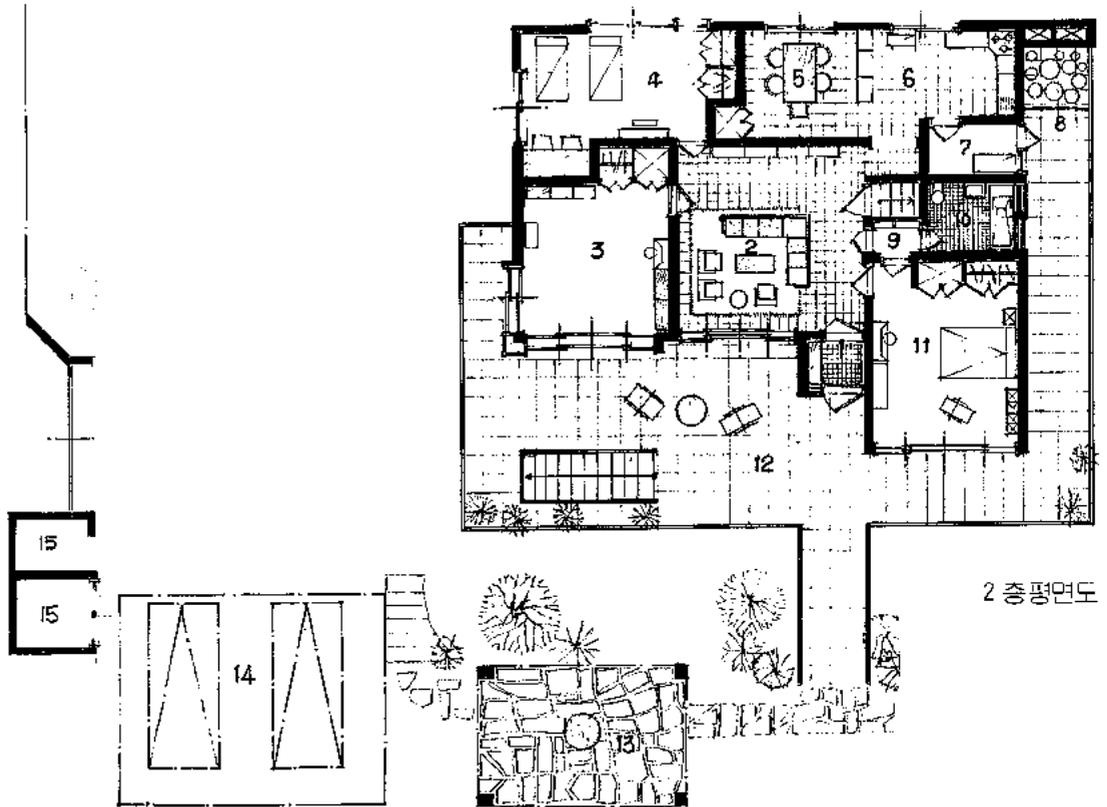
구 조 : 1층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2층 : 조적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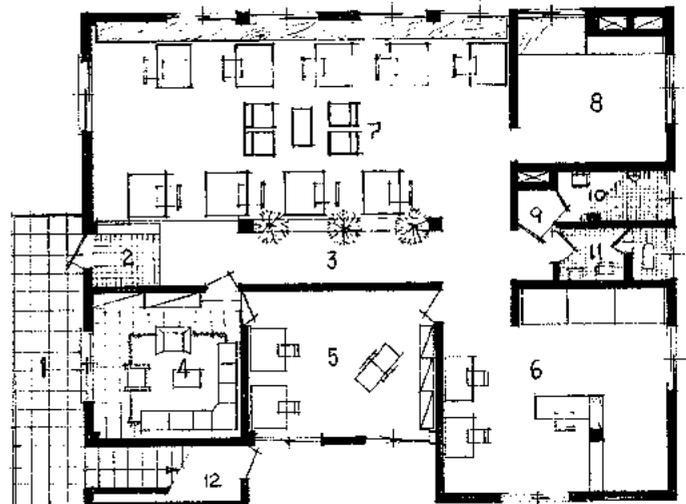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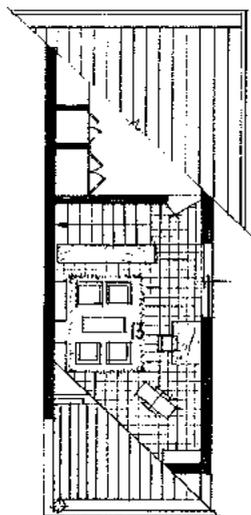
준공일자 : 1979. 3.



- ① 현관
- ② 사진
- ③ 배실
- ④ 공부방
- ⑤ 식당
- ⑥ 부엌
- ⑦ 세탁실
- ⑧ 장독대
- ⑨ 탈의실
- ⑩ 욕실
- ⑪ 주인실
- ⑫ 베란다
- ⑬ 파고다
- ⑭ 차고
- ⑮ 창고



- ① 테라스
- ② 현관
- ③ 복도
- ④ 응접실
- ⑤ 계획실
- ⑥ 자료실
- ⑦ 제도실
- ⑧ 청사진실
- ⑨ 탈의실
- ⑩ 샤워실
- ⑪ 화장실
- ⑫ 창고
- ⑬ 시재



P씨주택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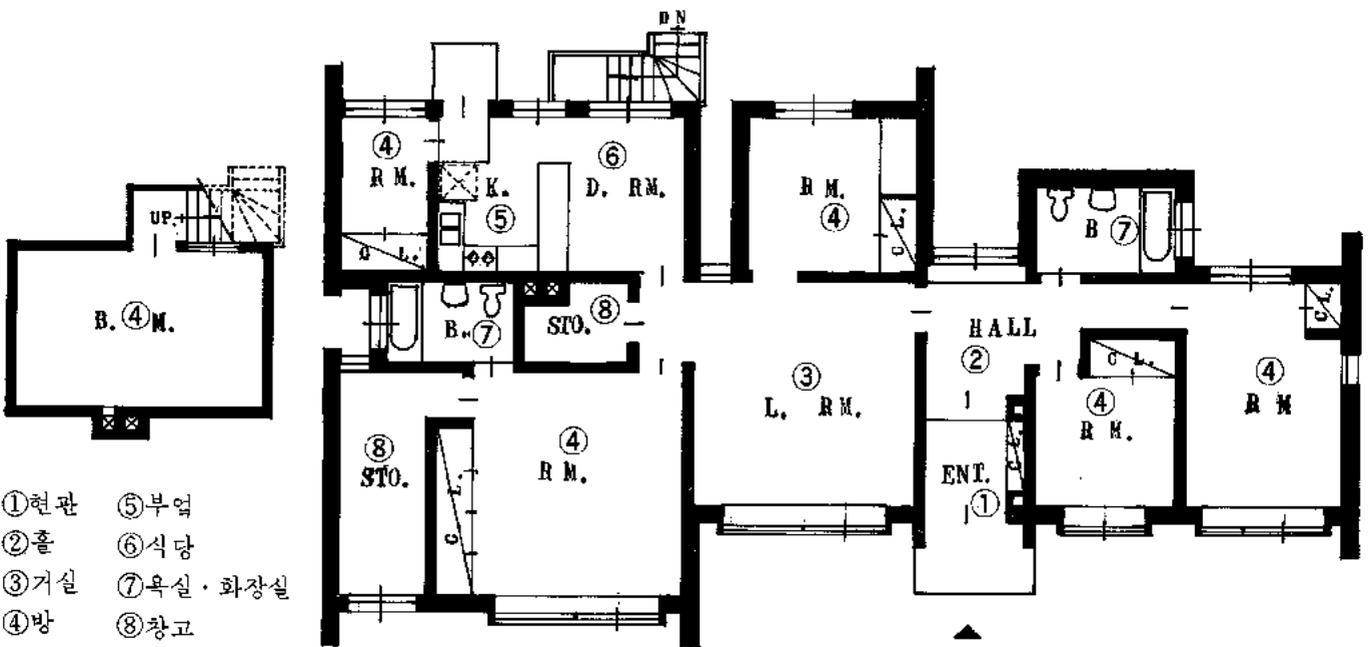
설 계 : 曹 龜 憲 조구헌 건축 설계사무소
 위 치 : 청주시 서문동
 구 조 : 전돌造, 스투브지붕 위에 개와.
 垈地面積 : 760m²
 建物面積 : 地下層 - 21m²
 一層 - 204m²
 計 - 225m²

실계 개요

충분한 넓이의 垈地와 設計에 充實을 기하여주는 건축주를 만나 오래간만에 차분히 설계할수 있었던 特記할만한 好條件의 設計였다고 회고되는 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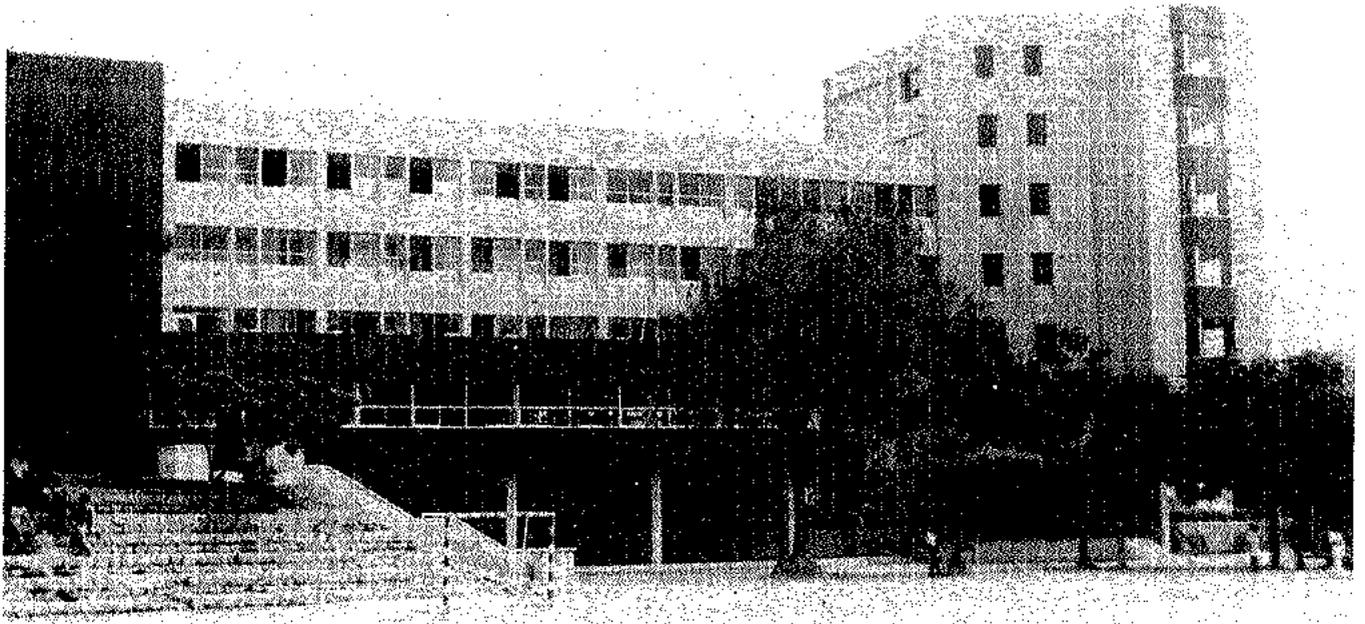
單層집에서 자칫 범하기 쉬운 과도한 共有面積을 줄이기에 고심 하였다. 玄関을 中央에 두고 西側에는 안방과 거실 및 서비스空間을, 東側에는 아동실을 1字로 배열하여

各室의 獨立性和 함께 채광, 통풍이 自然的으로 해결되도록 하였으며 北側에는 火미진 3個의 竈목을 두어 그늘에서 냉각된 空氣를 室內로 유도하여 自然냉방의 효과를 기대하였다. 外部는 黑, 白, 赤, 의 3색을 有效적절히 配分함과 아울러 3色의 区分을 分明히하여 불분명한 主위환경에 조화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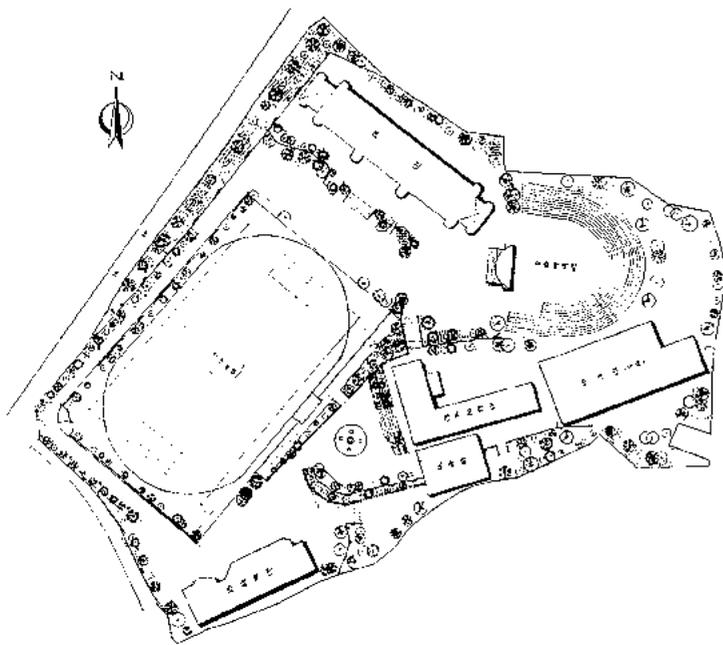
1층평면도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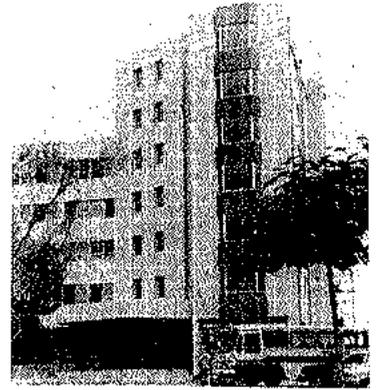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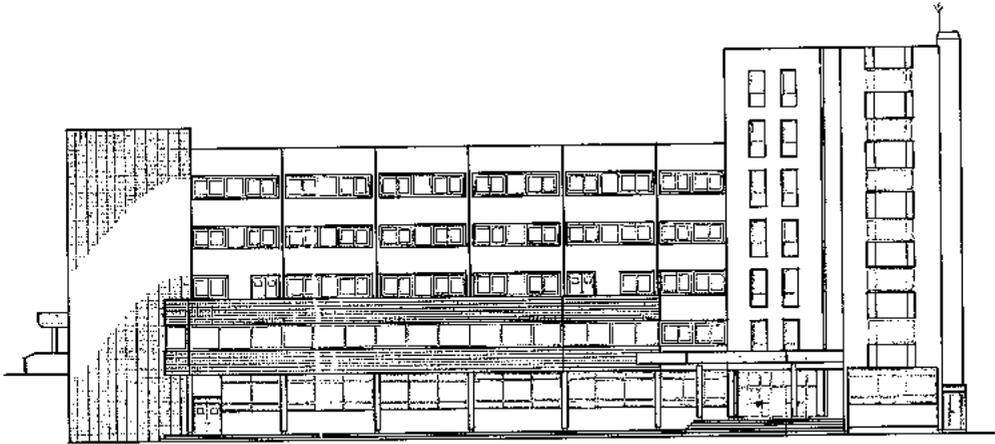
광운공과대학 학생회관

전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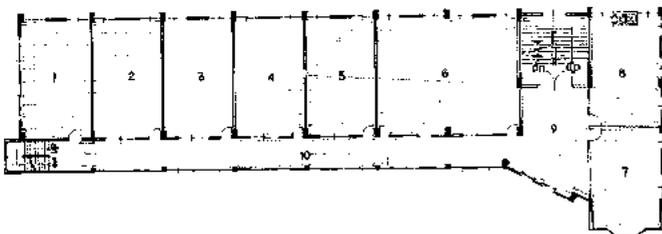
설 계 : 李 春 栴 (신양건축)
 소재지 : 도봉구 월계동 광운공대 구내
 규 모 : 건축면적 720.60㎡
 연면적 4694.30㎡
 층 수 : 지하 1층
 지상 7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장재료 외장타일부치기 및 재
 본 타일 뿜기
 내장재료 무늬코팅 및 수성페인트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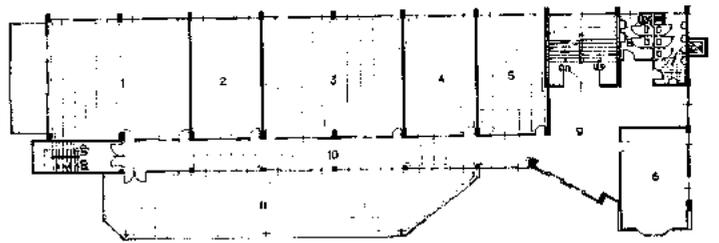
4 층

- ①~⑦ 학도호구난실, 씨클실 ⑧ 신문편집실
⑨⑩ 홀, 복도



3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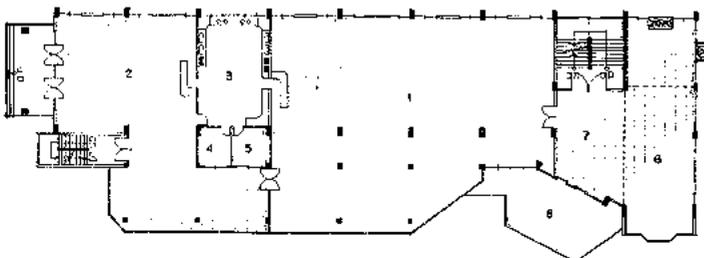
- ①~⑤ 휴제실, 오락실, 음악감상실
⑦⑧ 화장실 ⑨⑩ 홀, 복도 ⑪ 베란다



3 층평면도

2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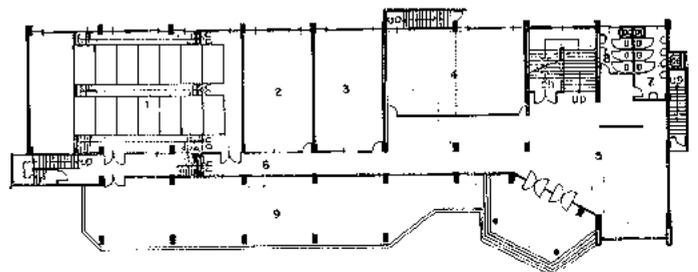
- ①② 식당 ③④⑤ 수방 및 부속실
⑥ 매점 ⑦ 홀



2 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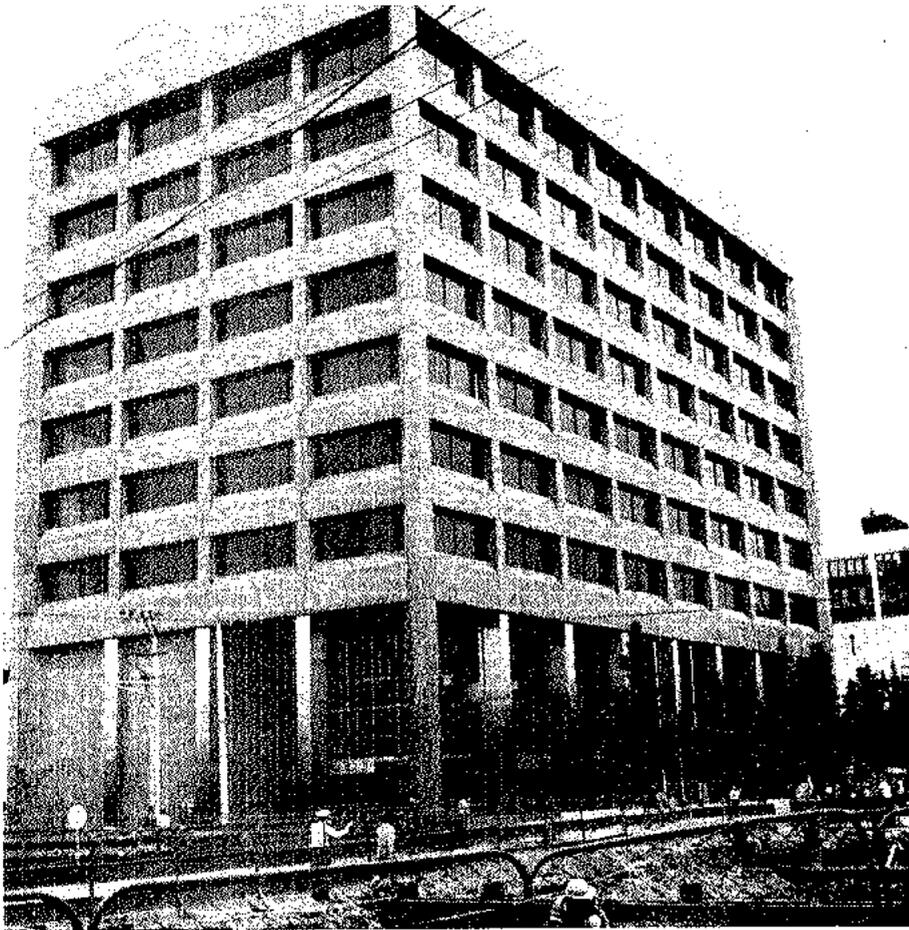
1 층

- ① 계단강의실 ②③④ 행정관리실
⑤ 홀 ⑥ 복도 ⑦⑧ 화장실



1 층평면도

會員作圖



광주은행 본점 신축사옥

전 경

설계개요

평균치적인 보편성을 다분히 갖고 있는 office에 은행본점의 성격을 부여 한다는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본 project의 난제가 있었다면 그러한 상징성을 어떻게 부각시키느냐에 있었다. 원활한 기능성은 좋으나 최소한의 은행본점으로서의 image 부각과 중후한 무게감, 신뢰감, 친밀감을 느끼게해야겠다는 점이 재도계획, 외장계획의 연계를 찾게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시원한 해결을 못보는 아쉬운 점이 있다. 환갈색계열의 큼적큼직한 unit의 타일면과 color glass 유리와의 대비는 상기의 의도보다도 만족시켜주리라 생각되며 결국 보다 중요한 사항은 회사도를 hardware적인 면보다 software적인 면에 더 비중을 주어 지리의 표정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한 의도가 되었다.



설 계 : 韓 鍾 (금성건축연구소)

건축상담 : 윤 구 행, 윤구행, 최여경

설비담당 : 성아기술사

전기담당 : 한일전기설비연구소

대지면적 : 2,227m²

건축면적 : 1,236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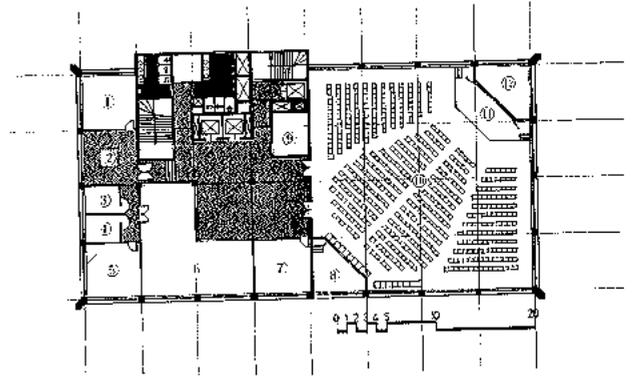
연 면 적 : 12,338m²

기준층면적 : 1,06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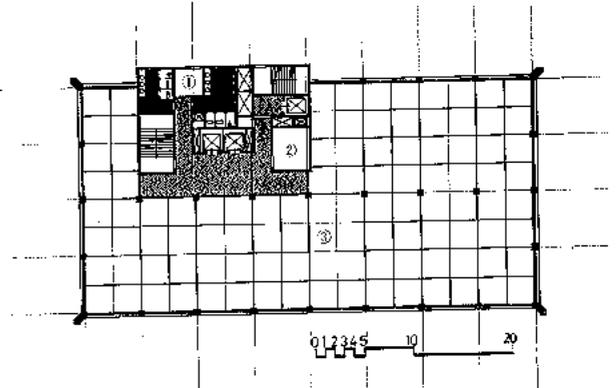
규 모 : 지하2층 지상9층 옥탑2층

구 조 : R. C 造

- ① KEY PUNCH
- ② 휴게실
- ③ 보관소
- ④ FILE 보관소
- ⑤ PROGRAMER
- ⑥ EDPS실
- ⑦ V.I.P실
- ⑧ 영사실
- ⑨ AHUU. 실
- ⑩ 강당
- ⑪ 무대
- ⑫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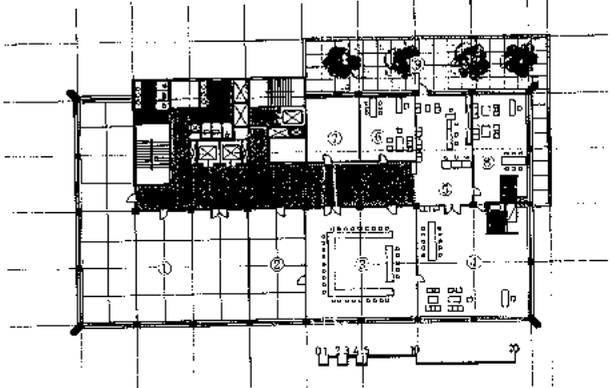


9층 평면도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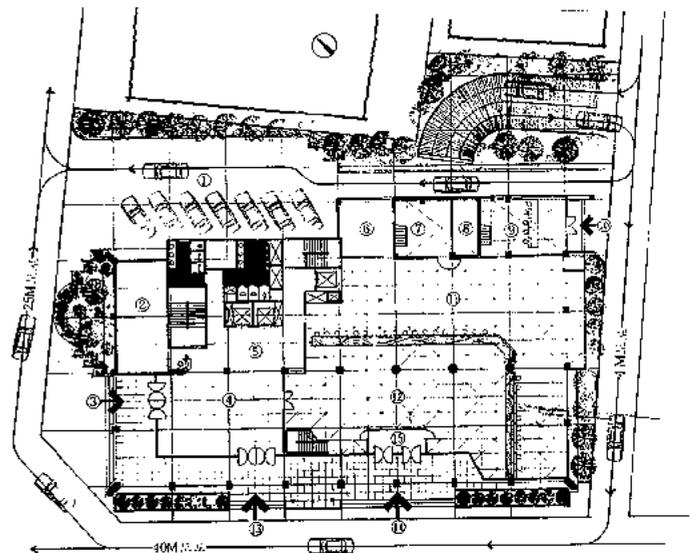
- ① 탕비실
- ② AHU. 실
- ③ 사무실



3층 평면도

- ① 사무실
- ② 감사실
- ③ 회의실
- ④ 행정실
- ⑤ 비서실
- ⑥ 상무이사실
- ⑦ 상무이사실
- ⑧ 전무이사실
- ⑨ 옥상정원

- ① 옥외주차장
- ② 방재센터
- ③ 사무실입구
- ④ 로비
- ⑤ 엘리베이터홀
- ⑥ 응접실
- ⑦ 서류고
- ⑧ 금고
- ⑨ 시금고
- ⑩ 시금고입구
- ⑪ 영업장
- ⑫ 개장
- ⑬ 사무실입구
- ⑭ 은행입구
- ⑮ 전실



1층 평면도

會員作品



청주 종합 경기장

전 경

설계개요 :

제 8 회 전국소년체전을 대비하여 청주시 사직동 60,000평 대지위에 주경기장, 야구장, 정구장, 총화회관을 주위 3 면도로에 동선을 분산시킬수 있도록 배치하였으며 주위의 지형지물을 활용하여 야구장은 토성으로 스탠드를 축조하였고 정구장은 총화회관 부지 북측의 경사를 활용하여 스탠드 축조와 남북을 주축으로 6 면코트를 설치하였음.

주경기장의 royal box 부분에 V.I.P 대기실 및 출입의 혼잡을 막기 위하여 출입통로를 구분하고 cardsection 하부에는 실내 연습장 및 선수대기실을 계획하고 royal box 양측 A석 하부에는 각 시도 연락 사무실을 설치하였음.

야구장의 주축 내각은 112°30'으로 하여 타석에서 홈런 펜스까지의 최단거리 100m, 최장거리 110m로 계획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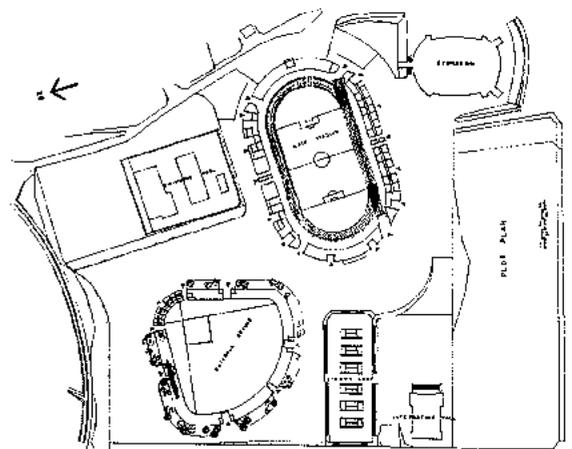
제약된 예산과 한정된 T.M을 감안하여 각부의 마감은 제불처장 및 씨리콘 방수등의 처리로 예산 절약및 공기단축을 고려하여 설계에 임하였음.



설 계 : 具 允 会 (화신건축)

위 치 : 청주시 사직동

구조개요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명 칭	1 층	2 층	STAND	FIELD	수용능력
주경기장	6,810m ²	3,873m ²	8,040m ²	18,525m ²	25,000
야 구 장	1,237m ²	271m ²	3,681m ²	12,100m ²	17,000
정 구 장			314m ²	4,924m ²	1,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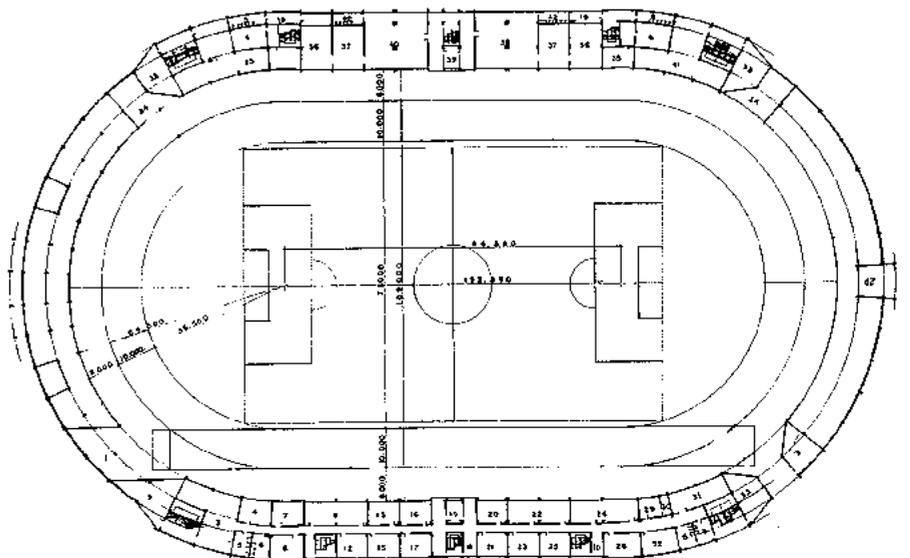


내부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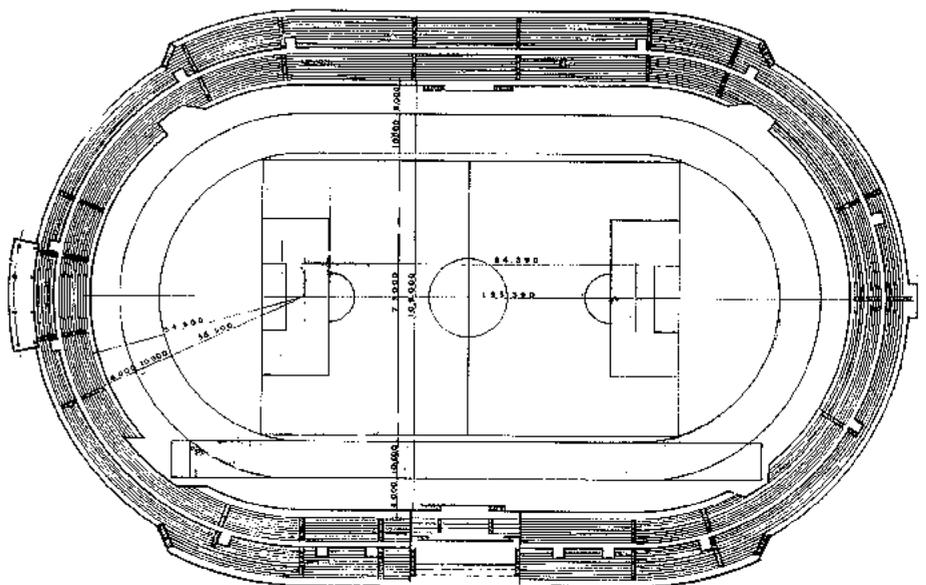


외부입면

- | | |
|----------|----------|
| ① 선수출입구 | ②② 중앙기자단 |
| ② 변전실 | ②③ 장장실 |
| ③ 선수대기실 | ②④ 귀빈대기실 |
| ④ 의무실 | ②⑤ 교환실 |
| ⑤ 화장실(여) | ②⑥ 중앙방송단 |
| ⑥ 화장실(남) | ②⑦ 지방기자단 |
| ⑦ 우체국 | ②⑧ 통신실 |
| ⑧ 여성봉사실 | ②⑨ 사진기자단 |
| ⑨ 대회본부실 | ③⑩ 암 실 |
| ⑩ 현관 | ③⑪ 경기임원실 |
| ⑪ 계단 | ③⑫ 매 절 |
| ⑫ 준비위원회 | ③⑬ 식 당 |
| ⑬ 기록실 | ③⑭ 출입구 |
| ⑭ 복도 | ③⑮ 준비실 |
| ⑮ 발간실 | ③⑯ 샤워실 |
| ⑯ 대회장실 | ③⑰ 탈의실 |
| ⑰ 인원실 | ③⑱ 선수대기실 |
| ⑱ 관용출입구 | ④⑰ 안내실 |
| ⑲ 안내실 | ④⑱ 선수대기실 |
| ⑳ 경비본부실 | ④⑲ 연습실 |
| ㉑ 관리실 | ④⑳ 성화조정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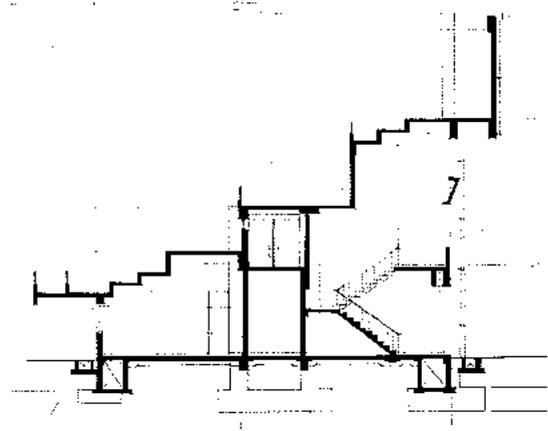
주경기장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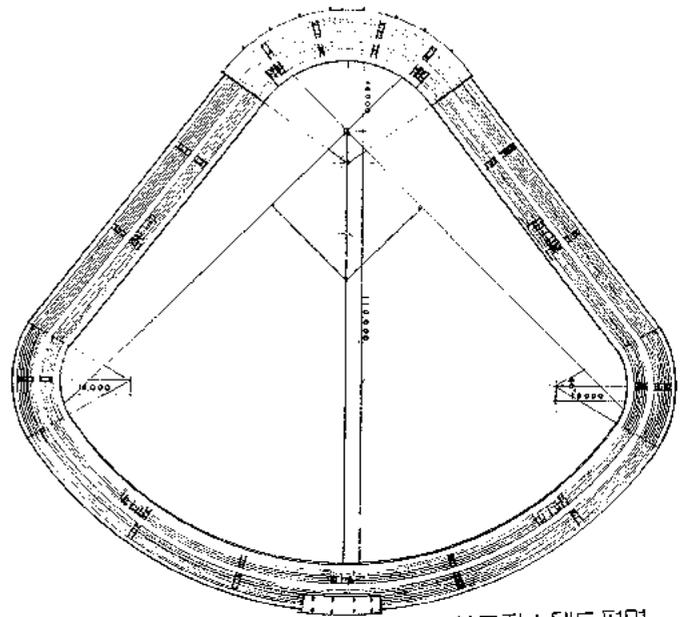
주경기장 스탠드평면

會員作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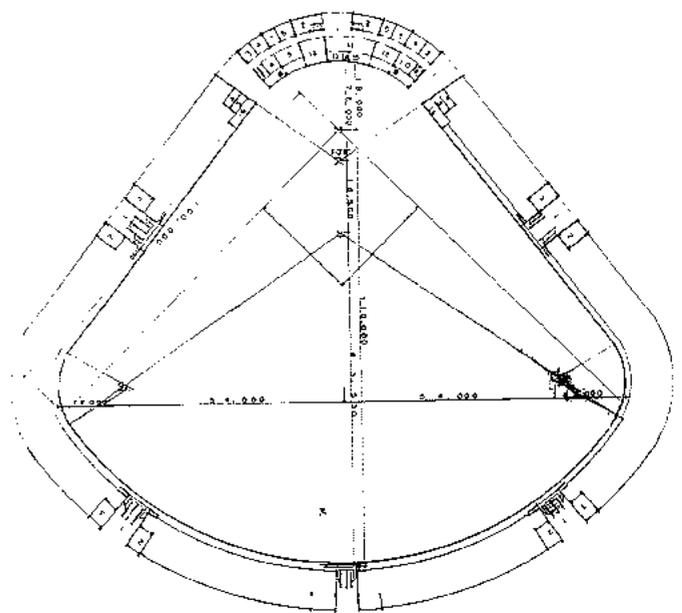
- | | |
|---------|---------|
| ① 출입구 | ⑨ 심판실 |
| ② 사무실 | ⑩ 전기기계실 |
| ③ 화장실 | ⑪ 대회본부 |
| ④ 샤워실 | ⑫ 임원실 |
| ⑤ 관리실 | ⑬ 기록실 |
| ⑥ 창고 | ⑭ 방충실 |
| ⑦ 의무실 | ⑮ 기자실 |
| ⑧ 선수매기실 | ⑯ 덕아웃 |



로얄BOX주단면



야구장스탠드평면



야구장 1층평면도

熱損失 防止를 위한 建築物의 構造에 關하여

(3)

온도의 구조, 재료 및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기준(법규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16조 2항에 의한 연탄을 사용하는 온도의 구조, 재료 및 시공방법에 관한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KS F7010 온돌구조 및 등 시공지침 2.1~2.28에 따른다.

(3) 사용연료

사용연료는 KSF 3731 구멍탄에 따른다.

(4) 온도의 구조

온도는 아궁이에서 구멍탄의 연소로 생성된 연소열기가 고래를 통하여 굴뚝으로 배기되는 동안 구들장을 가열하여 난방하는 방식으로 아궁이부분, 고래부분 및 굴뚝부분의 3부분으로 구분된다.

(5) 아궁이 부분

5-1 고정식 아궁이의 연소통은 KSE 7001 구멍탄용연소통에 따르고, 이동식 아궁이의 연소기는 KS E 7003 구멍탄용연소기에 따른다.

5-2 고정식아궁이의 연소통의 외벽 및 바닥은 10cm 이상의 두께로 단열재층을 두어 열손실이 적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이동식아궁이의 함실벽 및 바닥도 10cm 이상의 두께로 단열재층을 두어 보온하여야 한다.

5-3 고정식아궁이의 유도관은 수평면에 대하여 20도내지 45도의 경사를 가져야 하며, 오지관 또는 석면스레이트관을 사용한다.

(6) 고래부분

6-1 구들장은 두께 4cm 정도의 천연석 또는 시멘트 제품으로 크기는 40cm×60cm 또는 30cm×40cm의 평판으로 밑면은 연탄가스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매끈하고 조밀한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2 지면에 접하는 고래바닥 및 구들벽에는 방수성이 있는 재료 및 단열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방수 및 보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3 고래바닥은 고르고, 편편하게 살다져야 하며, 아궁이와 굴뚝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곳에 개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고래바닥의 경사는 아랫쪽을 제외하고 4/100내지 5/100의 경사로 한다.

7) 굴뚝부분

7-1 굴뚝의 내부단면적은 150cm² 이상이어야 하고, 온돌하나에 1개씩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굴뚝은 두께 10cm 이상의 벽돌조로 하거나 두께 0.9cm 이상의 스테이트(이와 동등 이상의 단열성을 가지며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7-2 굴뚝에는 역풍을 완충시키기 위하여 굴뚝개자리를 두어야 하며, 고래개자리 보다 깊어야 한다.

7-3 굴뚝머리에는 비, 눈이나 바람의 역류를 방지하며, 연탄가스의 배기에는 저항이 작은 굴뚝모자 또는 구조물을 설치한다.

8) 기타

8-1 연탄아궁이등이 있는 부엌등에는 연소용 공기의 공급을 위한 급기구(공기유입구)를 설치하고, 연탄에서 발생하는 가스중 실내에 누출되는 것을 유효하게 배기시킬 수 있는 배기구(공기배출구)를 설치하거나, 급기 또는 배기에 유효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8-2 방바닥을 시멘트 모르타르로 끝내는 경우 방바닥 모르타르는 시멘트 1, 모래 3의 배합으로 시공하며 2cm 이상의 두께로 수평이 되게 발라 표면을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6-2

온도의 구조, 재료, 시공방법에 관한 권장사항

(1) 아궁이 부분

1-1 공기유입구는 배출구보다 크게 설치한다.

- 1-2 공기관은 연소통 상단보다 낮게 수평으로 설치한다.
- 1-3 공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 막히지 않게 한다.
- 1-4 공기관 이외에 공기유입이 되지 않도록 한다.
- 1-5 연소통은 규격 승인품을 필히 사용한다.
- 1-6 연소통 주위와 밑부분에 방수처리와 단열층을 규정대로 형성한다.

(2) 유도관 및 분배탱크

- 2-1 유도관주위에 단열층을 필히 형성한다.
- 2-2 분배탱크 밑부분에 단열층을 필히 형성한다.
- 2-3 유도관 주위와 벽체 사이는 시멘트 몰탈을 충분히 충전한다.

(3) 유도로

- 1) 유도로 주위에 방수처리와 단열층을 형성한다.
- 2) 선체 유도로의 경사각이 25° - 45° 정도로 시공한다.

(4) 분배관

- 1) 분배관의 재질은 배경이 5 - 6cm인 오저토관이나 석면스레트관을 사용한다.
- 2) 분배관의 경사각은 5° 정도로 설치한다.
- 3) 분배관 끝부분과 구들장 밀면과의 간격은 2 - 3cm 정도로 한다.

(5) 함실 아궁이 부분

- 1) 함실은 규격품을 사용하며 크기는 폭30cm 길이 90cm 이상이 적합하다.
- 2) 함실벽과 바닥 기타주위에 방습층과 단열층을 형성한다.
- 3) 연소기 상단에서 구들장까지의 간격은 15 - 20cm 정도이어야 한다.
- 4) 함실문은 필히 설치한다.

(6) 고래부분

- 1) 고래바닥에 방습층과 단열층을 형성한다.
- 2) 구들벽 면은 고래바닥 아래서부터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를 한다.
- 3) 구들장은 규격 콘크리트 판이나 두께 4cm 정도의 크고 얇으며 강도와 밀도가 높고 열전도율이 높은 천연색 구들을 사용한다.
- 4) 구들장은 편편하고 매끈한 면이 아래로 향하도록 설치한다.
- 5) 구들벽에 구들장을 올려 놓았을 때 벽체와 구들장 간격은 5 - 6cm를 띄어 설치한다.
- 6) 고래 개자리는 아궁이 반대편에 규정대로 설치한다.
- 7) 방바닥 모르타르 두께는 윗쪽 2cm 이상 아랫쪽은 구들장을 포함하여 그 두께가 13 - 15cm 정도로 한다.

(7) 굴뚝목부분

굴뚝목에 토관을 사용하고 그 주위에 연탄카스가 스며 나오지 않도록 모르타르 처리를 철저히 한다.

(8) 굴뚝부분

- 1) 굴뚝의 내단면적은 최소 150cm²이어야 하며 방이 2개 이상이고 굴뚝을 1개로 사용할 경우는 굴뚝 아래부분에 30 - 45cm의 칸막이를 세운다.
- 2) 굴뚝은 타건물로부터 1m 이상 떨어져 설치한다.
- 3) 바람막이 굴뚝모자를 설치하며 굴뚝모자는 외권이 빠르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 4) 굴뚝개자리는 규정대로 필히 설치하여야 하며 굴뚝의 보온여부를 확인한다.

결 론

- 8회의 연구모임과 2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작성된 연구보고서 중 주요부분은 4. 1 기술기준의 법규사항과 6. 1 온돌구조의 법규사항의 두가지이다.
- 4. 1의 열손실 방지를 위한 기술기준안의 요점은 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외벽, 반자, 및 바닥에는 두께 25mm의 단열재 사용을 강제한 점이다. 창은 이중창이나 동등이상의 단열력을 갖도록 하여 열손실의 방지에 노력하고자 규제한 것 등이다.
- 6. 1 온돌구조의 경우에도 열손실이 가장 큰 아궁이부분 즉 고정식 아궁이의 연소통주변과 이동식아궁이의 연소기 주변인 함실의 벽, 바닥등에 두께 10cm 이상의 단열재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단열재의 사용강제나 기밀구조의 규제보다는 단열재의 사용에 따르는 초기투자의 증액이 난방비의 절감등으로 보상되는 경제성등을 설명하여 건축주 스스로가 단열구조를 채택하여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에너지 절약 정책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몽, 선전 유도함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하겠다.
- 열손실방지구조의 기술기준은 즉각 실시하여 시행착오적인 오류를 범할 우려도 있음으로 다음 몇가지 점을 고려해 보직하다고 생각된다.
 - 1. 25평 미만의 서민주택, 농촌주택 또는 소규모 영세주택등은 일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가 성과를 보아 확대 적용시키는 단계적 실시방안의 검토
 - 2. 기술기준 내용에 관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의견을 듣고 좀더 충실한 내용으로 수정한 다음 실시하는 방안
 - 3. 기술기준시안을 공표한후 일정기간을 두어 시행하는 방안, 이동안 시행을 위한 준비로서 단열공법의 개발, 외국기준의 비교검토, 시험장비의 확충, 기술자료집 발간등의 작업을 추진한다.
- 금회의 연구는 짧은 기간에 저를리 작성한 기술기준

시안으로 금후의 시행 성과를 보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풍동의 원유값 인상으로 밀어닥칠 에너지 위기를 생각하면 좀더 과감한 규제가 우리의 의사에 관계없이 필요해지지 않을런지 걱정스럽다.

전 망

- 이란 사태에 바르는 석유부족사태나 원유값 인상에 기인하는 에너지 코스트의 앙등을 고려하면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구조의 국가적 규제는 점점엄격하게 되어 갈 것이다.
- 이 분야에 관한 관심이 재고되면 기술기준의 내용도 좀더 고급화 될것으로 예상되는바 기술기준의 단계를 보면,

- 1 단계 외벽 에는 단열재사용, 창에는 기밀구조 채용
- 2 단계 외벽의 단열재두께규제, 창은 2중창사용
- 3 단계 외벽의 열관류율 K값규제, 창의 K값규제
- 4 단계 외벽과 창을 포함한 외벽 전체의 K값규제
- 5 단계 건물의 체적과 건물자체의 열손실율 값 규제

- 금회의 기준은 주거용 건축에서 2 단계규제, 비주거용건축은 1 단계 규제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ASHRAE의 기준은 4 단계규제에 해당되며, 독일법규는 5 단계 규제의 예이다.
- 3 단계 이상의 K값 규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로서 4. 2 열관류율 K값의 계산법을 게재하였다. K값 규제를 위하여는 건축사 모두가 K값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하며, 건축단면처럼 단순계산으로 구할수 없는 복합벽체의 K값을 측정할 열관류율 측정장치를 건설연구조 등에 갖추어야 한다.
- 또한 시공된 현장에서의 비파괴 검사법으로 열류계(Heat Flow Meter, 열전도율계(Thermal conductivity Meter) 및 적외선카메라 등의 측정기구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부록A-1) (ASHRAE)미국공조학회규격 90-75 Energy Cousevation in New Building Design

머리말

건축물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의 선택에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여기에 제시된 규격에는 에너지원의 종류와 관련하여 이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신축 건물의 설계에 관하여 설명한다.

ASHRAE는 연간 연료 사용량이나,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에너지자원의 결정에 관한 항목을 포함하려 하고 있는데, 현재 ASHRAE규격90위원회에는 이 문제를 취급하는 분과가 있어서 이것이 완성되면 제안할 것이다.

ASHRAE는 통상적인 운영을 탈피하여 기획위원회를 해산하고 해설위원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든지, 신축 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되는 에너지절약문제에 있어서 기획위원회의 일부를 존속시키고 해설위원회와 협동하기로 하였다, 이는 질의 응답을 원활히 하여 이 규격이 한층 실용적으로 되도록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목 적

1. 1 이 규격은 신축 건물의 설계에 있어서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설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1. 2 이 규격의 제조조건, 신축 건물에 있어서 단열성이 높고 기밀성이 좋은 건물 외각의 설계와 더불어,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계·전기·서비스 및 조명 방식이나 기기의 설계·선택에 쓰인다.

1. 3 이 규격은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설계자가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제10장과 제11장 또는 그 중 어느 것에 지시된 대로 특정 조건에 따른 설계법을 사용하면 에너지를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1. 4 이 규격의 의도는 신축 건물 설계에의 사용이다. 또, 공사 착공 전의 단 설계 시방서·도면·제안서를 평가 분석하여 이 규격에 제시된 조건들이 지켜지는지 불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

1. 5 이 규격은 인명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한, 어떠한 안전 조건도 삭감된 것은 없다.

2. 적용범위

2. 1 이 규격에서는 신축 건물의 설계시 건물 외각·난방·환기·공조·급탕·전기배선 및 조명 방식과 기기에 대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한다.

2. 11 이 규격은, 회관·교육 시설·사부소 건축·상업 건축·공공건축·창고·주택·공장의 사무실이나 거실 등의 건물의 신축에 적용된다. 특기할 것은, 이 규격에서 사용되는 '건물'이라는 용어에는 모빌홈이나 공장생산건축을 포함한다.

2. 12. 건물 또는 그 일부의 전에너지사용량 최대치가 상면적 1ft²당 1w(3. 4 BTU/ft²·h, 10.8w/m²)미만의 것, 또는 냉·난방시설이 없는 건물은 이 규격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2. 13. 설계 자료를 입수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특수건물 또는 그 일부는 이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적용 제외사항은 이 규격의 각 장에 명기한다.

2. 2 이 규격에서는 건물의 운전·보수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3.

3. 정의

4. 건물의외각

4.1 적용 범위

이 장의 기준은 건축 건물 외각의 열적 설계의 최저 조건을 설정한다. 여기 나오는 식·그림·표는 이를 설명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물 설계에 시스템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제10장 및 11장 또는 그 중 어느 쪽을 적용한다.

4.2 총칙

4.2.1 이 장의 목적은 에너지절약에 관한 건물 외각 구조의 최저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최저 조건이란 에너지절약의 최적 기준이 아니며 또 것처럼 해석해서도 안된다. 4.3은 2층 이하의 호텔·모텔을 포함한 1~2세대용 주택과 저층 집합주택에 적용된다.

4.4는 4.3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4.5는 전체의 건물에 적용된다.

4.2.1.1 여기에 정해진 규칙 외에 설계시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1) 건물의 방위
- 2) 건물의 형태
- 3) 건물의 어스펙트비(길이와 폭의 비)
- 4) 연상면적에 대한 총수
- 5) 건물의 열용량
- 6) 건물 표면의 색
- 7) 인접 구조물·주위의 표면·식물에 의한 그림자나 반사
- 8) 자연 환기
- 9) 풍향과 풍속

ASHRAE Handbook of Fundamentals 1972의 17~22장에 기술되어 있는 계산 순서와 내용은 상기 항목을 평가하는 지침으로 사용된다.

4.2.2 외벽의 총벽면적은 전체의 불투명 벽면적(기초의 벽·징두리벽부분등을 포함), 창면적(샤시 포함), 문면적을 합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표면은 외기에 노출되고 난방이나 냉방된 공간을 포함한다.

4.2.3 지붕구조는 외각으로서의 지붕과 천정을 일체로 하여 생각한다. 냉·난방을 할 경우 이를 통해서 건물의 열손실이나 열취득이 일어난다.

4.2.3.1 지붕구조의 전면적은 일체화된 구성요소의 실내측 표면적을 말하며 천창을 포함한다.

4.2.3.2 천정안의 환기플레넘(Plenum)으로 하는 경우의 지붕과 천정은 다음과 같다.

1) 열통과율의 계산에는 천정이나 천정플레넘 부분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전면적은 천정플레넘상부의 표면적으로 한다.

4.2.4 냉·난방된 모든 건물은 제구성요소가 규정된 소요성능을 만족하도록 건축되어야 한다.

4.2.4.1 지붕과 천정 벽이나 바닥에 대하여, 어떤 U_0 값을 사용하여 계산한 외각에 대한 전열손실, 또는 열취득이 본 절에 정해진 U_0 값을 사용하여 계산된 값을 넘지 않는다면, 개개의 U_0 값은 정해진 U_0 값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다.

4.2.5 본 장에서 요구하는 계산에는 다음의 온도별 사용한다.

	실 내 온도 [°F]	실 외 온도 [°C]	외 기 위험율 [%]
겨울	72	22.0	2.5 (계절 위험율)
여름	78	25.5	2.5 (계절 위험율)

주) ASHRAE Handbook of Fundamentals
1972·33장의 값

4.2.6 겨울철의 난방, 여름철의 냉방을 하는 건물에서, U_0 값이 다른 경우에는, 본 절에서 규정하는 외기 난방과 냉방용의 수치 가운데 높은 쪽을 사용한다.

4.2.7 에너지절약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설계는, 검토에 의하여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한다.

4.3 A형 건물의 기준

4.3.1 A형 건물이란 다음의 것을 말한다.

A; 1세대 및 2세대용 독립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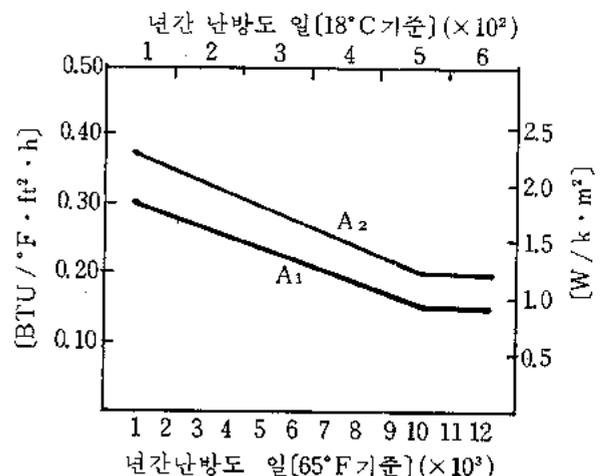
A; 기타 모든 주택건물(집합주택·2층이하의 호텔·모텔)

4.3.2 냉난방의 기준

4.3.2.1 벽; 냉난방된 건물 외벽면의 종합 열통과 과율은

1973 ASHRAE Handbook & Product Directory, System Volume의 43장에 제시된 난방도일(度日, Degree Day)을 사용하고, 그림 1에 제시된 값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림-1 A형 건물 벽의 U_0 값



4.3.2.1.1 식(1)은 그림-1 Uo값을 만족 하도록 벽·창·문등의 열통과율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4.3.2.1.2 500°F·d(278°C·d)이하 지역 의 Uo값은 다음과 같다.

- 1) 난방만을 하는 경우, Uo값은 임의로 한다.
- 2) 난방을 하는 경우 Uo값은 최대 0.30 BTU / F · ft² · h(1.70w/k·m²)로 한다.

4.3.2.2 지붕과 천정; 냉난방하는 건물의 지붕과 천정의 열통과율(Uo값)은 8,000°F·d(4444°C·d)의 지역에서 0.05BTU / °F · ft² · h(0.28W / k·m²), 8,000°F·ft²·h(0.23w/k·m²)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적용 제외; 매강당의 목조 천정등, 평지붕의 내부 마감면이 천정을 겸하는 경우, 난방도열에 관계없이 모든 지역에서 Uo값은 0.08BTU / °F · ft² · 0.45w/k·m²) 이하로 하여도 좋다.

4.3.2.2.1. 식(2)는 규정된 Uo값을 만족 하도록 지붕·천정의 열통과율을 설정하는데 사용된다.

4.3.2.3. 비난방실 상부 바닥; 비난방실의 윗층이 냉·난방된 경우 그 바닥의 Uo값은 그림-5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한다.

4.3.2.3. 흡 위에 천 바닥슬라브 구조; 이 구조의 주변부 단열재의 열저항과 시 소는 그림-2에 제시된 바와 같다.

4.4 B형 건물의 기준

4.4.1 B형 건물이란 A형 건물 이외의 모든 건물을 말한다.

4.4.2 난방 기준

4.4.2.1 벽; 난방하는 건물의 외벽 면·중합 열통과율은 1973 ASHRAE Handbook & Product Directory, System volume 43상에 제시된 ASHRAE Handbook 난방도열을 사용하고, 그림-3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한다.

4.4.2.1.1. 식(1)은 그림-3의 Uo값을 만족 하도록, 벽·창·문등의 열통과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4.4.2.2 지붕과 천정; 난방하는 건물의 지붕과 천정의 열통과율(Uo값)은 난방도열을 사용하고, 그림-4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한다.

4.4.2.2.1 식(2)는 규정된 Uo값에 합당한 조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다.

그림-2 흡 위에 천 바닥슬라브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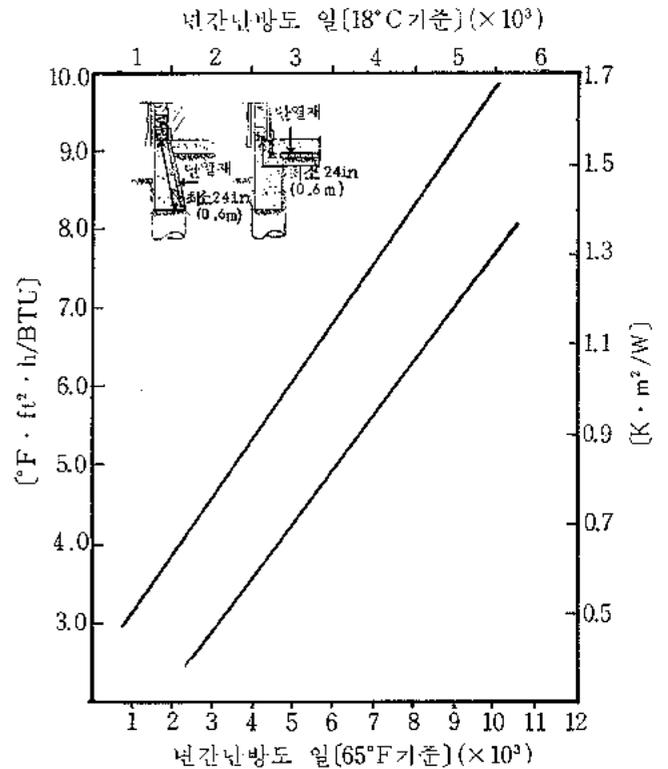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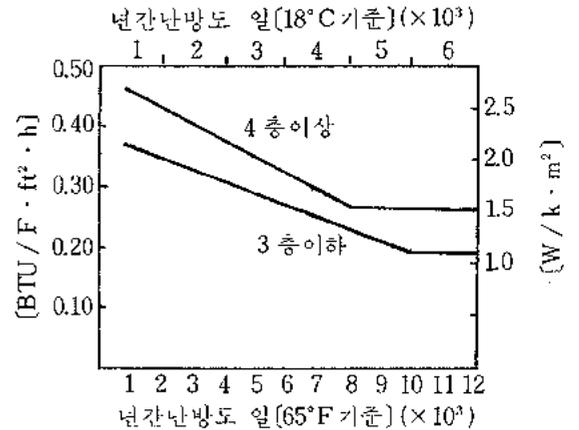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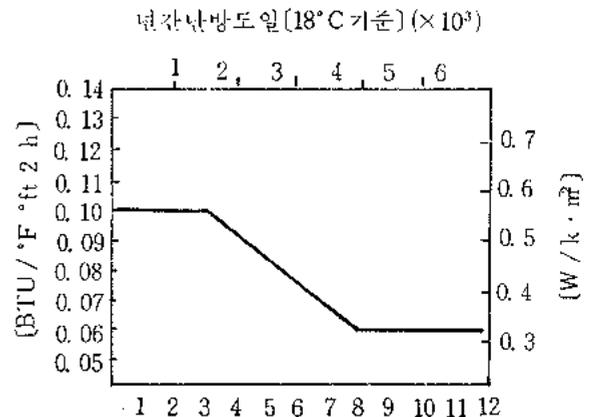


그림-3 B형 건물 벽의 Uo값(난방)



(4.3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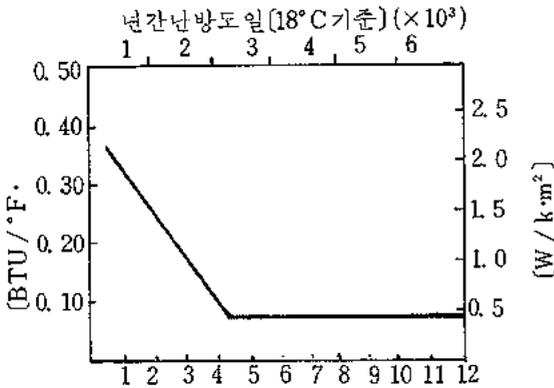
그림-4 지붕과 천정의 Uo값(B형 건물)



4.4.2.3 비난방실 상부 바닥; 비난방실 윗층이 난방되는 경우, 그 바닥의 U_0 값은 그림-5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한다.

4.4.2.4 흠위에 친 바닥슬라브 구조; 이 구조 주변부의 단열재 열통과율과 시공장소는 그림-2와 같다.

그림-5 비난방실 상부 바닥의 U_0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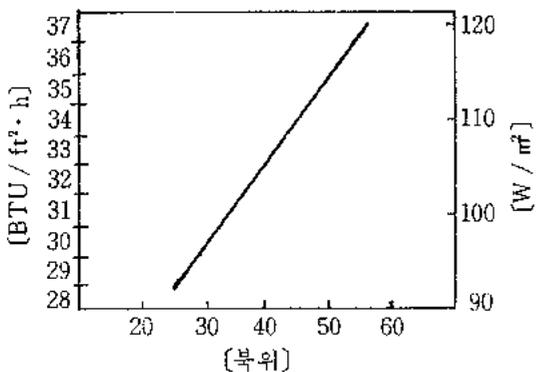


4.4.3 냉방 기준

4.4.3.1 벽; 냉방하는 건물의 외벽면 종합 열통과율(OTTV)은 그림-6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한다.

4.4.3.1.1 식(3)은 그림-6의 값을 만족하도록, 벽·창·문등의 열통과율을 결정하는데 사용한다.

그림-6 B형 건물의 벽의 종합열통과율(냉방)



(4.3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든 건물)

4.4.3.2 지붕과 천정; 냉방하는 건물의 지붕과 천정의 열통과율(U_0 값)은 난방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값을 넘지 않도록 한다. (4.3.2.2)참조

4.5 공기 누출-모든 건물

4.5.1 본 절의 규정은 실외와 풍조공간을 격리하는 외각에 한정한다.

4.5.2 공기 누출의 기준은, 25m³/h (11 l/s)의 풍속효과에 상응하는 1 567 Lb/ft² (75Pa)의 압력차에서 ASTM E283-739, standard thod of Test for Rate of Air Leakage through Exterior Windows, Curtain Walls and Doors를 사용하여 결정한다.

4.5.3 규정

4.5.3.1 창(ANSI A 134.110); NWMA IS-211); MHMA 1-71¹²); 창은 공기 누출을 한정하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 틈새바람량은 샤키의 틈새 길이 1ft당 0.5 ft³/min (1m당 0.77dm³/s)을 넘지 않도록 한다. (4.5.1참조)

4.5.3.2 유리 미닫이문(주택의 patio형) (ANSIA 134.213); NWMA IS-314); MHMA 1-71¹²); 유리 미닫이문은, 공기 누출을 한정하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 틈새바람량은 문면적 1ft²당 0.5 ft³/min (1m²당 2.5 dm³/s)를 넘지 않도록 한다. (4.5.1참조)

4.5.3.3 주택입구의 여닫이문(MHMA 3-74¹⁵) 주택용 입구의 여닫이문은 공기 누출을 정하도록 잘 설

(1m²당 6.35dm³/s)을 넘지 않도록 한다. (4.5.1 참조)

4.5.3.4 주택이외의 여닫이문·회전문·미닫이문; 이러한 문은 공기 누출을 한정하도록 잘 설계되어야 한다. 틈새바람량은 문의 틈새길이 1ft당 11ft³/min (1m당 17dm³/s)를 넘지 않도록 한다.

4.5.4 코킹과 씰(Sela); 창틀이나 문틀의 이음, 창틀·문틀과 벽사이, 각 벽 패널사이의 이음, 기타 건물의 윗층을 통과하는 닥트·파이프등의 관통 지점등 코킹재, 가스켓, 문풍지, 또는 기타의 씰(Sea)재를 사용한다.

$$[식] U_0 = U_{wall} A_{wall} + U_{window} A_{window} + U_{door} A_{door} \dots \dots \dots (1)$$

여기서,

U_0 ; 총벽면 평균 열통과율(BTU/°F·ft²·h (W/k·m²))

A_0 ; 총외벽면적(4.2.2참조) (ft²(m²))

U_{wall} ; 불투명벽의 선요소 통과율(BTU/°F·ft²·h (W/k·m²))

A_{wall} ; 불투명벽 면적(ft²(m²))

U_{window} ; 창의 열통과율(BTU/°F·ft²·h (W/k·m²))

A_{window} ; 창면적(Sash포함)(ft²(m²))

U_{door} ; 문의 열통과율(BTU/°F·ft²·h (W/k·m²))

A_{door} ; 문면적(ft²(m²))

단, 2종류 이상의 벽·창·문이 사용되는 경우의 $U \times A$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한다.

$$U_{wall1} + U_{wall2} A_{wall2} + \dots \dots \dots U_0 = U_{roof} A_{roof} + U_{skylight} A_{skylight} + \dots \dots \dots (2)$$

계속

駐 車 場 法

1979년 4월 17일

국무총리 최 규 하

국무위원
건설부장관 고 재 일

第 1 章 總 則

第 1 條 (目 的) 이 법은 都市에 있어서 自動車의 駐車를 위한 駐車場의 設置·整備 및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함으로써 都市내 自動車交通의 圓滑을 기하여 公衆의 편의를 도모하고 都市機能의 維持 및 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 (用語의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路上駐車場”이라 함은 自動車의 駐車를 위하여 道路의 路面 또는 交通廣場의 일정한 區域에 設置하는 施設로서 一般의 用에 供하는 것을 말한다.
2. “路外駐車場”이라 함은 自動車의 駐車를 위하여 道路의 路面 또는 交通廣場 이외의 場所에 設置하는 施設로서 一般의 用에 供하는 것을 말한다.
3. “道路”라 함은 道路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를 말한다.
4. “自動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 2 條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중 2 輪車 이외의 것을 말한다.
5. “駐車”라 함은 道路交通法 第 2 條 第14號의 規定에 의한 駐車를 말한다.

第 2 章 駐車場整備計劃등

第 3 條 (駐車場整備地區) 建設部長官은 道路의 效率을 높이고 圓滑한 自動車交通의 확보를 위하여 都市商業地域 또는 그 周邊地域안의 駐車需要가 顯著하게 높거나 自動車交通의 輻輳로 인하여 駐車場의 整備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區域을 市長(서울 特別市長 및 釜山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郡守의 申請에 의하여 都市計劃으로써 駐車場整備地區로 指定할 수 있다.

第 4 條 (駐車場整備計劃의 立案) ① 市長 또는 郡守는 第 3 條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整備地區가 指定된 때에는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에 대한 都市計劃(이하“整備計劃”이라 한다)을 그 駐車場整備地區의 指定이 있는 날로부터 2 年內(決定된 整備計劃을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立案하여 決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에는 路上駐車場設置計劃과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路上駐車場의 設置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整備計劃은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안의 駐車需要를 漸次的으로 路外駐車場으로 充당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④ 市長 또는 郡守는 第 1 項의 整備計劃을 立案함에 있어서는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에 대한 다음 各號의 事項을 調査하여 이를 整備計劃에 反映하여야 한다.

1. 土地利用現況
2. 自動車交通發生量과 集中量
3. 駐車需要의 長期豫測

⑤ 路上駐車場設置計劃은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안의 駐車需要와 路外駐車場의 駐車能力을 甚索하여 道路交通의 混雜을 招來하지 아니하도록 最少限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⑥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정하여야 한다.

1. 路外駐車場의 位置 및 面積
2. 路外駐車場의 形態(建築物 또는 工作物인 경우에는 建蔽率·容積率 및 높이)
3. 駐車場의 概略의인 誘致圈 및 駐車臺數

第 5 條 (駐車場整備地區이외의 地域의 駐車場設置計劃) 駐車場整備區域이외의 都市計劃區域내에 駐車場을 設置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都市計劃으로 이를 決定하여야 한다.

第 6 條 (駐車場設置計劃의 基準등) ① 第 4 條 第 2 項 및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設置計劃 및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의 基準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② 市長 또는 郡守가 第 3 條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整備地區의 指定申請을 하거나 第 4 條 第 2 項 및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路上駐車場設置計劃 또는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을 立案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第 3 章 路上駐車場

第 7 條 (路上駐車場의 設置 및 廢止) ① 路上駐車場은 당해 駐車場이 位置하는 都市計劃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가 路上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이를 設置한다.

②市長 또는 郡守는 路上駐車場의 存置가 필요없게 되거나 第4條第1項의 整備計劃에 따라 路上駐車場에 代替되는 路外駐車場이 設置된 때에는 지체없이 路上駐車場을 廢止하여야 한다.

第8條(路上駐車場의 管理)① 路上駐車場의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駐車場을 設置한 市長 또는 郡守가 管理한다.

② 路上駐車場의 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9條(路上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①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을 管理하는 市長 또는 郡守(이하“路上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を 받을 수 있다. 다만, 道路交通法 第2條第13號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가 駐車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の 料率과 徵收方法 등은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 路上駐車場管理者는 正當한 理由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を 納付하지 아니하는 者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駐車料금과 同一額의 범위 안에서 加算金を 받을 수 있다.

④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금이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이하“駐車料金등”이라 한다)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地方稅滯納處分の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할 수 있다.

第10條(路上駐車場의 供用制限등)① 市場 또는 郡守는 交通이 混雜하거나 混雜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緊迫한 事態가 발생한 경우에는 一定한 期間 또는 時間을 정하여 路上駐車場의 全部에 대한 供用을 制限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上駐車場의 供用을 制限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미리 公告하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第11條(路上駐車場의 標識)① 路上駐車場管理者는 路上駐車場에 駐車場標識와 區劃線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路上駐車場管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이외의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금 기타 路上駐車場의 이용에 관한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4章 路外駐車場

第12條(路外駐車場의 設置)① 路外駐車場은 당해 駐車場이 位置하는 都市計劃區域을 管轄하는 市長 또는 郡守가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 이를 設置한다.

② 市長 또는 郡守이외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都市計劃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 路外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③ 路外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의 基準은 建築法 기타 다른 法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路外駐車場의 管理)路外駐車場은 第1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가 管理한다.

第14條(路外駐車場의 駐車料金徵收등)①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을 管理하는 者(이하“路外駐車場管理者”라 한다)는 駐車場에 自動車를 駐車하는 者로부터 駐車料金を 받을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料金の 基準과 徵收方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管理方法)① 市長 또는 郡守가 管理하는 路外駐車場의 管理·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② 市場 또는 郡守이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가 駐車場의 供用을 開始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駐車料금과 駐車場의 管理·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管理規程으로 정하여 미리 市長 또는 郡守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事項을 變更할 때에도 또한 같다.

第16條(中止등의 申告)市長 또는 郡守이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가 駐車場의 全部 또는 一部에 대한 供用을 中止하거나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 또는 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7條(路外駐車場管理者의 責任등)① 路外駐車場管理者는 條例 또는 管理規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場을 誠實히 管理·運營하여야 하며, 施設의 適正한 維持管理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의 供用期間에 正當한 事由없이 그 이용을 拒絶할 수 없다.

③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에 駐車하는 自動車의 保管에 관하여 善良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證明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自動車의 滅失 또는 毀損으로 인한 損害賠償의 責任을 免하지 못한다.

第18條(路外駐車場의 標識)① 路外駐車場管理者는 駐車場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標識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識의 種類·書式 기타 標識의 設置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5章 建築物附設停車場

第19條(停車場의 附設)① 都市計劃區域 안에서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建築物에 附帶되는 停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停車場을 設置하여야 할 建築物의 用途別規模 및 停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特定建築物로 인하여 駐車需要가 顯著히 增加되거나 增加될 것이 豫想되는 때에는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設置基準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따로 定하는 基準에 따라 당해 建築物 또는 隣近에 停車場을 設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6章 補 則

第20條(國·公有財産의 處分制限)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 所有의 土地로서 路外停車場設置計劃에 따라 路外停車場을 設置하는데 필요한 土地는 이를 다른 目的으로 賣却하거나 讓渡할 수 없으며, 關係行政廳은 路外停車場의 設置에 積極協助하여야 한다.

② 路外停車場設置計劃에 따라 道路·廣場 및 公園 등의 地下에 路外停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 당해 路外停車場의 設置에 關하여 都市計劃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認可(都市計劃法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許可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 및 公園法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 路外停車場의 敷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第21條(補助 또는 融資)①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停車場整備地區 안에서 路外停車場의 設置를 促進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路外停車場의 設置에 關한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補助할 수 있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路外停車場의 設置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路外停車場의 設置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을 允認할 수 있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아 停車場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 그 費用의 一部를 補助하거나 필요한 資金의 融資을 允認할 수 있다.

第22條(駐車料金등의 使用制限)市長 또는 郡守가 第9條 第1項 및 第3項과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받은 駐車料金등은 停車場과 交通安全施設의 設置·管理 및 運營 이외의 用途에 이를 사용할 수 없다.

第23條(監 督)① 建設部長官은 停車場의 整備가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 또는 郡守에게 停車場의 整備에 關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 또는 郡守는 지체없이 停車場의 整備에 關하여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② 建設部長官은 停車場이 公益上 顯著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현저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市長 또는 郡守에게 당해 停車場에 대한 施設의 改善 使用의 制限등 필요한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으며 그 命令을 받은 市長 또는 郡守는 필요한 措置를 取하여야 한다.

③ 市長 또는 郡守는 路外停車場管理者에 대하여 당해 停車場이 公益상 현저히 有害하거나 自動車交通에 顯著한 支障을 招來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의 改善·供用의 制限등 措置를 取할 것을 命할 수 있다.

第24條(法令違反등에 대한 處分)① 市長 또는 郡守 이외의 路外停車場管理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長 또는 郡守는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承認을 取消하거나 工事나 營業의 中止를 命할 수 있다.

1.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に 違反한 때

2.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停車場의 構造 및 設備基準에 適合하지 아니한 工事を 한 때

② 帳場 또는 郡守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 또는 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路外停車場管理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路外停車場管理者가 정당한 事由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5條(보고 및 檢査)① 市長 또는 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路外停車場管理者에 대하여 監督上 필요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停車場 또는 그 業務와 關係있는 場所에서 停車場의 施設 또는 業務에 關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表示하는 證票을 關係人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票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建設部令으로 定한다.

第26條(權利義務의 移轉)이 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承認으로 인하여 발생한 權利義務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移轉할 수 있다.

第27條(都市計劃區域외에 있어서의 準用)都市計劃區域 이외의 地域에서의 路外停車場의 設置·管理에 關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의 一部를 準用할 수 있다.

第28條(施行令)이 法의 施行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 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7 章 罰 則

第29條(罰 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路外駐車場을 設置한 者
-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路外駐車場의 供用을 開始한 者

第30條(同 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 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을 얻은 管理規程에 정한 金額 이상의 駐車料金を 받은 者
-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長 또는 郡守의 命令에 違反한 者

第31條(同 前)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路外 駐車場의 供用의 中止 또는 廢止를 한 者
-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路外駐車場의 이용을 拒絶한 者
-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이용에 關하여 필요한 標識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 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拒否·忌避 또는 妨害한 者

第32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

에 關하여 第29條 내지 第31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 刑을 科한다.

附 則

①(施行日)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 및 附則 第4項의 規定은 第19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大統領令이 制定·施行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이 法 施行 당시 都市計画法에 의하여 都市計劃施設로 設置된 路上駐車場 및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駐車場 으로 본다. 다만, 市長 또는 郡守 이외의 路外駐車場管理者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2月내에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의 承認을 얻어야 하며, 路外駐車場管理者는 당해 路外駐車場을 이 法施行日로부터 1年내에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로의 駐車場의 構造 및 設備의 基準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都市計画法의 改正) 都市計画法 第18條第1項 第11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1. 駐車場整備地區：駐車場法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地區

④(建築法の 改正) 建築法중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1. 第22條의 2를 削除한다.
- 2. 第42條第1項第1號중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의 規定”을 “이 法에 의하여 發하는 命令이나 處分”으로 한다.
- 3. 第55條第2號 中 “第22條의 2”를 削除하고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을 “第41條第3項 및 第4項이나 駐車場法 第19條”로 한다.

新刊

研究 施設

設計·建築·設備資料集成

Chemische und
biologische Laboratorien
Planung Bau Einrichtung

Werner Schramm 著
監訳

工学博士 山崎三郎
工学博士 井上宇市
工学博士 番匠吉衛

本書는 一般의인 설계원리의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실험실 및 실험시설의 지 수와 배치를 논하였고 실험실 규모의 기준을 설정해 부지와 건축의 기본자료를 구성하는데까지 이 치고 있습니다. 그밖에 건축의 세부적인 배치 및 에너지공급 방법, 실험시설의 배관, 나아가서는 실험기기의 설치 및 사용법을 고려한 실험실의 결정, 필요한 부속실, 통풍실, 실험실의 살균까지 검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地農체크에 進一步

中央觀象臺, 새地農計 설치

美國地農研究所는 全世界 160個所의 地農視測網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 중의 하나로 지난 63년에 우리나라 에도 標準地農計를 설치 운영해왔다. 그러나 10年 이상 사용하여 老朽化하여 대체하고자 작년 6月 이를 철거, 약 1年間視測活動이 中斷되었다. 美國地農研究所는 지난 21日, 새로운 標準地農計를 설치 완료하고 가동에 들어갔는데, 中央觀象臺는 이를 맡아 운영 매일 1회씩 地雲現況을 체크, 그 결과를 미국에 통보한다.

이번의 地農計는 有感地農인 경우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地農상황이 정확히 체크되며, 無感地農인 경우 日本 中國 등 極東地域의 現況을 체크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觀象臺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地農現況을 측정 하기 위해 既存 서울, 光州 外에, 釜山·大田·江陵 등 3곳에 地農計를 새로 설치하는 동시에 서울에는 좀더 정밀한 地農計를 설치하기로 하고 관계 당국에 予備費 사용을 요청했다.

建築規制 一部 解除

江南移轉의 販賣施設·集會施設·學院 등 都心 5km밖의 流通施設 人口 20萬이하 市郡의 店鋪·새마을會館 등

정부는 建築資材 需給事情이 다소 緩和됨에 따라 작년 5月 이후 실시하여 온 新築規制를 5月 23日 부터 풀기로 하였다. 건설부에 따르면 新築規制 解除對象은 다음과 같다. ○서울 江北에서 江南으로 이전하는 販賣施設(수퍼마켓·市場·連鎖商街·百貨店 등), 觀覽集會施設(札式場·劇場·展示場 등) 및 學院

○流通構造改善을 위한 市場·수퍼마켓·새마을販賣場-

서울 江北에서는 都心 5km밖(4大門밖), 기타지역에서는 住宅地에서 1.5km 이내에 市場이 없거나 都市計劃上의 예정지.

○78년도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건축이 보류된 비영리법인 등의 公共機關 事務室

○人口 20萬 미만의 市·都地域에 신축되는 새마을 會館 또는 一般店鋪

건설부 관계자는 이번 解除指置로 需要가 늘어난 시멘트는 39.7萬톤, 鉄筋 7.2萬톤으로 보고 있으나, 지난번 經濟安定化施策에 의한 農村住宅建立計劃 축소 및 政府工事 發注보류로 전체 資材需給上 130萬여톤의 시멘트와 8.5萬톤의 鉄筋이 남아들 정도로 여유가 생겨 資材波動은 없을 것이라 하였다. 앞으로 資材需給動向을 보아, 나머지 政府機關庁舎, 公益法人事務室, 40명 이상의 單独住宅, 非店住用民間建物에 대해서도 下半期에 段階的規制指置의 解除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하였다.

85%가 6年後에 내집 마련의 꿈

건설부, 無住宅家口와 대상調查

건설부가 전국 1,436,351家口의 無住宅家口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6개市의 21,000家口를 대상으로 실시한 "78年度 都市無住宅家口 住店實態調查"에 따르면 그들 月取는 105,000원인데 78年上半期 全都市動勞者 月取 135,000원보다 낮다. 반면 전세는 최저 80만원 최고 200만원이며, 평균 전세값은 工業都市 146만원, 中小都市 124만원, 大都市 113만원, 서울 등 大都市 주변의 衛星都市 107만원이다.

無住宅家口의 月所得을 분류하면 8~10만원이 24%, 10~12만원 19.1%, 12~15만원이 16%, 4~8만원 14.6%, 6만원이하 10.3%이다.

10年만에 地上權 侵害訴訟

서울市, 淸溪·大林商街아파트 상대

10년전 서울시 한복판 退溪路 4 가에서 乙支路 3 가까지 남북을 가로질러 건축된 淸溪商街아파트와 大林商街아파트가 一部道路上空을 침범한 이른바 地上權을 침해하였다 하여 소송을 내 화제가 되었다. 서울시가 두 건물소유회사를 상대로 낸 不當利得金返還請求訴訟은 현재 서울地法에서 심리중이다. 서울시는 淸溪商街아파트는 88명을 大林商街아파트는 169명의 道路地上權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所有者들은 66年 11月, 서울市가 이곳을 再開發地域으로 지정, 서울市의 권유에 따라 건축하였으며, 서울市가 竣工檢査時 묵인해주었고, 현재 5층 이상은 아파트를 분양해 住民 소유가 됐다는 이유를 들어 서울市에 맞서고 있다. (5/26)

借款으로 지은 “호텔·롯데”萬坪 百貨店등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

5月26日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8月 준공 예정인 “호텔·롯데”부속건물(26층, 22,300명)중 지하1층~지상7층까지 10,000명을 百貨店 및 賃貸事務所로 용도변경할 수 있게 허가해줄것을 요청하고 있다. 당초는 外國觀光客을 위한 特定品販賣場·觀光터미널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호텔·롯데는 73年 觀光호텔 건설을 위한 外國人投資 및 借款導入認可를 받아 日本롯데로부터 1億4千5百萬달러의 자금을 도입 건설하는 것이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같은 호텔측의 신청을 검토중이며 認可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약한 公共圖書館……33萬에 하나꼴 行政改革委 調査 指摘

行政改革委員會가 5月25日 발표한 圖書館改善을 위한 調查報告에 따르면 地域단위로 설치되어야 할 公共圖書館이 全國 237개 市郡區의 절반도 안되는 110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이와같은 숫자는 人口 33萬에 公共圖書館 하나꼴인데, 소련 1,900명, 핀란드 5,100명, 英國 98,000명, 美國 25,000명당 1個館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日本 115,000명, 필리핀 102,000명, 泰國 113,000명 등 東南亞 水準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全國117개市都에 圖書館지을計劃 圖書館운영개선을 위한 總理指示

정부는 圖書館이 없는 全國 117개 市都에 단계적으로 圖書館 및 그 分館이나 移動文庫를 설치하고 文敎部에 圖書行政業務를 전담하는 機構를 두는 한편 國立中央圖書館

의 역할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崔圭夏 國務總理는 5月25日 현재 우리나라 圖書館 실행은 책과 장소만을 배열해주는 機能밖에 못하고 있는 등 고전적인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高度産業化에 대처하기 위해 圖書館이 각종 情報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행 圖書館法등 관계법을 고치라고 지시했다.

家庭熱管理綜合센터 설치

熱管理協, 技術相談·施工業体案内등

韓國熱管理協會(회장 鄭周永)는 5月25日, 서울 慶雲洞 水雲會館에 家庭熱管理綜合센터를 설치하였다.

업무내용은 △油類·煉炭·溫水보일러의 施工·補修·改替 및 配管 相談과 건설한 施工業体案内 △家庭暖房用 機資材 및 保溫 斷熱材 案内 등이며 직접 방문 뿐 아니라 電話問議(72-6747, 4035)에도 응한다. 施工은 標準示方에 따른 実費로 해준다.

熱管理協會는 올해의 成果를 보아, 내년부터는 全國 市道에도 家庭熱管理綜合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鐵筋콘크리트 싼 “獨立門”

施工時期에 의견이 분분

서울시가 城山大路를 새로 내면서 79年3월 文公部가 결정한 獨立門(1898)의 이전공사는 5月25日 현재 30% 解体 工程에 있다.

解体工事は 한사람의 石工이 하루 한개의 돌을 떼기가 어려울 정도로 難工事이다. 더구나 표면의 花崗石이 80년 동안에 많은 風化가 되었고 單純組積造로만 알았던 것이 内部는 鐵筋콘크리트造로 되어있어 더욱 힘들고 있다. 内部의 구조는 지름10mm 円形鉄筋을 가로세로 10cm 간격으로 배근한 鐵筋콘크리트造인데 이의 도입시기가 建立 당시나, 補修과정이나 의견이 분분하다.

만약 建立 당시라면, 日本이 1903년 비파흐(琵琶潮) 교량건설시에 처음으로 鐵筋콘크리트造를 썼으므로 獨立門은 그보다 앞서는 것이며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 최초(1910)의 철근콘크리트조의 도입시기도 소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1928年 10月에 발간된 “朝鮮과 建築”誌에, 獨立門의 기초가 약해 朝鮮總督府가 당시 4,000원의 예산을 京城府에 주어 대대적인 修理를 한 기록이 있어 이때 解体復元하면서 鐵筋콘크리트를 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建立에 쓴 材料 및 그후 補修 등에 관한 記錄이 없어, 어느 시기에 쓴 것인지 분명한것은 아직 모르고 있다.

民間地主도 有料都市公園조성계 建設部, 都市公園綠地法案제출작업

5月25日 건설부에 의하면, 都市計劃에 都市公園 예정지로 지정된 해놓고 財源이 없어 開發이 지연되고 있을뿐 아니라 私有財產權이 침해 당하고 있는 등 土地活用上 비효율적인 점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9月 定期国会에 제출 목표로 준비중인 都市公園綠地法案에 民間인에게도 都市公園開發에 참여할 수 있게 반영중이다. 또 그 法案에는 都市公園綠地의 保全과 開發管理규정을 비롯 都市別 面積과 人口比率에 의해 一定面積以上の 公園을 확보하게 하는 외에 公園開發을 促進하는 것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注文住宅建設事業으로 方向轉換 一部 建設業体, 景氣沈滯, 打開策으로

一部 建設業体는 住宅景氣 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一環策으로 지금까지의 一般住宅 建設分讓에서 注文住宅 建設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5月28日 業界에 의하면 그와같은 試圖로, 田園住宅은 이미 12동, 新東洋建設은 4 동을 각각 건축하였다고 한다. 아직 이렇다할 需要를 유발하고 있지 않지만, 住宅需要者의 기호를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인기를 모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不動產景氣 去來없이 保合勢

8 投機抑制 9개월째. 夏閑期

작년 8.8 不動產投機抑制 조치 이후, 春季盛需期마저 제대로 느껴보지 못한 不動產景氣 침체는 그대로 夏閑期로 이어지고 있다. 또 당국의 規制 완화 전망이 없고 油價引上등 景氣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잇달고 있어 쉽게 회복되지 못할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는 지난 3月, 建設부의 아파트請約 3年内 再當籤禁止 철폐방침 발표로 깨어나듯 했으나 불과 5일만의 반복으로 더깊은 늪으로 빠졌다. 土地와 아파트는 작년 8월초의 시세에서 10% 정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保合勢 单独住宅도 지난 年末보다 10% 정도 떨어졌다고 한다. 이같은 침체 속에서도 貫·月貫 등은 住宅難을 반영, 여전히 뛰어 올들어 최고 80% 가까이 올랐다고 한다(5/30).

騒音公害방지위해 建築制限

第3漢江橋~高速도톨게이트. 양쪽 100M는 綠地帶로

서울시는 5月31日, 高速道路路邊의 騒音公害防止對策의 일환으로 第3漢江橋~高速道路 돌게이트까지 8km 區間 進入路의 中心線에서 양측 100M 綠地帶로 묶어 建築을 제한하는 한편, 100M를 넘는 지역에도 아파트 住宅등 住居用 建物에 대해서만은 許可 않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高速道路 주변에 騒音被害를 고려않고 아파트 등의 建築을 허가해준 결과, 불과 30~

50m沿邊에 아파트 団地가 들어섰고, 住民들이 防音壁을 설치해달라고 集團 抗議와 陳情이 빗발쳐 왔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3月, 高速道路 중심선으로부터 50m까지 建築制限하는 한편, 고속도로와 아파트 건물을 직각으로 배치하고 防音林 설치등 대책을 세웠으나 騒音이 여전히 하므로 건축제한목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建築制限區域의 확대 이외에도 進入路를 다른 곳으로 내는 방안, 進入路에서의 車輛 走行速度를 제한하는 方案등 騒音公害를 解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太陽熱住宅 대량 보급 促進案

稅制·金融의 지원 聯立住宅에 義務化

정부는 현 石油危機에 대처, 太陽熱住宅을 대량 보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太陽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稅制 金融上的 지원을 더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5月30日 관계당국에 의하면 오는 82년까지 5,000 동을 보급한다는 계획 아래, 住宅債券 買入免除, 取得稅, 登錄稅의 면제하는 한편 住宅資金融資對象(현행 25명 이하)을 太陽熱住宅의 경우 25~45명까지 확대하고 融資限度額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太陽熱住宅建設業者에 대해서는 土地확보에 있어 우선권 부여하며 國民投資基金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며, 太陽熱 施工機資材의 輸入開放과 關稅 還給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3層이상 聯立住宅 건설에는 太陽熱시공을 義務化하며, 이 밖에도 各級學校의 신축 증축시에 2개동에 대해 시범적으로 태양열 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신규 住宅건설에는 斷熱材시공을 義務化할것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住宅債券買入·取得稅·登錄稅의 면제, 모든 신규住宅의 斷熱施工 등을 놓고 建設部·內務部·動資部 등 간에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한다.

빌딩·간판·차량·주택등 色彩規制

善都行政諮問委에 色彩分科委 설치

서울시는 6月4日, 機能위주로만 건설된 서울을, 멋과 낭만이 깃들고 우리의 열이 담긴 아름다운 都市로 꾸미기 위해 首都行政諮問委員會 안에 色彩分科委員會를 신설, 建物·街路樹·着板·車輛·住宅에 사용되는 색깔이 周圍施設物의 색깔과 調和를 이루도록 規制키로 했다.

이 위원회는 △既存施設物에 대해서는 地域別로 현재 사용된 색깔을 조사, 심의를 거쳐 調和된 색깔로 바꾸도록 勸奨 指導하고 △이달부터 계획되는 市事業이나 민간인들에게 許可해주는 사항은 사전에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할 색깔을 지정, 條件附로 許可해주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할 사항은 再開發事業地域을 비롯한 각종 建築物·共同住宅·街路樹(樹種) 등 造景計劃 등이며, 각종 看板·標識物·公共建物·車輛橋梁·高架道路·歩道블록 등의 색깔이다.

색채분과위원회 위원은 金正秀 朱鍾元 姜明求 金世中 金教滿 韓道龍 李信玉 8인이다.

블록別 地番 체계화 연차적으로 서울市, 特別委 構成키로

서울市는 현재의 불합리한 地番을 정연하게 재조정키로 하고 전문가들로 特別委員會를 구성,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블록別 地番(街番)부여 등 地番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것은 鄭相千市長이 6月4日, 우선 主要街路부터 블록을 나누어 地番을 부여토록 하고, 區劃整理事業이나 再開發事業 등과 같은 都市整備事業을 할때, 都市基本計劃에 맞추어 地番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지시한데에 따른것이다.

地番改革의 필요성은 수년전부터 논의 되어왔으나 百萬筆地가 넘는 엄청난 地籍의 番地를 뒤바꾸고 이에 따른 각종 公簿를 재정리하는데 따른 막대한 予算과 事業期間 때문에 계속 미루어 왔던 것이다.

住公, 再開發事業에 적극 참여 14개市 42개 対象地區 現地 踏查끝에

住宅의 量的需要 충족에 중점을 두어 온 住宅公社는, 앞으로 量的供給擴大는 물론, 住居條件을 향상시키기 위한 全國 主要都市의 住居地區 再開發事業에 적극적 참여하게 될것으로 알려졌다.

6月5日 관계당국에 의하면, 住公의 이같은 방향 전환은 人口의 都市集中을 막기위한 政府施策으로 신규宅地의 확보가 곤란하게 되었으며, 不良住宅地區의 再開發事業이 촉구되고 있는 점등을 충족키 위한것이다.

住公은 再開發事業에 참여함으로써 都心地內 住居地域을 재개발, 非效率의인 土地의 活用度를 높이고 集團化하여, 住居地域을 “職住近接化”하고 交通人口 誘發要因을 제거하는 등 다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住供公이 再開發事業에 참여하게될 地域의 要件은 ① 事業地區內 土地중 國公有地가 70% 이상이어야 하고, ② 地區內 既存建物중 철거대상이 25% 이상이어야 하고, ③

事業對象家口가 家口所得의 20%를 住居費로 지출할 수 있는 經濟力이 있을것 등이다.

住公은 이같은 사업을 위해 이미 서울을 비롯 釜山·大邱·大田·仁川·水原·安養·金川·群山·禮里·木浦·馬山·晉州·東草 등 14개市 42개 地區에 대한 現地踏查를 마치고, 이중 4개市 12개 地區에 대해서는 조사원이 각 가구를 방문, 8개 분야 137개 항목의 설문형식으로 사회 경제성 조사를 마친 바 있다.

大型建築物 中間·竣工檢査 強化

專担班 편성 운영등, 建築法施行令 改正案 마련

6月5日, 건설부가 마련, 法制廳 심의에 넘긴 建築法施行令 改正案에 따르면 현재 大型建築物에 대한 中間 및 竣工檢査는 1~2명의 직원이 현장에 나가 目測으로 하기때문에 建物の 安全性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電氣·上下水道·防火施設 등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어 앞으로는 建築·土木·電氣·上下水道 등 각분야별 전문가들로 專担班을 편성 中間 및 竣工檢査를 맡기고 建物の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로 하였다.

건설부는 이 운영경비로 충당하기 위해 受益者負擔原則을 적용, 建築許可手数料를 징수키로 하였으며, 建物の 강도·안전성 적정시공 여부 등을 판별할 수 있는 최신 機器도 도입키로 했다.

그린벨트 個人林野, 정부買入 검토중

調査担当機構 常設등, 관리제제 정비도

6月6日, 건설부에 의하면 開發制限區域(그린벨트) 管理体制 정비방안의 하나로 建設部 안에 그린벨트 調査担当機構를 상설, 수시로 그 관리실태를 조사 검토하는 한편, 각 市道郡에 綠地担当職員을 두어 土地形質變更을 강력 규제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정부의 그린벨트관리기 長期化됨에 따라 土地所有者의 財産은 손실이 크고, 민원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農地를 제외한 林野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國家가 買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또 그린벨트 내에서 住宅의 改築등 住居生活에 불편을 주거나 農漁民의 生計活動에 지장을 수직될 지역은 용도별로 다소 緩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건축허가 일부제한 해제건의

건설부장관 귀하

1. 건축법 제44조 제 2 항 및 동 시행령 제170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 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자재의 수급 불균형을 예방하고 저소득층의 주택과 공장건축에 필요한 자재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1978년 5. 22부터 전국에 걸쳐 건축허가를 일부 제한하여 왔으며 특히 4 차에 걸쳐 도심 교통난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축물과 유통구조 개선에 필요한 건축물 등을 동 제한 조치에서 해제한 바 있으나

2. 동 제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하여는 본협회로서도 이해를 하는 바이나, 이제 철근, 시멘트등 주 건축자재의 수급이 원활해져 동제한 목적이 해소된 것으로 사료되며,

3. 더욱이 동 제한 조치에 따라 건축활동이 급격히 감소되어 본협회 회원이 건축사업을 영위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이며, 날로 폐업회원이 늘어가고 있는 형편에 처해 있어오니, 이상 여러가지 사회 문제를 감안 동 건축제한 조치를 해제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공 고

건설부공고 제90호

건축사법(법률 제3074호) 부칙 5항 및 동시행령부칙 제2항에 의거 건축사면허증을 재교부받지 아니 한자는 다음에 의거 동면허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기 바람.

1979년 6월 2 일

건설부장관

1. 대 상 : 종전에 1급 및 2급건축사 면허증 소지자
2.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79년 8월 31일 까지
3. 접 처 : 각시·도 주관과
4. 신청요령 : 건축사법 시행규칙 별표8호 및 제1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제출(대한건축사협회 각시·도 지부에 비치)
5. 기 타 : 상세한 것은 건설부건축과(70-4031)와 각시·도 주관과 및 대한건축사협회에 문의할것.

건축사업의 전화 가입 청약 승낙 순위 조정 건의

체신부장관 귀하

1. 기술224-321(1976. 4. 29) 및 체사내 1623, -15200(1976. 7. 7)의 관련으로 귀부에서도 건축사의 업무용 전화 가입 청약 승낙 순위를 선순위로 해줄 필요성을 인정 76년도 당시 제 5 순위를 제 3 순위로 조정하여 주신바 있으나 79년도 전화가입 승낙 순위 기준에 의하면 건축사의 업무용 순위는 최하위인 제 4 순위에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2. 건축 사업은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를 주업무로 하며, 건축물의 설계는 국민의 주거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주거 환경의 개선등 건전한 도시의 발전과 직결됨은 물론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방법, 공해 방지법, 주택 건설 촉진법등 많은 법률과 관련되어 광범위한 업무 연락을 요할뿐 아니라 설계과정부터 건축허가 및 공사 감리 업무등 준공에 이르기 까지 건축주, 시공자, 자재상등과 항상 전화 연락을 요하여야 하며 동업무 연락의 지연으로 부실건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 뿐 아니라 기타 다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 함은 물론 부실한 주거환경등 정신위생에 미치는 건축 공해 등을 고려할때 건축사의 업무가 국가 사회 공익성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 건축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건축사법(법제23조, 동 시행령 제 23조 및 건설부령 제14조)으로 의무적으로 소요매수 이상의 전화를 구비토록 규정 하고 있으며 산간벽지등의 건축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군단위마다 건축사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본 협회에서 회원에게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전화 문제로 원활한 건축 민원해소 100%달성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건의 하오니 현행제 4 순위에 적용토록 되어 있는 건축사 업무용 순위를 제 3 순위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건축사법 발췌문 1부

건축사법 발췌

건축사법 제 23조(등록)

- ①항. 건축사가 개업을 하고자 할때에는 단독 또는 합동으로 건축사 사무소를 정하여 건설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항.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를 등록 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사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건축사법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 ③항. ③ 건축사협회는 군마다 건축사 사무소를 설치하도록 회원에게 권장하여야 한다.

건축사법 시행령 제23조(등록기준)

- ①항.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법 제 2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보조사 와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사무소
 2. 전 화
 3. 제도판
- ②항. 제 1 항의 건축보조사 및 시설의 기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건축사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의 인구 규모와 단독 건축사 사무소 또는 합동 건축사 사무소(이하 "합동사무소"라 한다)별로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건설부령 제14조(사무소의 등록기준)

영제2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 및 시설 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건축사 사무소의 건축보조사 및 시설기준

구	분	항	목	단독사무소	합동사무소
1. 인구100만 이상의도시		· 건축사		1 인	3 인이상
		· 건축보조사		2 인이상	3 인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40M ² 이상	60M ² 이상
		· 제도판		3 대이상	6 대이상
		· 전 화		1 대이상	2 대이상
2. 인구20만명 이상100만 명미만의 도시		· 건축사		1 인	2 인이상
		· 건축보조사		2 인이상	2 인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40M ² 이상	50M ² 이상
		· 제도판		3 대이상	4 대이상
		· 전 화		1 대이상	1 대이상
3. 인구20만명 미만의도시		· 건축사		1 인	2 인이상
		· 건축보조사		1 인	1 인이상
		· 사무실(전용면적)		30M ² 이상	40M ² 이상
		· 제도판		20대이상	3 대이상
		· 전 화		1 대이상	1 대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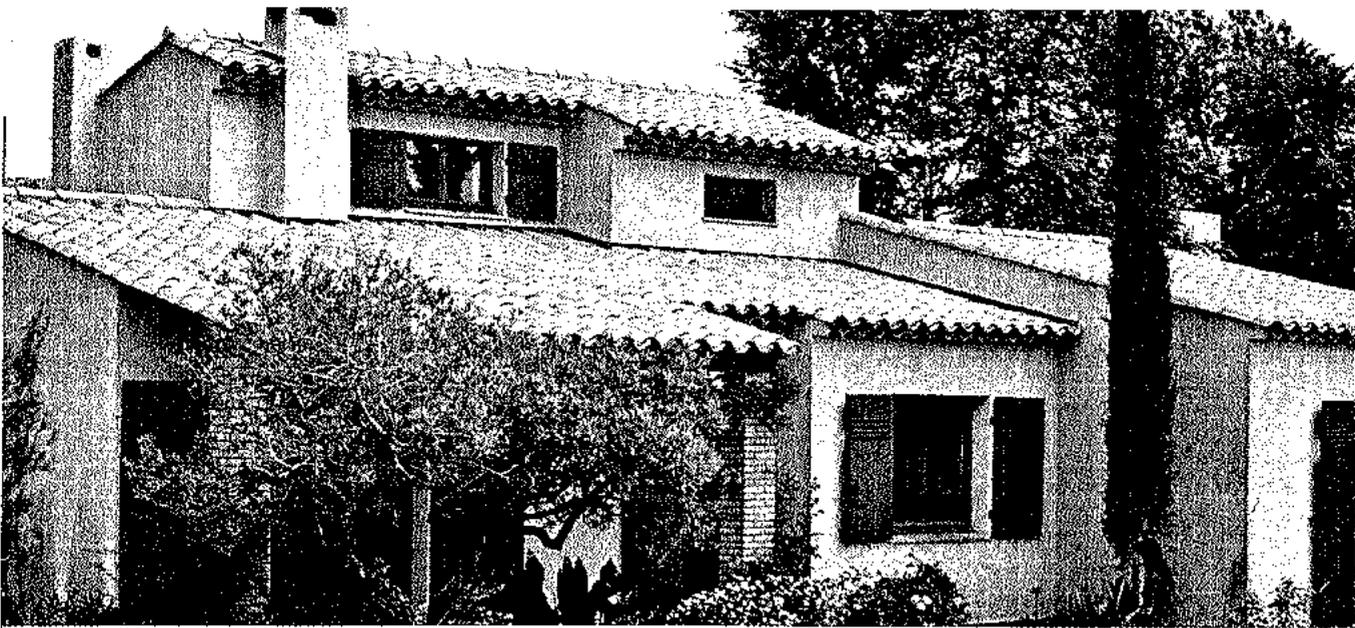
南佛·프로방스地方의 特性

「프로방스」(Provence) 지방에 대해서 글을 몇장 써달라는 뜻 밖의 부탁을 받았을 때는 너무나 막연한 느낌이 들었고, 더구나 그 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일반 교양지나 문학지가 아닌 순수한 건축 전문지라는 점이, 특히 「프로방스」지방의 특성을 살린 주택 건축을 소개하는 주 목적을 위한 부수적인 글이 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느끼게 되었을 때는, 필자는 전연 펜을 들 자격이 없다는 판단이 앞서게 되었다. 그러나 경우를 가릴 수 없는 편집자의 소탈한 부탁에 우선 감동이 되었고, 또 잡문(雜文)이라는 양해를 전제 받았기에 주제넘은 글-인문 지리학적 잡문-을 꾸리게 되었다는 필자의 입장을 독자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란다.

따라서 남불(南佛)의 밝고 짙은 풍광의 그림자가 걸게 드리운 「프로방스」라는 이름이 맨 처음 나의 뇌리에 떠올려 준 작가 알퐁스·도데(Alphonse Daudet)의 아름다운 작품들을 통해서 부상(浮上)되어 오는 그 지방의 시정(詩情) 넘치는 인상이나 향취를 더듬어 음미해보고 싶은 필자의 욕망 또한 허사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독자께서도 깊은 감명을 겪었을 도데의 「풍채간 편지」들이 모두 남불에서 온 것이었다는 사실 만이라도 상기하시기 바란다. 비록 도데의 출생지는 「프로방스」가 아닌 「랑그독」의 「님르」라는 곳이지만 이 두 지방이 함께 나란히 le Midi (南佛)를 이루고 있으니까.

불란서는 크게 스물 두개의 시르콩스크립시옹(Circonscription)이라는 지방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듣고 있는 「노르망디」, 「알사스」, 「부르타뉴」등이 그중에 속하는 것으로서 「프로방스」-정확히 말해서 「프로방스·코트 다쥐르」(Provence - Côte d'Azur)-도 역시 그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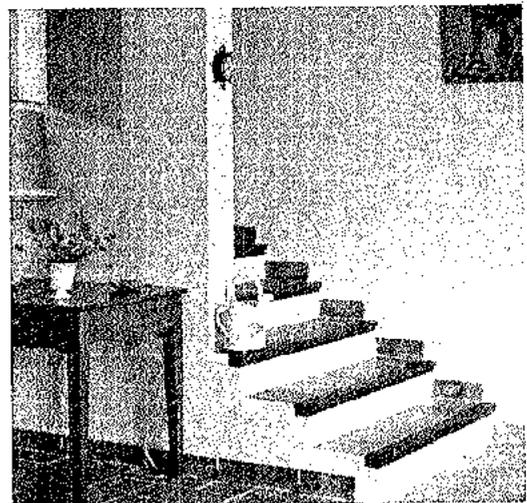
「프로방스」지방은 다시 여섯 개의 현(縣)이라는 행정 구역으로 소분되어 있는데 즉, 「알프스 드 오트 프로방스」, 「알프스 마리띠므」, 「오트 알프스」, 「부슈 드 론느」, 「바르」 그리고 「보클뤼즈」가 그것들이다.



「프로방스는 그 면적이 불란서 전체 국토의 7.3퍼센트에 해당하는 4만 5백 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전체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3백 30만명이다. 「프로방스」는 그의 현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남(南)알프스와 지중해 연안, 그리고 론느(Rhône)강을 끼고 있는 남부지역이어서 그 지세(地勢)의 높고 낮음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있다. 그래서 지대의 고저에 따라 고지대 프로방스(Haute Provence), 저지대 프로방스(Basse Provence) 그리고 해안지대 프로방스(Provence Maritime)로 나누기도 한다. 고지대 프로방스에는 알프스의 고산 준령으로부터 평야지대에 이르는 중간 지형의 고원지대가 많이 있고, 저지대 프로방스에는 론느강 하류의 평야가 넓게 포용되어서 펼쳐지다가 해안지대 프로방스 지역은 론느강 삼각주에서 이탈리아 국경까지의 사이에 위치한 지대로, 그 서부는 「마르세이유」항구와 「투롱」시를 중심으로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한편, 그 동부는 일찌기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르네·코티(René Coty)가 “세계의 오아시스”라고 극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꼬뜨 다쥐르(Côte d’Azur·淡靑海岸)로 그 연안의 아름다운 경치는 세계적인 휴양지대로 사랑을 받고 있어서 당연히 삼차산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는 곳이다.

「꼬뜨 다쥐르」라는 명칭은 원래 지중해 연안 중에서도 이탈리아의 동반(東半)해안으로 「생·라파엘」시에서 이탈리아와의 국경도시인 「망똥」시에 이르는 해안선을 일컫는 말인데 —우리 귀에도 많이 익숙한 「칸느」, 「니스」, 「모나코」, 「칸뉴」등이 모두 다 이곳에 있다 — 리자르(Stephen Liegeard)라는 시인이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프로방스」중에서도 특히 이 꼬뜨·다쥐르에서는 19세기 말경에 수많은 선사(先史)시대의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었고, 역사적으로는 일찌기 이베리아인, 고대 이탈리아의 리그리아인, 켈트족이 잇달아 점령하고 살았으며 소아시아의 포세아에인, 로마인, 사라센등의 무수한 침략을 받았고, 그 후는 백작령(領)으로 남아 있다가 1487년 샤르르 8세(Charles VIII)왕의 통치하에서 완전히 불란서에 통합된 내력이 있다. 이렇게 다난한 역사적 사실들을 미루어 보아서도 이 지방의 자연 조건이 얼마나 빼어난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다.





이토록 오랜 세월을 여러 민족이 탐하여 주인을 바꾸어 오는 동안에도 이곳은 오늘날까지 다양 다색한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오랑쥬」와 「아르르」 등지의 훌륭한 로마문명 유적과 「아비뇽」시의 교황궁 사원(Palais des Papes), 「보끌뤼즈」나 「바스 알프스」지역에 특히 풍부한 종교 건축물의 유산은 이 곳이 중세 예술의 다양하면서도 풍성한 전개의 현장이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프로방스」의 인문 지리학적인 뚜렷한 하나의 성격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지중해성 기후와 하계철의 건조한 날씨이다. 북부 불란서에 비해서 곱이 넘는 일조(日照)시간을 가지고 있는 「프로방스」 중에서도 특히 동부지역은 이곳 특유의 요철 지형 때문에 겨울에도 찬 북서풍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어서 온화한 기온과 눈부신 경관(景觀)을 하늘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다. 그 예로 「니스」의 8.3℃와 「모나코」의 9.5℃에 비해서 같은 지중해안의 서부 「마르세이유」항은 6.1℃ 평균의 겨울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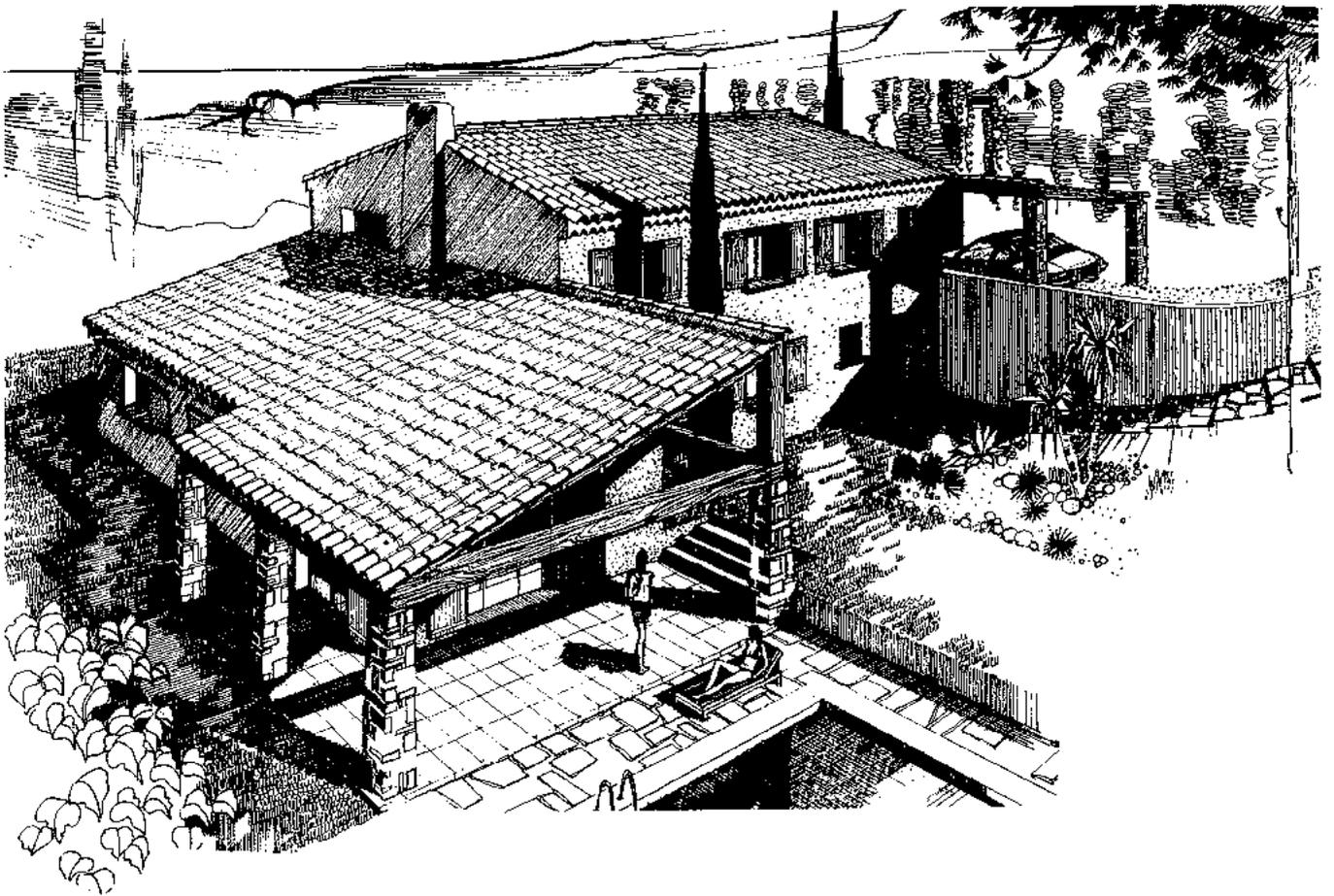
여름철의 기온도 7월을 기준해서 평균 22.5℃로 짧은 우기(雨期)를 제외하고는 매우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쾌적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우기는 짧은 대신에 호우(豪雨)를 내리서 「보끌뤼즈」지방은 평균 500~600mm, 「니스」는 862mm, 그리고 내륙은 1,000mm 평균의 강우량을 기록한다. 따라서 치수(治水)사업이 으뜸 되는 관심사로 되어 수 세기이래 관개시설의 개선으로 농·공업용수의 확보에 힘을 기울여왔다. 알프스 저수지 사업은 「프로방스」의 현대 농·공업 육성에 큰 몫을 차지하여 전통적으로 영위되어 오던 단기(短期)의 밀, 올리브, 포도, 경작과 소규모의 축산이 그 면모를 일신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주택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지중해 연안의 밝고 맑은 햇빛과 물빛이 그대로 인영(印影)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방스」의 특유한 풍광에 거슬림이 없는, 그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조금도 아쉬움이 없는 건축물이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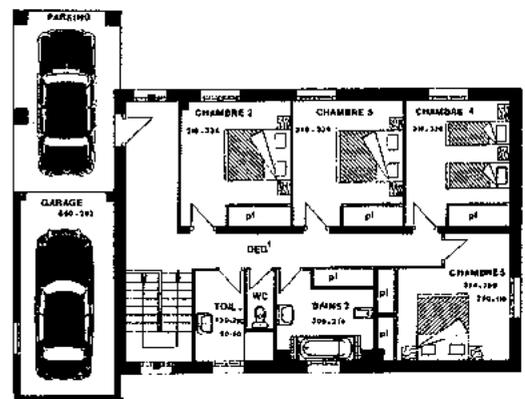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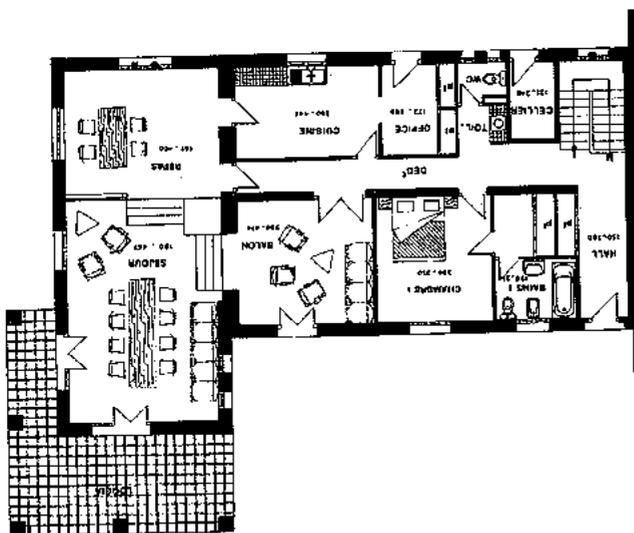
타일 시공이라든지 미장 마무리, 굴뚝처리, 바베큐 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각 주택의 독창성과 특성이 두드러지면서도 「프로방스」의 자연미에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해안을 따르는 언덕의 허리를 이용하여 세워진 대·소 가족용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에 따라 아기자기한 설계와 치장이 눈길을 모은다. 등근 기와를 이용한 지붕에 여름철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도록 굽은 낙엽송 대들보를 받쳐서 널찍하게 앞으로 내세운 현관 지붕, 속이 빈 벽돌로 두터움게 쌓은 다음 투박한 도로로 마감한 한 벽면 등을 오지 타일이나 돌을 이용한 바깥 포도(鋪道)와 조화시키고 있는 경우라든지, 주택의 내부와 외부의 안락한 생활환경에 주력하여 단순미를 강조하고 있는 양식 등등, 건축가의 창작력과 미(美)의식이 마음껏 구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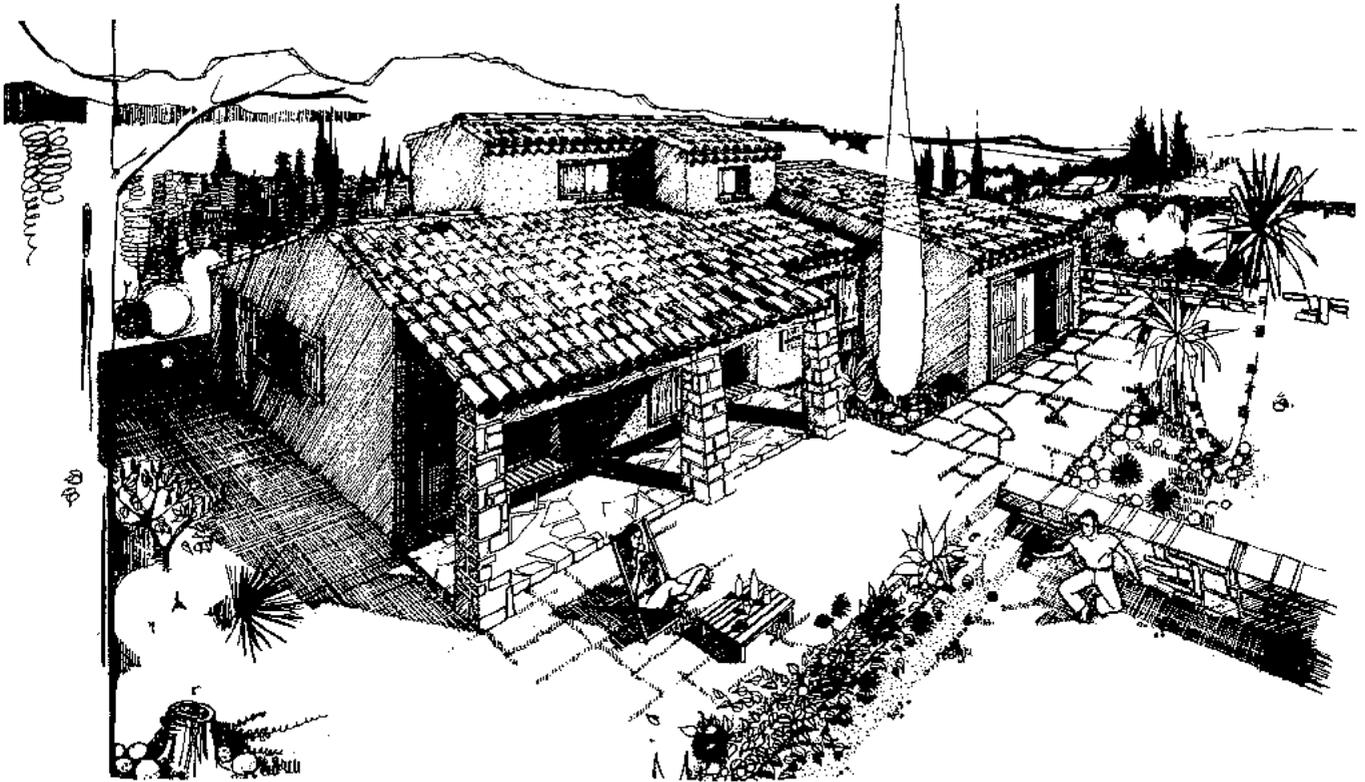
「프로방스」의 뛰어난 기후와 경치 그리고 전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筆者: 홍익대학교 교수(불문학) 金宇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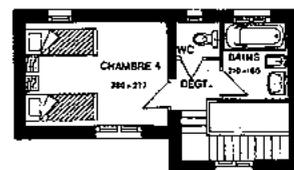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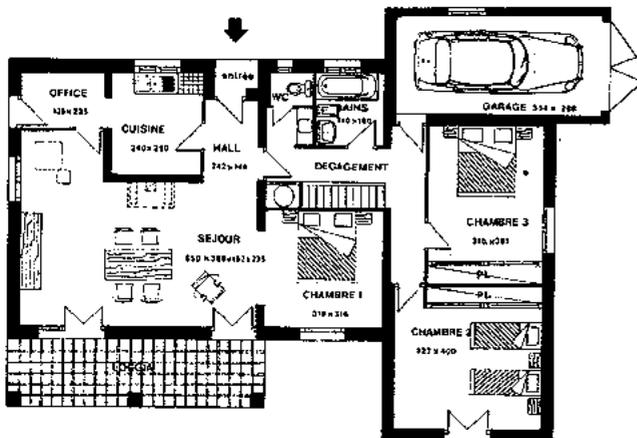
1 층				위층			
거실	33.10m ²	로비	13.72m ²	침실 2	11.54m ²	주거면적	27.11m ²
응접실	15.98m ²	복도	7.43m ²	침실 3	11.54m ²	외랑	25.81m ²
침실 1	13.51m ²	반침	3.30m ²	침실 4	11.60m ²	차고	16.98m ²
부엌	12.32m ²			침실	12.25m ²	주차장	16.99m ²
식탁코너	19.0m ²			욕실 2	7.03m ²	창고	3.24m ²
식거실	4.81m ²			화장실 2	5.01m ²	계단	5.20m ²
욕실	6.99m ²			변소 2	1.5m ²	건축면적	235.68m ²
화장실	1.8m ²			복도	17.01m ²		
변소 1	1.51m ²			반침	5.89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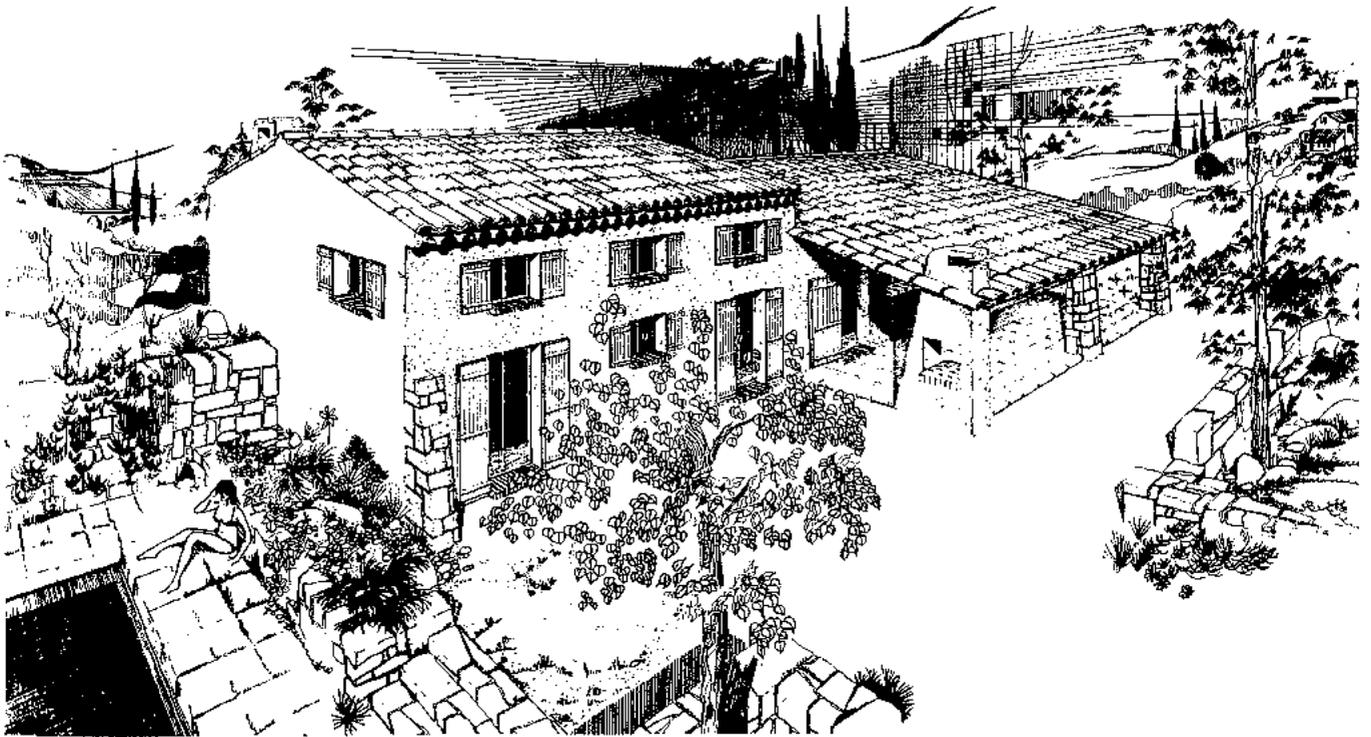




1 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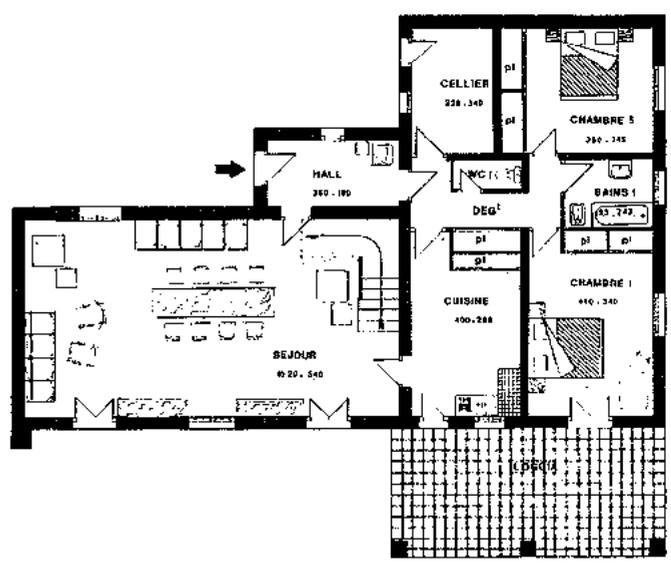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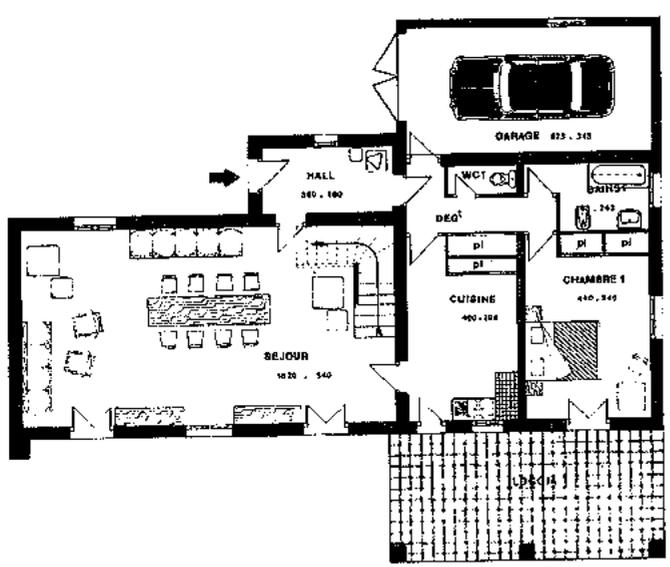
거실	28.79㎡	변소	1.06㎡	주거면적	111.55㎡
거실 1	10.11㎡	복도	8.67㎡	외랑	12.24㎡
침실 2	13.57㎡	반침	3.66㎡	차고	16.07㎡
침실 3	11.19㎡	위층		계단	2.44㎡
부엌	6.96㎡	침실 4	10.52㎡	건축면적	152.61㎡
식거실	3.59㎡	욕실	3.78㎡		
로비	3.53㎡	변소	1.06㎡		
욕실	3.78㎡	복도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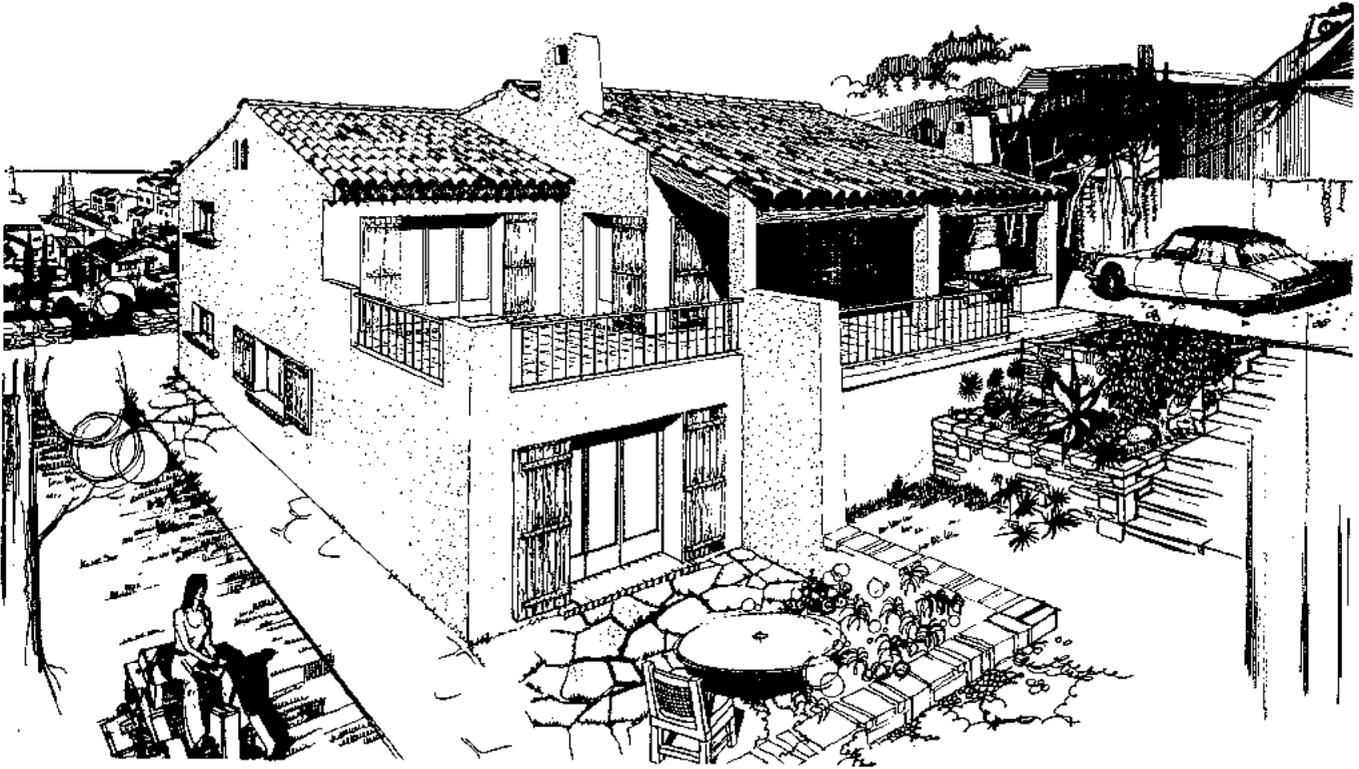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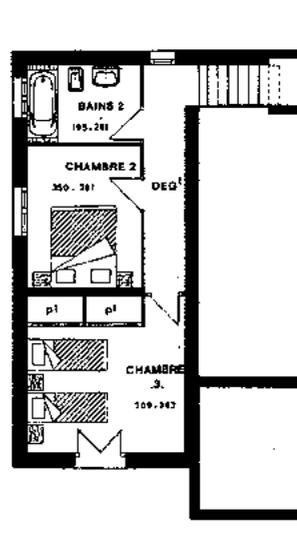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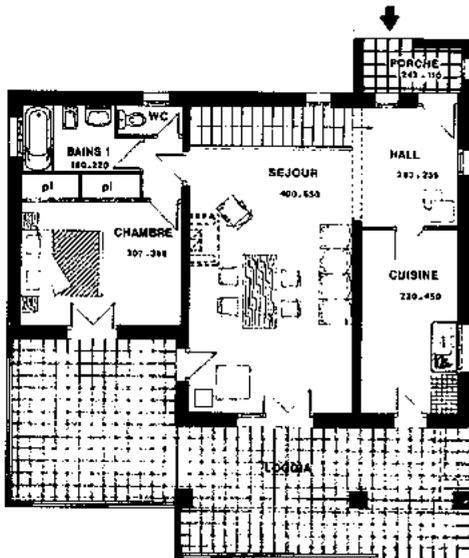
1 층		위층			
거실	55.08㎡	침실 2	11.11㎡	외랑	25.77㎡
침실 1	15.50㎡	침실 3	10.11㎡	창고	23.08㎡
부엌	12.92㎡	침실 4	11.76㎡	계단	3.87㎡
로버	6.48㎡	욕실 2	5.20㎡	건축면적	205.51㎡
욕실 1	4.59㎡	변소	1.24㎡		
변소 1	1.60㎡	복도	6.53㎡		
복도	5.79㎡	발침	2.92㎡		
발침	2.89㎡	주거면적	15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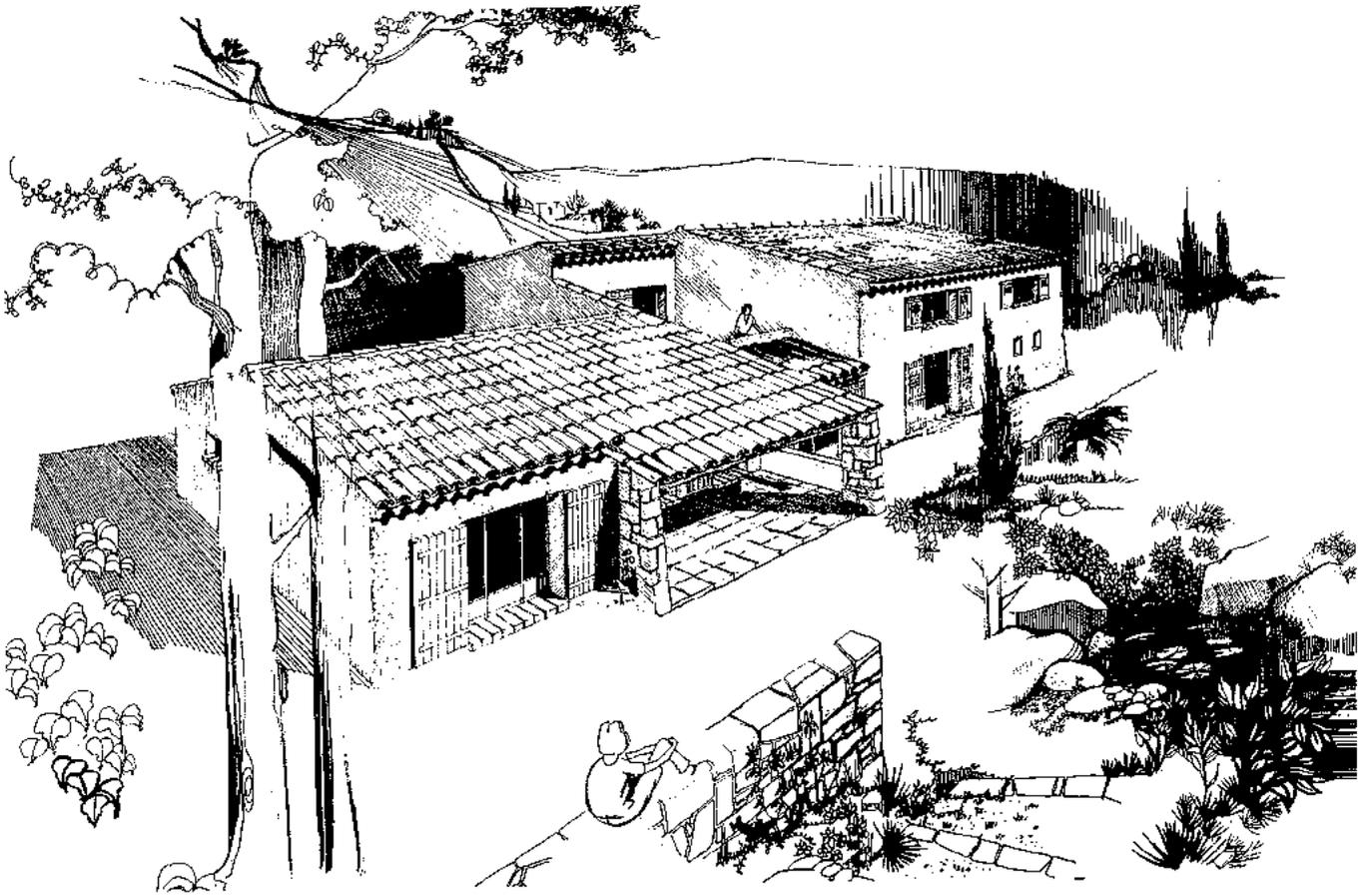
1 층		2 층			
거실	55.08㎡	발침	4.63㎡	발침	2.92㎡
침실 1	15.50㎡	위층		주거면적	167.56㎡
침실 5	12.00㎡	침실 2	11.11㎡	외랑	25.77㎡
부엌	12.92㎡	침실 3	10.11㎡	창고	7.82㎡
로버	6.48㎡	침실 4	11.76㎡	계단	3.87㎡
욕실 1	4.69㎡	욕실 2	5.20㎡	건축면적	205.51㎡
변소 1	1.60㎡	변소	1.24㎡		
복도	5.79㎡	복도	6.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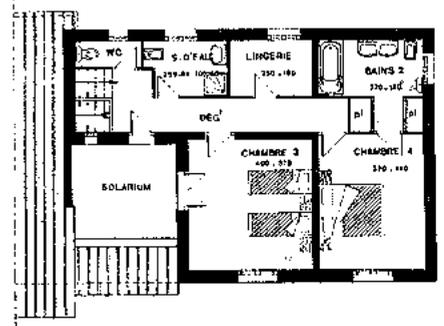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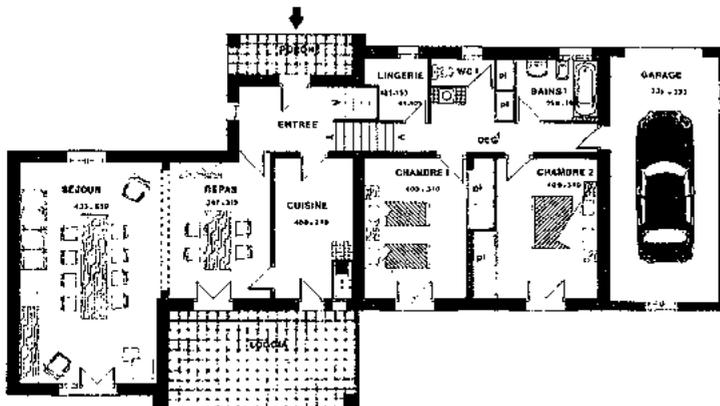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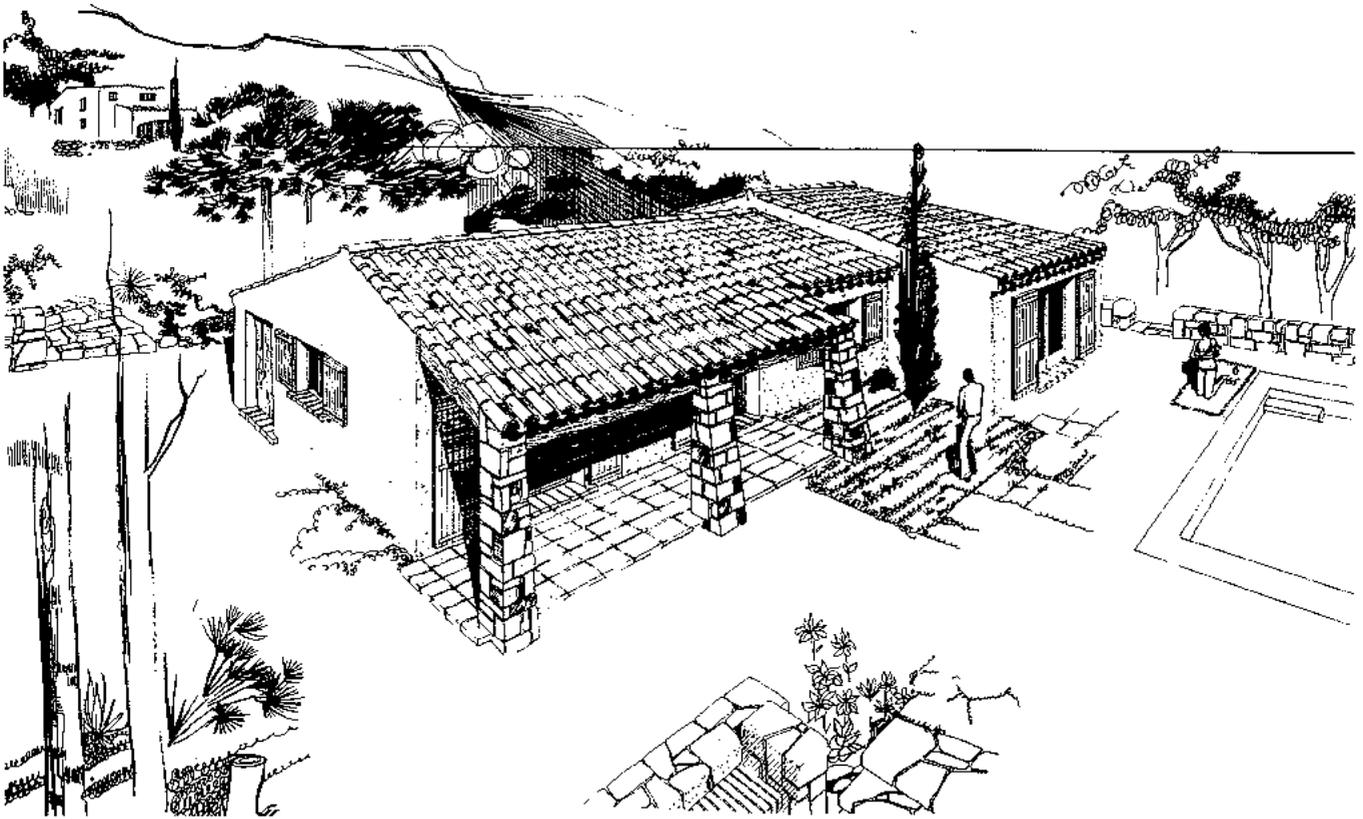
높은지면		낮은지면		주거면적	99.10m ²
거실	26.00m ²	침실 2	9.83m ²	계단	4.00m ²
침실 1	12.16m ²	침실 3	12.35m ²	테라스 겸용외랑	39.40m ²
부엌	10.35m ²	욕실 2	5.47m ²	포치	2.67m ²
로비	7.43m ²	복도 2	5.80m ²	건축면적	129.10m ²
욕실 1	4.13m ²	반침	1.75m ²		
변소	1.28m ²				
복도	1.28m ²				
반침	1.82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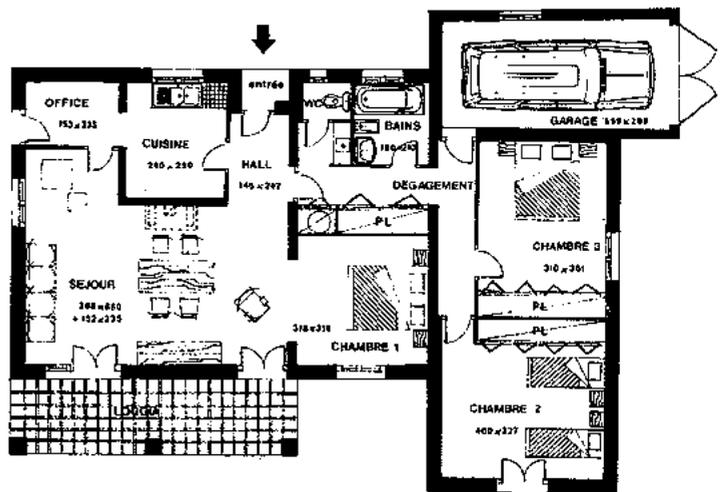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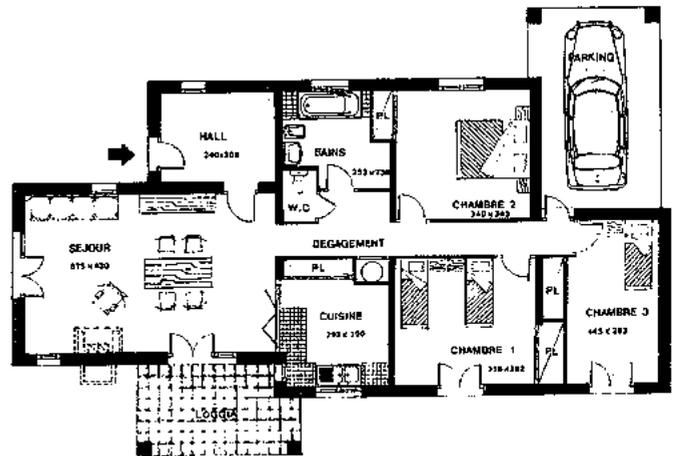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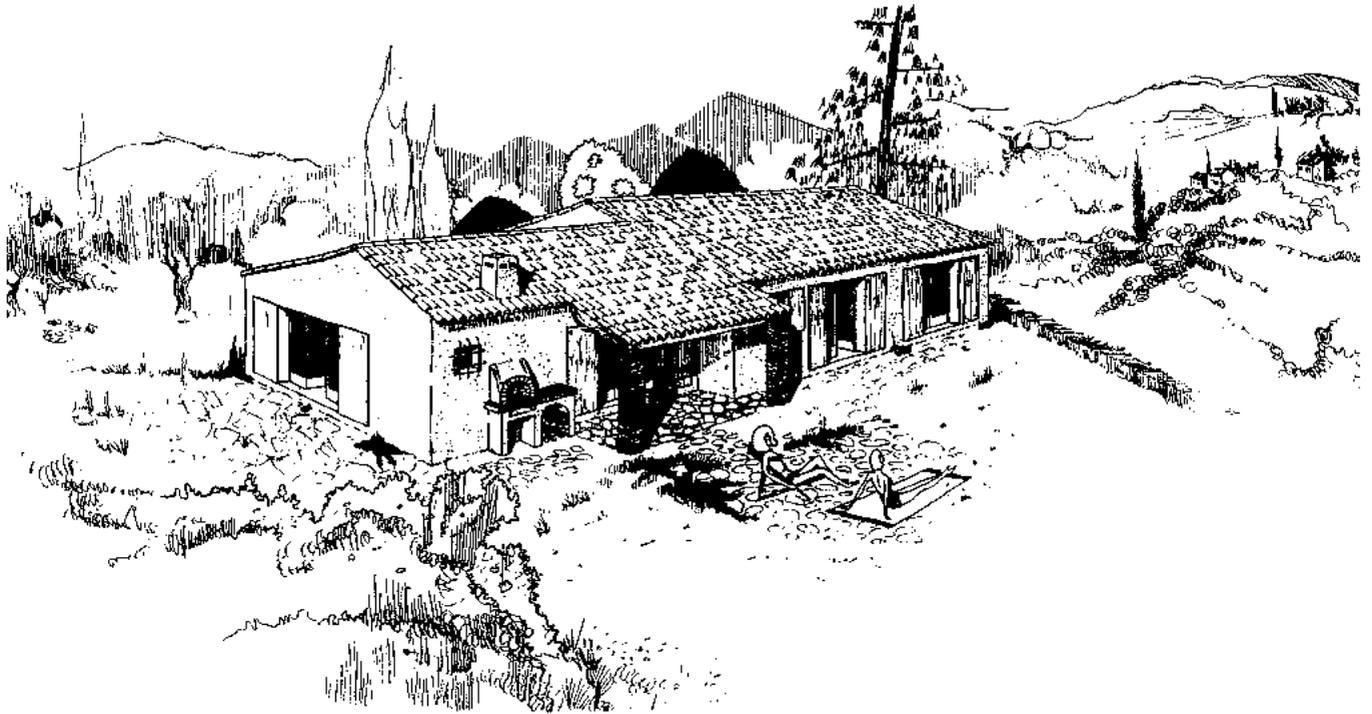
거실	27.80㎡	변소 1	1.44㎡	차고	27.47㎡
식탁코너	12.47㎡	변소 2	1.60㎡	외랑	16.95㎡
침실 1	12.40㎡	입구	6.23㎡	일광욕실	9.36㎡
침실 2	12.40㎡	내의류보관소 1	5.10㎡	계단	4.31㎡
침실 3	15.12㎡	내의류보관소 2	4.50㎡	포치	4.72㎡
침실 4	13.12㎡	복도	7.94㎡	건축면적	190.00㎡
부엌	9.60㎡	복도	8.40㎡		
욕실 1	4.60㎡	반침	4.75㎡		
욕실 2	6.70㎡	주거면적	158.43㎡		
세탁실	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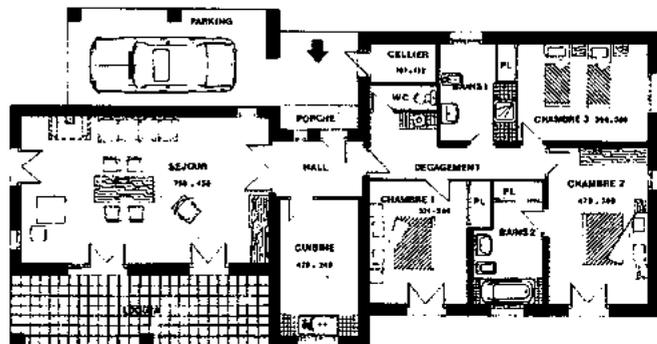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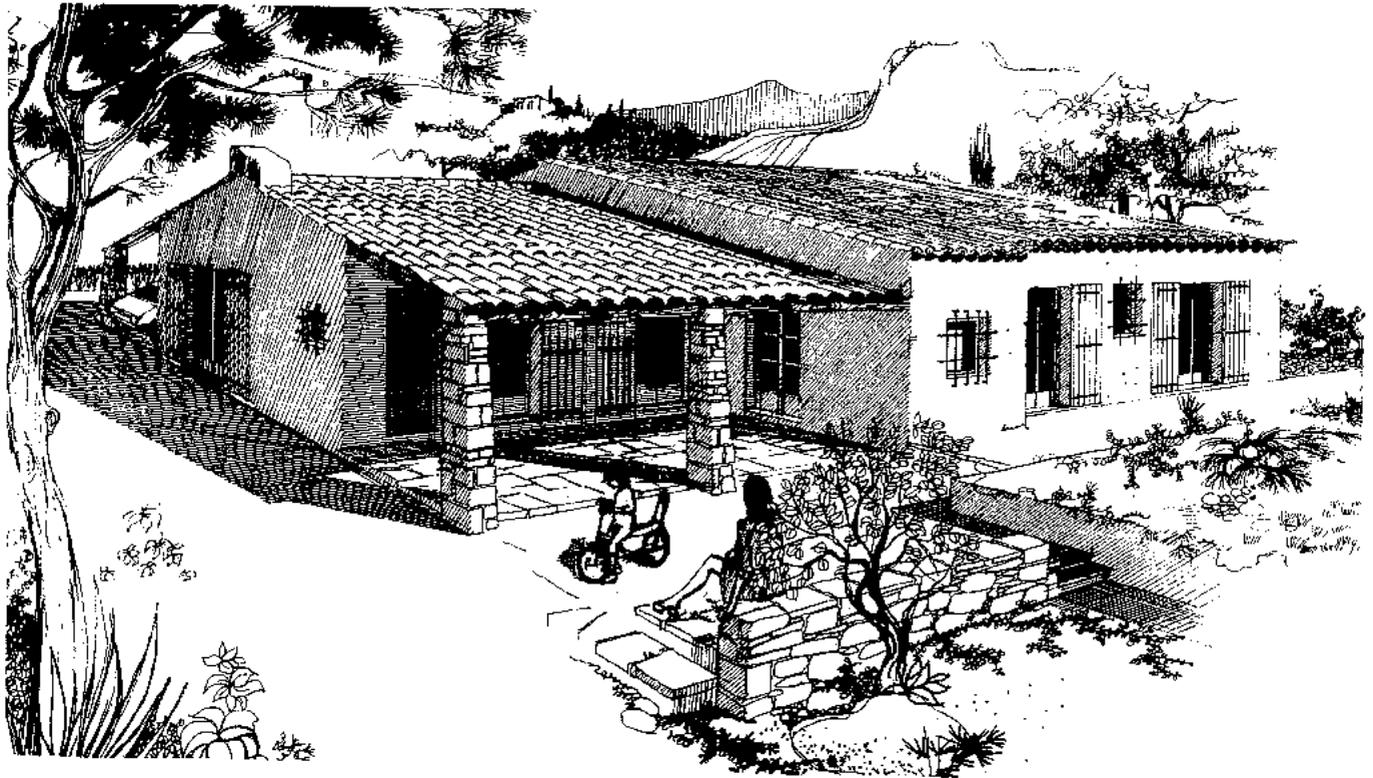


거실	28.79m ²
침실 1	10.11m ²
침실 2	13.57m ²
침실 3	11.19m ²
부엌	6.96m ²
식기실	3.59m ²
욕실	3.78m ²
변소	1.06m ²
로비	3.53m ²
복도	8.47m ²
반침	5.08m ²
주거면적	96.13m ²
외랑	12.14m ²
차고	16.07m ²
입구	0.82m ²
전건축면적	152.61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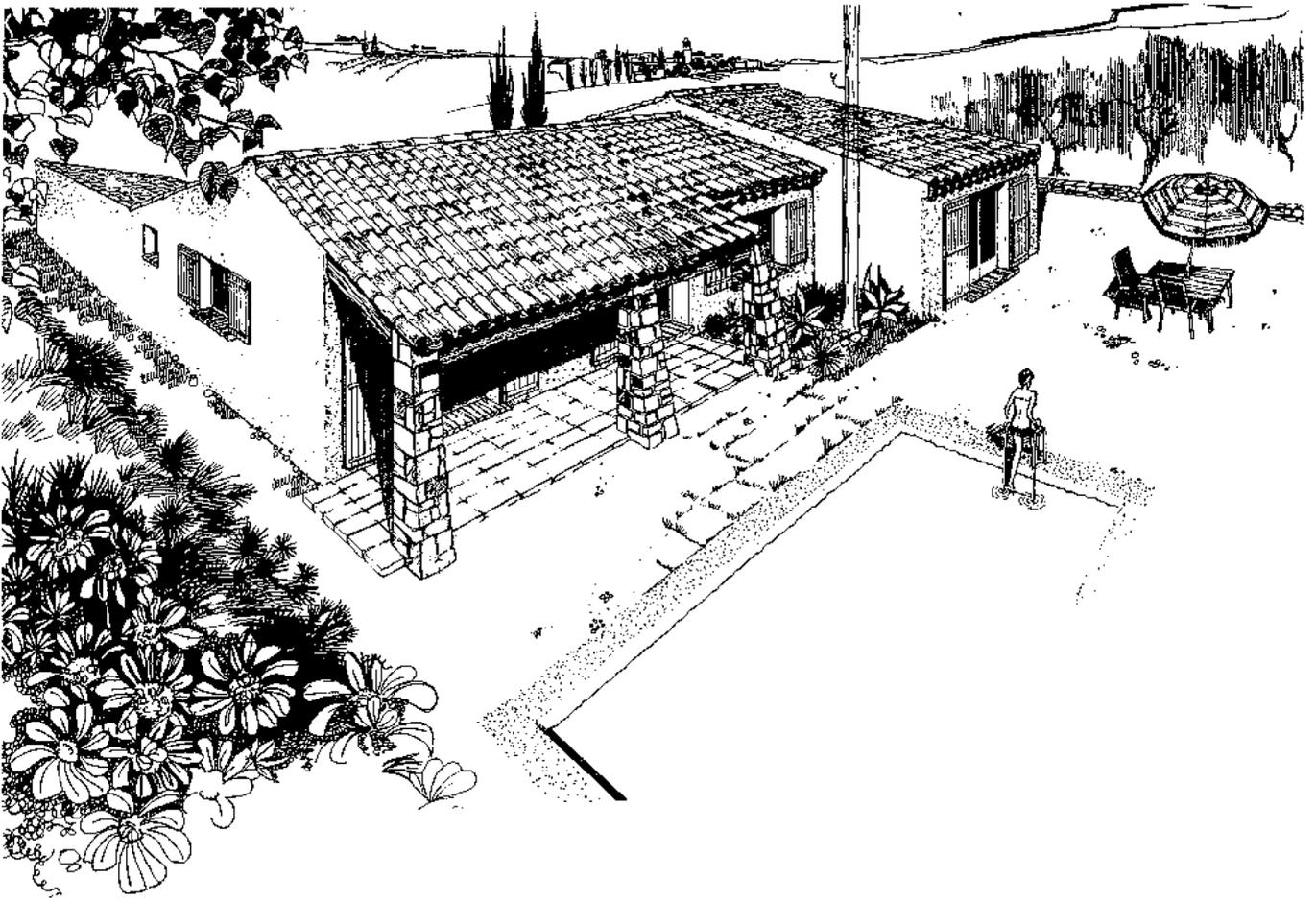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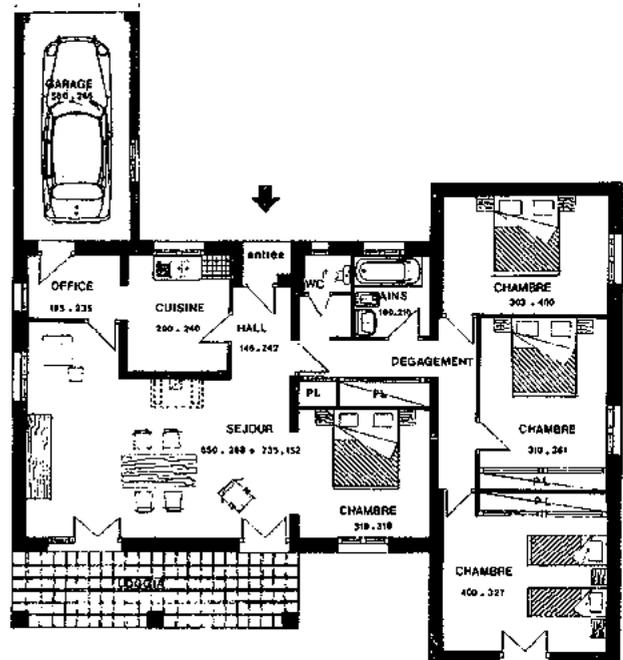
로비	7.39m ²
거실	29.02m ²
침실 1	12.81m ²
침실 2	11.93m ²
침실 3	11.33m ²
부엌	8.85m ²
욕실	5.81m ²
변소	1.04m ²
복도	8.92m ²
발침	3.43m ²
주거면적	99.90m ²
외랑 (外廊)	10.00m ²
주차장	17.83m ²
벽감 (壁龕)	0.60m ²
건축면적	15490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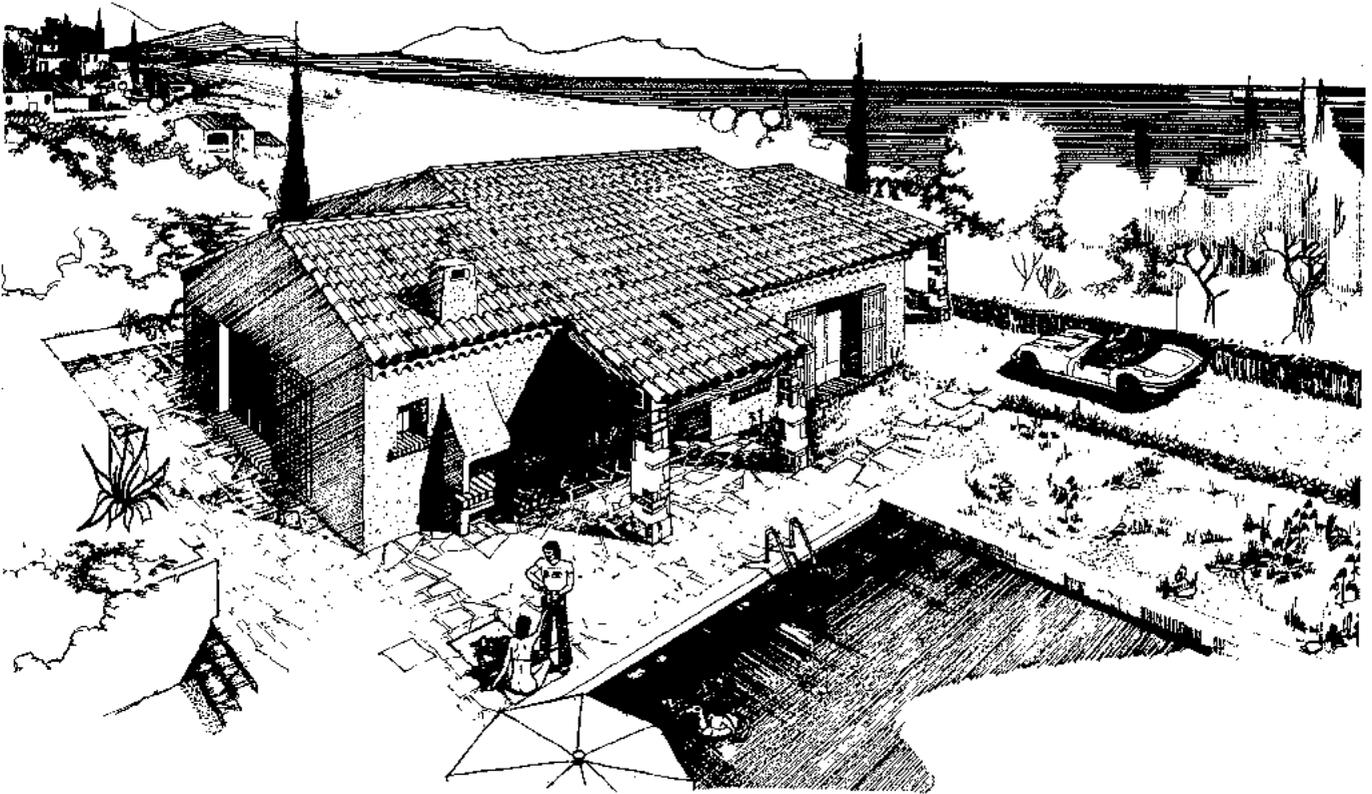


거실	33.75m ²
침실 1	11.13m ²
침실 2	14.34m ²
침실 3	11.88m ²
부엌	10.08m ²
로비	4.52m ²
욕실 1	6.36m ²
욕실 2	5.91m ²
변소	1.60m ²
복도	7.50m ²
반침	2.93m ²
주거면적	110.00m ²
창고	2.40m ²
외랑	16.95m ²
주차장	18.58m ²
포치	7.27m ²
건축면적	183.85m 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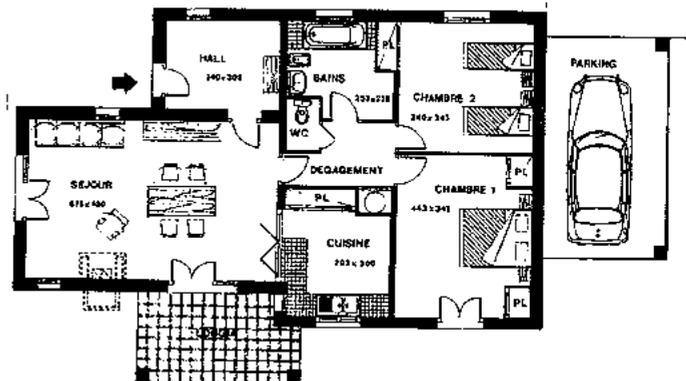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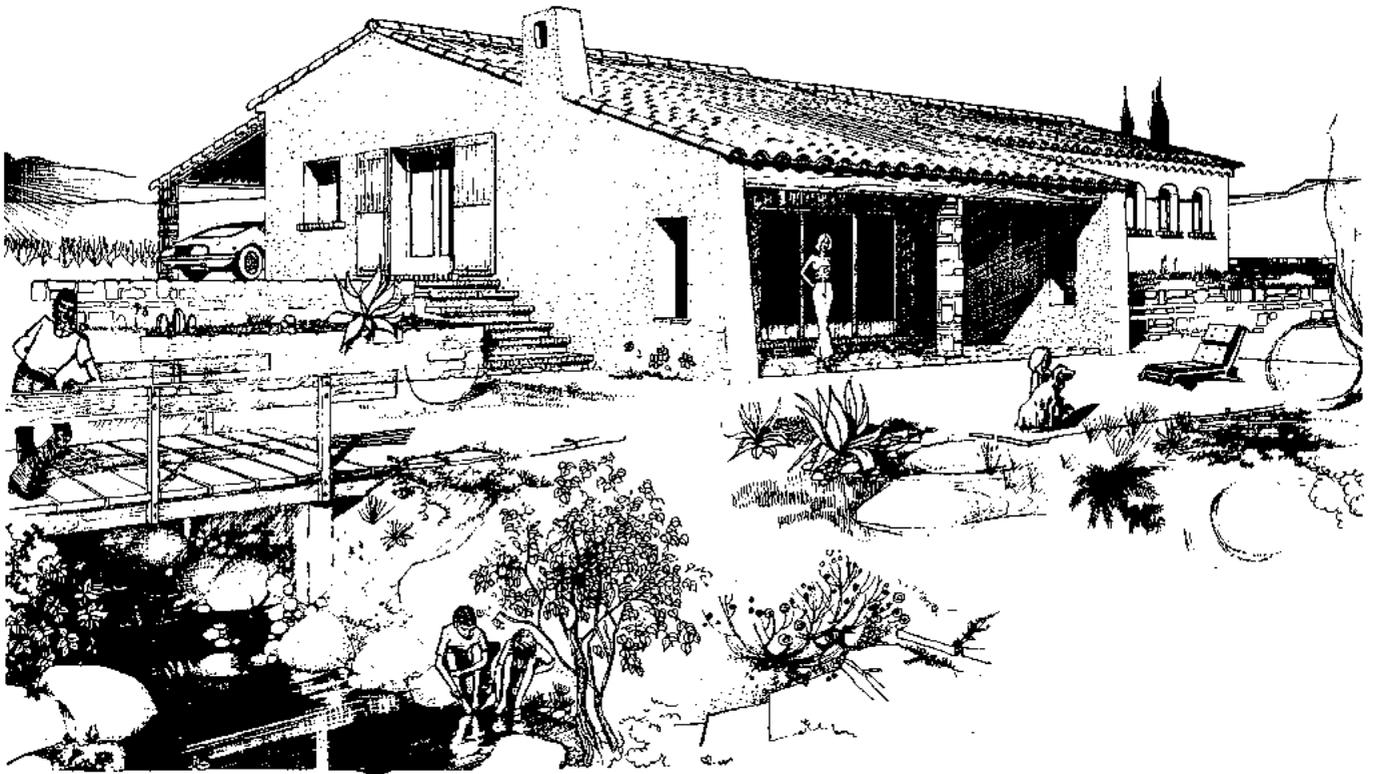
거실	28.79㎡
침실 1	10.11㎡
침실 2	13.57㎡
침실 3	11.19㎡
침실 4	12.12㎡
부엌	6.96㎡
식기실	3.59㎡
욕실	3.78㎡
변소	1.06㎡
로비	3.53㎡
복도	8.47㎡
받침	5.08㎡
주거면적	108.25㎡
외랑	12.24㎡
차고	14.59㎡
입구	0.82㎡
건축면적	165.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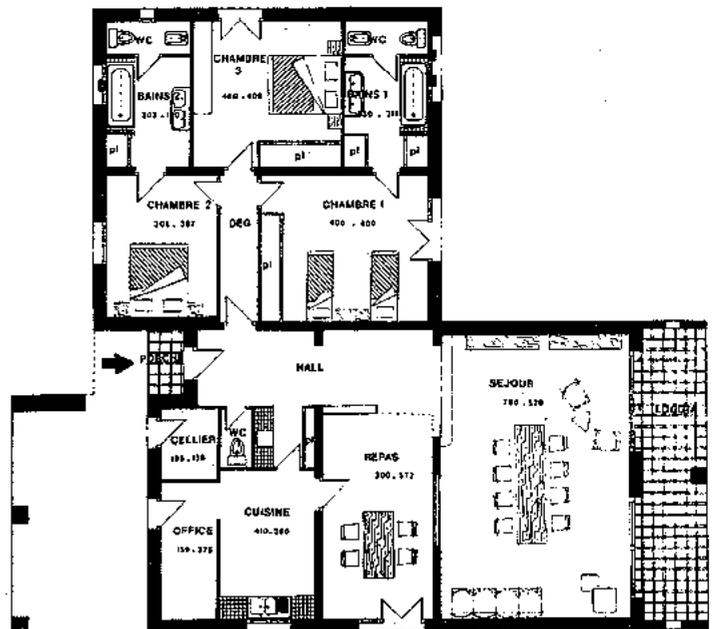


로비	7.39㎡
거실	29.02㎡
침실 1	14.30㎡
침실 2	11.93㎡
부엌	8.85㎡
욕실	5.81㎡
변소	1.04㎡
복도	4.51㎡
반침	2.74㎡
주거면적	85.59㎡
외랑	10.00㎡
주차장	19.48㎡
벽감	0.60㎡
건축면적	137.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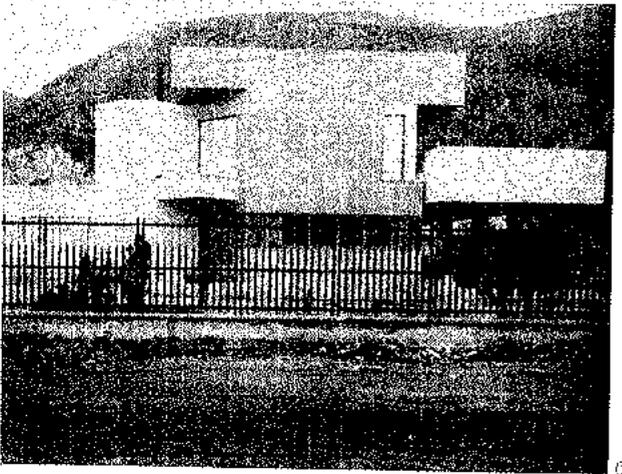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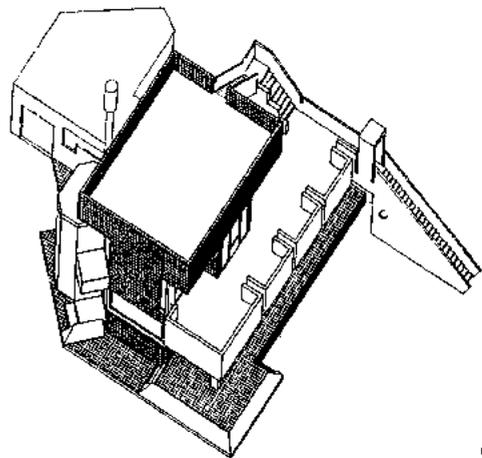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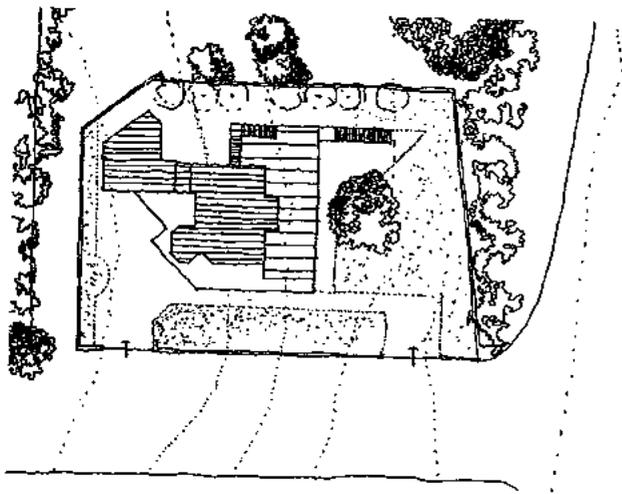
거실	40.56㎡
부엌	10.66㎡
식탁코너	17.16㎡
침실 1	16.59㎡
침실 2	11.91㎡
침실 3	15.04㎡
식기실	5.96㎡
욕실, 변소 1	7.93㎡
욕실, 변소 2	8.69㎡
화장실	1.46㎡
변소	1.53㎡
로비	12.80㎡
복도	4.00㎡
발침	4.15㎡
주거면적	158.44㎡
창고	3.08㎡
외랑	13.94㎡
주차장	23.04㎡
포치	4.28㎡
건축면적	23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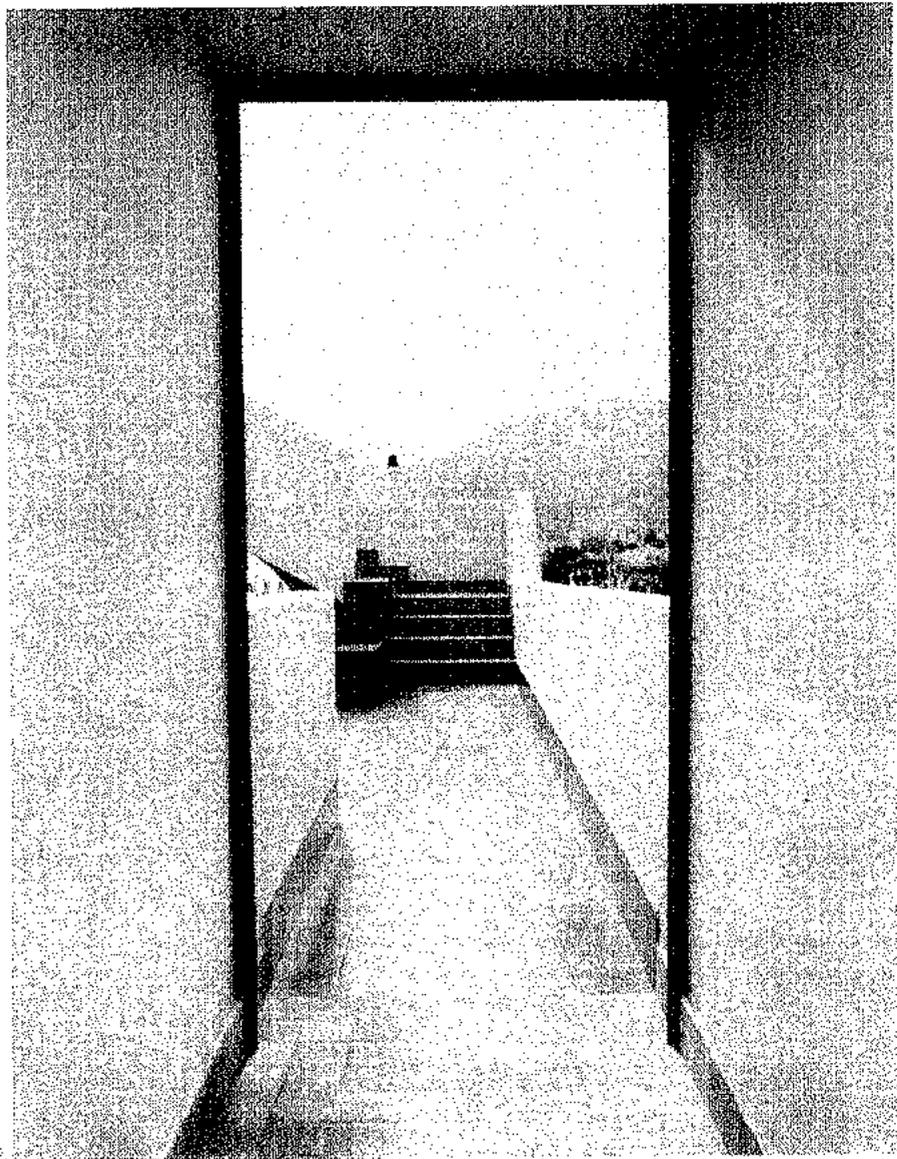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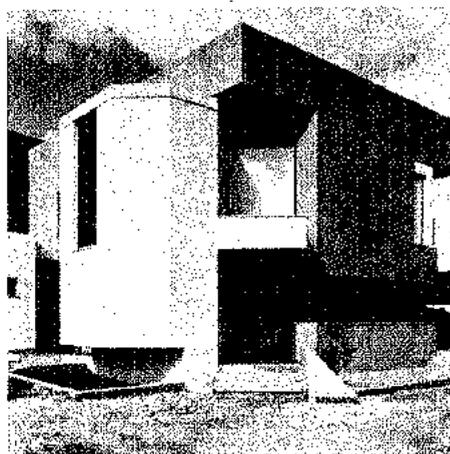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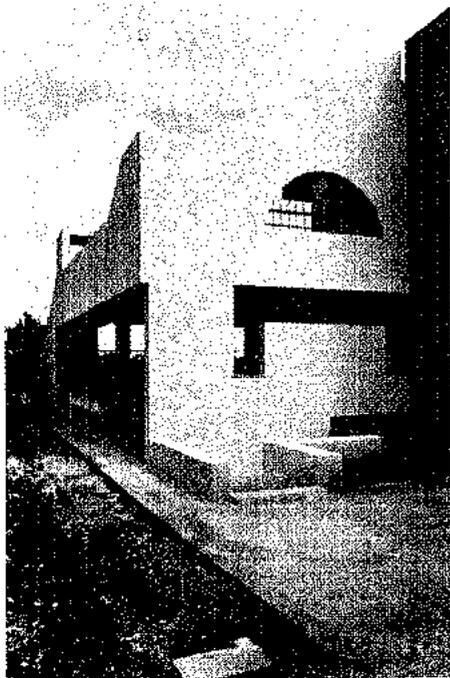
파-탄나 몽데로의 住宅 이 테리



①②- 建物は幾何学的形態を 보이고 있다.
③- 계단은 빠래 두모에 지금도 남아 있는
典型을 담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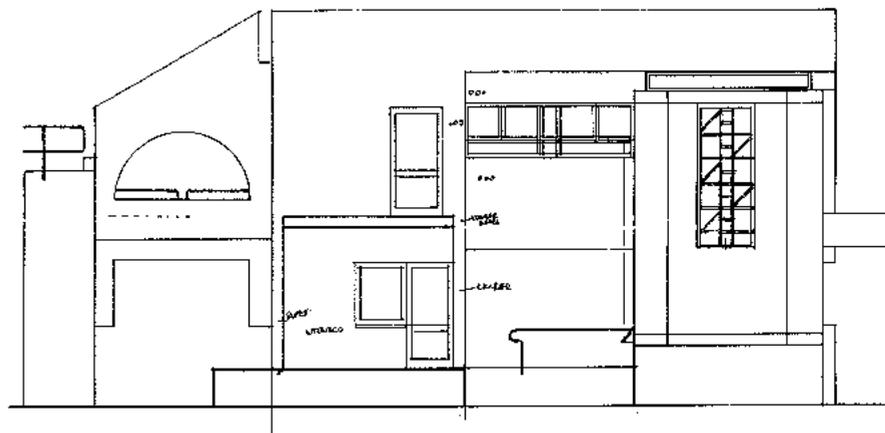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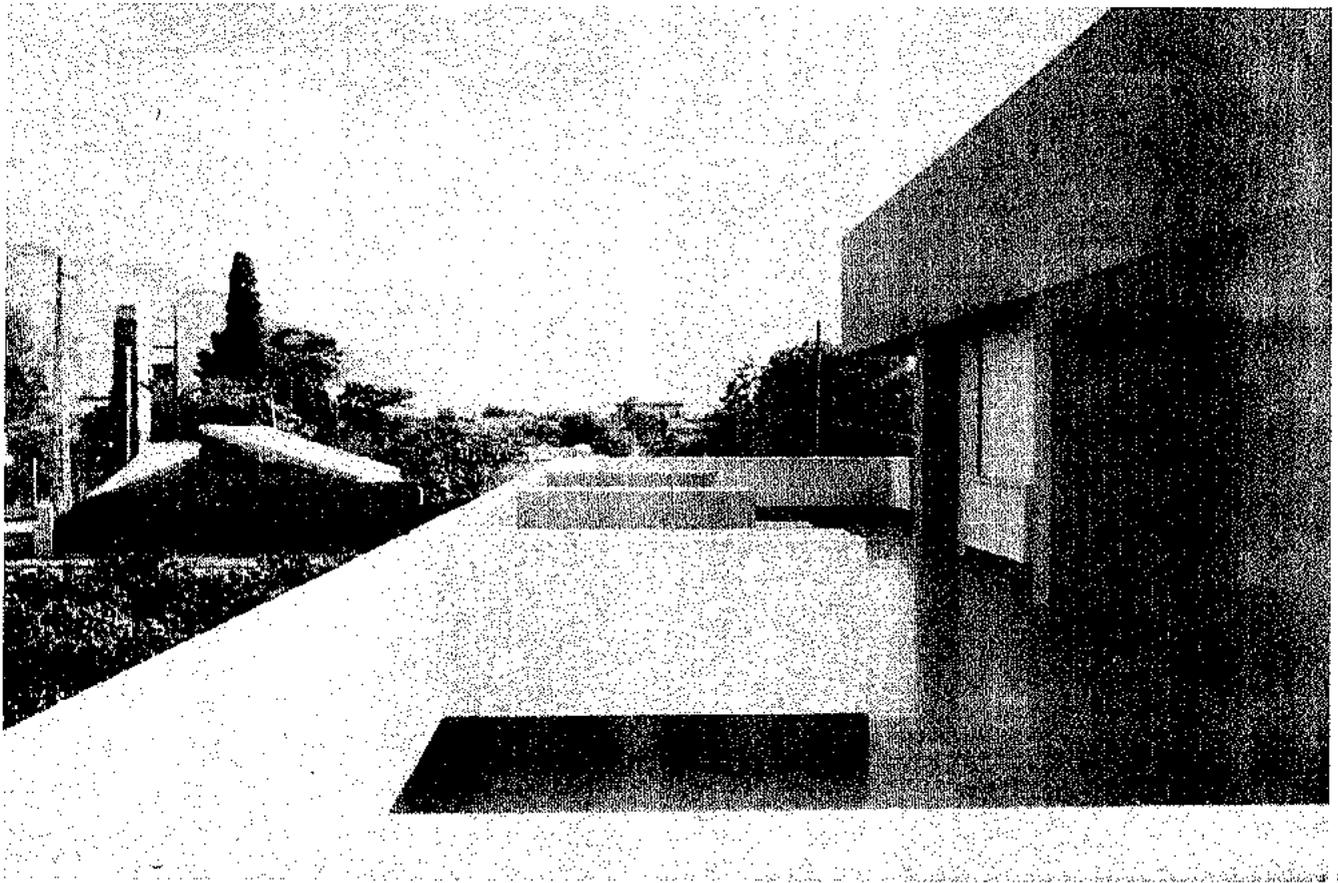
④ - 配置圖
⑤ - Axon metr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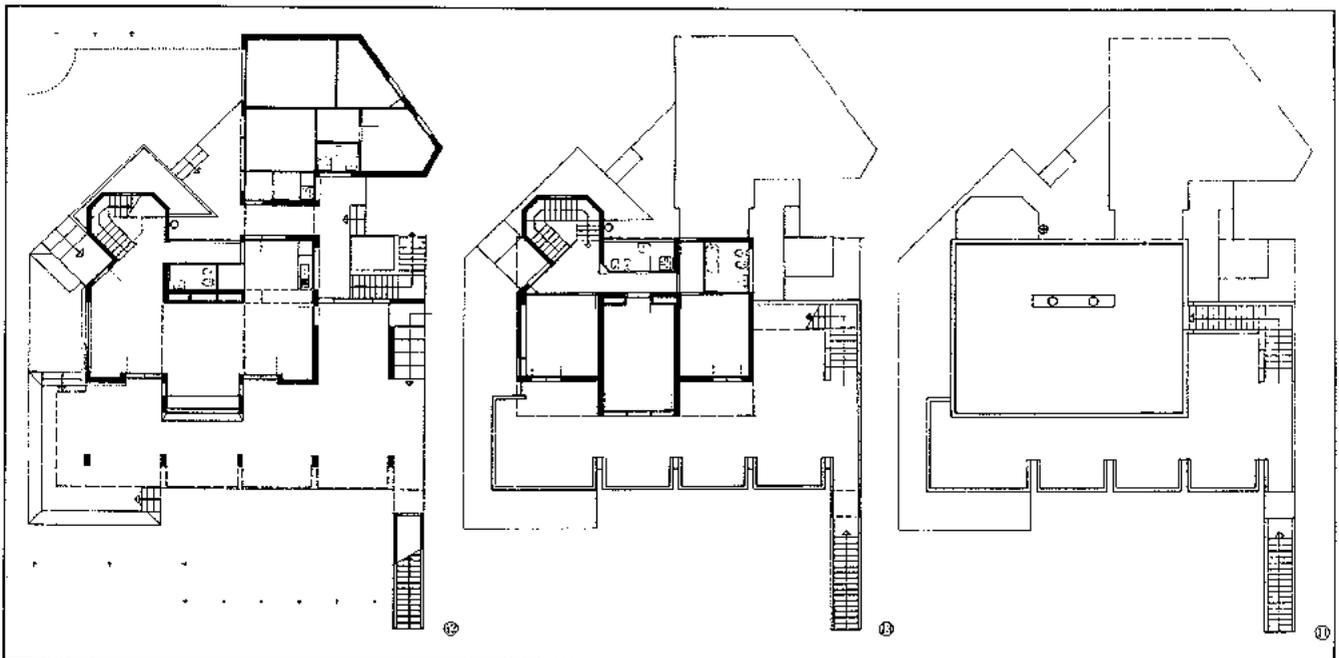
⑥~⑨- 建物の構成은 部分에 까지 幾何学的
形態를 나타내고 있다.

⑩- 立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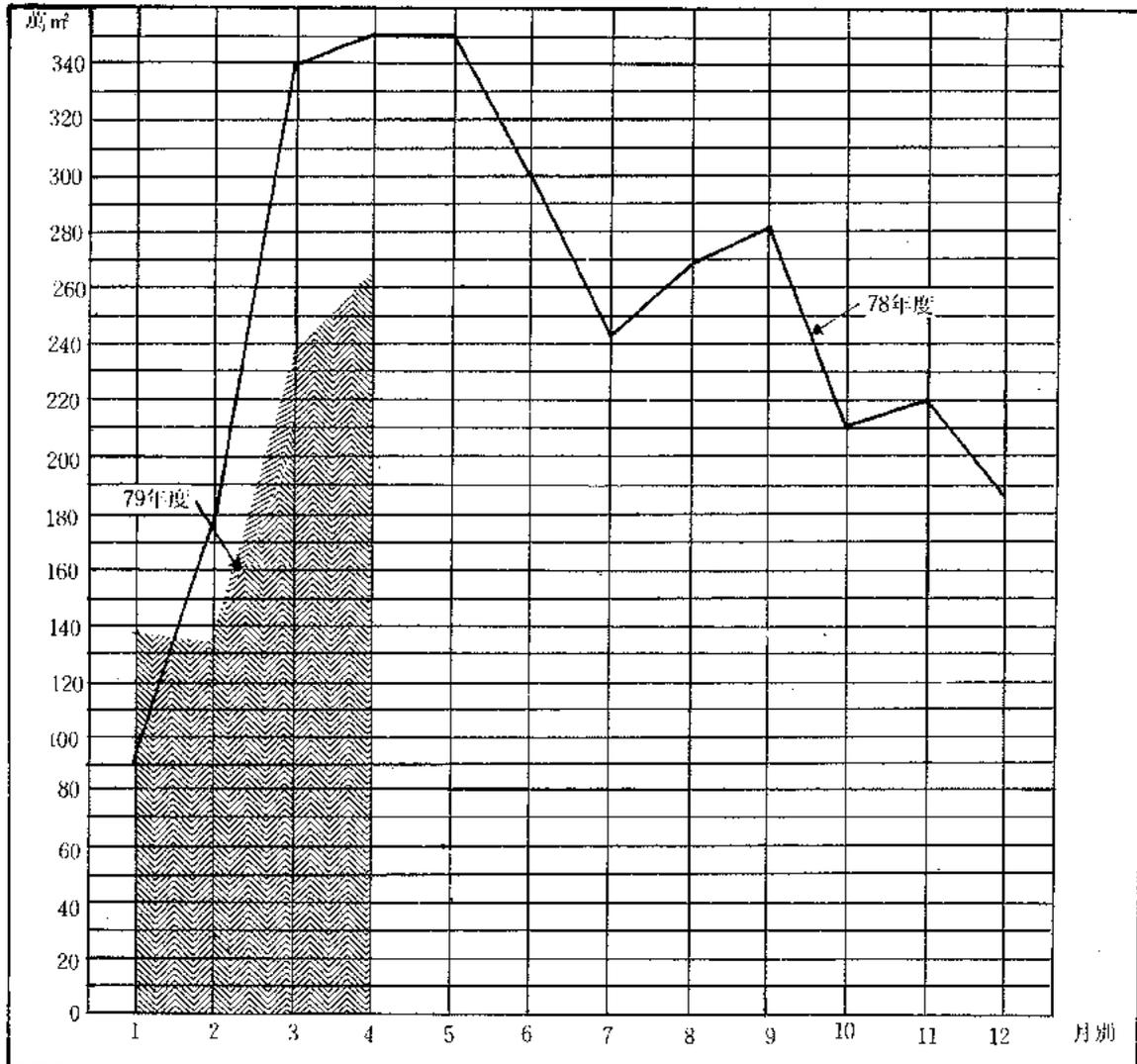
- ① - 單純 明快한 線과 面의 構成속에도
 傳統的인 바-나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다.
- ② - 1층평면도
- ③ - 2층평면도
- ④ - 옥상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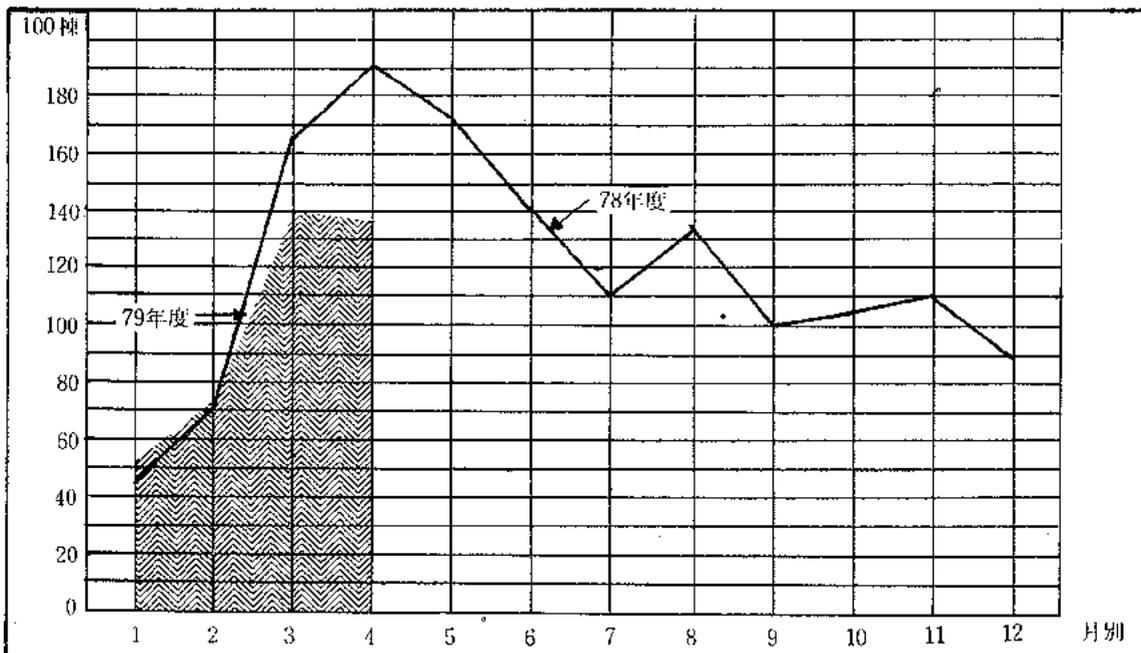
全国建築許可統計

月別建築許可(延面積)統計

1979年(1月~4월)



月別建築許可(棟数)統計



發明 電子열쇠 (도어록) 新發售 特許品

열쇠계의 혁신! 電子열쇠로

여러분의 財産을 保護합니다

電子열쇠는...

1. 電子열쇠는 다른 열쇠나 어떠한方法으로도 열수 없음.
2. 電子열쇠는 故障이 全然없음.
3. 電子열쇠는 使用操作이 부드럽다.
4. 電子열쇠는 特殊磁石을 使用하여 永久的임.
5. 電子열쇠는 複製 (合鍵) 가 않됨.

(439, 296個기 生産된에 同 한 열쇠 한개가 나옴)

使用處 : 아파트, 住宅, 事務所, 병원
保管倉庫, 金庫, 호텔 등

販賣處 : 有名鐵物商이나 本社營業部

※ 열쇠가 더 必要하거나 紛失時는
本사로 注文하십시오.

“쫓겨나는 초음파기 판매”
(日本 完製品輸入)

世林貿易株式會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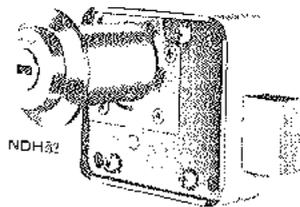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2街 60-3

TEL. 776-7040 · 7041

공장 TEL. 260-1623 부산지사 : 26-8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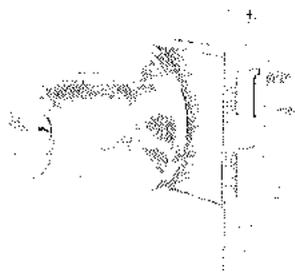
日本美和LOCK 株式会社

補助錠 (ECNDH型) 電子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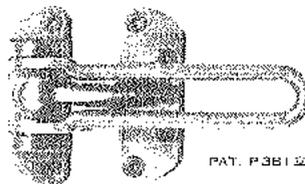
附屬하기 쉬우며
堅固하고 耐久性이 좋고
防犯上 安全합니다.

도어록크 (ECHMU型) 電子式



한가지형으로 左右
内外, 開門自由로히
使用할수 있고, 重
要保管用途使用,
補助錠이 必要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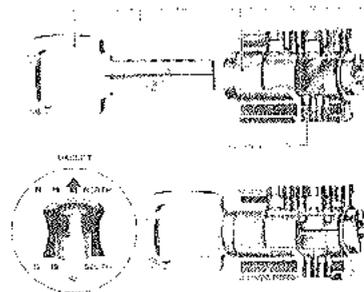
安全문고리 (SL-1型)



外部에서 門을 열때
10cm 程度만
열리고 확인후 門을
열어주는 安全고리

※ 金庫用, 家具什器用, 카비넷用,
私書函, 其他 電子열쇠가 있음.

電子열쇠의 構造





Rocket Boil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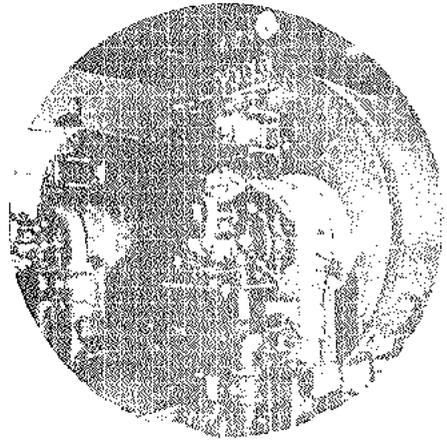
연료비 40% 절약!



工產品 品質管理法에 의한 優秀商品 指定

燃料 使用器機大會 商工部 優秀賞受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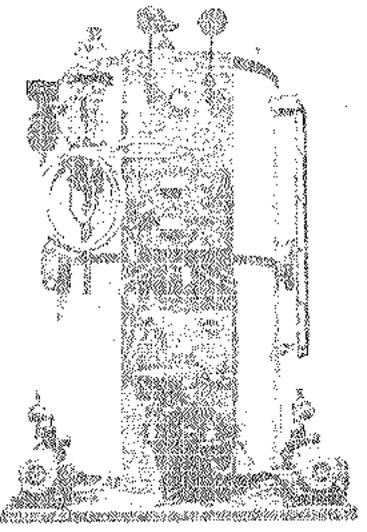
고압연관식보일러 (KR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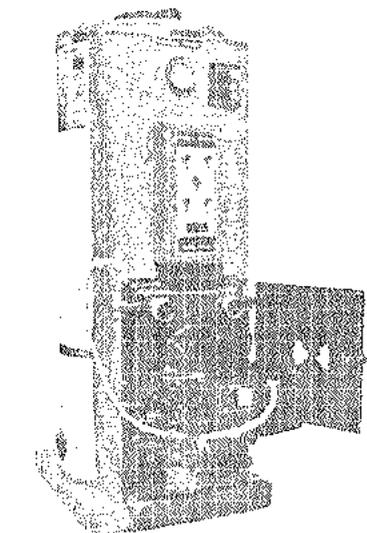
- 1ton에서 10 ton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펌프에 의한 수압과 기압을 이용한 새로운 보일러로 긴 수명과 높은 열효율을 자랑하는 보일러입니다.
- 연관식 보일러의 신기술을 이룩한 제품입니다.

전자동 증기보일러 (KRS)

- 1600명 미만 급속사 식사는 20분만에 해결합니다.
- 적률공정 전도 세팅 증기압타이핑으로 가장 이상적입니다.
- 화력발전용 같은 난방 및 급탕용 식품가공·음식에 적합합니다.
- 비연료소모 수산물가공에 적합합니다.
- 부피 0.2에서 0.5ton의 전자동 소형 스팀 보일러로 부피에 따라 연료비 40%가 절약됩니다.
- 전자동이므로 관리가 필요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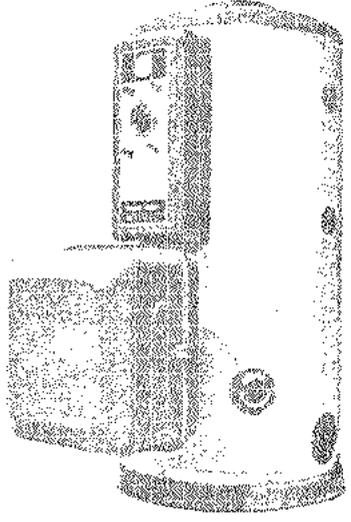
다목적온수보일러 (KRZ)



- 난방용 급탕용 복합용 전용.
- 정전시 또는 오일미어터 고정시 연탄화목 및 폐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제품은 5만에서 40만 Kcal까지 용량이 규격별로 다양합니다.
- 취급이 간단한 one-to-uch입니다.
- 내부가 완전 도금처리된 급탕용과 증기용이 삽입된 급탕 난방겸용이 있습니다.

전자동 소형온수보일러 (KRQ)

- 경이적인 보일러 기술의 발전.
- 설계품 KRQ는 펌프에 의한 수압타이핑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 본제품의 개발목적은 15명이상 30명미만 40명이상 60명미만 주택의 난방과 급탕을 해결 하는데 있습니다.
- 본제품은 저렴한 시설투자와 적은 기공면적에 비해 소량 오일버너로 전기소비가 적고 설치면적이 작은 지하상부형 정고동에 간단히 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대량생산 시제라도 동종 타 보일러에 비해 보일러 구입비가 30% 이상 저렴합니다.



□ 관리유지비가 없고 최고의 안전도 저렴한 시설비 연료비 40%를 절약하시려면 Rocket Boiler에 문의하십시오.

□ Rocket Boiler의 보조품에 유의하시고 Rocket 상표를 확인하십시오.



국내 유일의 보일러 수출업체

고려강철주식회사

본사 : 경기도 부천시 도당동 254-6
 전화 : (6) 5131-4
 여의도 사무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99(세우회관 6층)
 전화 : (782) 7373, 7387, 8757